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sf.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代), www.kipf.re.kr

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

2018. 9

2018·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011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 표지(10).indd 1 2018-08-27 오후 1:30:26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

2018.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센터장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8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요 약

1. 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 현황과 특징

□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 지역특구 입주·창업기업 대한 조세지원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 지역특구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 지역특구 입주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소득세·법인세를 처음 3년간 100% 감면하고, 그다음 2년간 50% 감면함

○ 개발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우 처음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감면함

□ 공제한도는 투자금액 한도와 고용기준 한도의 합계금액임

○ ① 투자금액 한도: 투자 누계액의 50%

○ ② 고용기준 한도: 상시근로자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 누계액의 20% 중 작은 금액

○ 단 서비스업의 경우, 총감면액이 위의 감면한도를 초과하면 아래 ①과 ②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함

- ① 투자금액 한도로 투자 누계액의 100%
- ② 고용기준 한도로 상시근로자 1인당 2천만원의 금액

□ 지역특구별 입주기업 및 창업기업 조세지원 요건을 보면, 각 특구별로 특구의 지정목적을 고려하여 조세지원 대상 업종과 규모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은 공통되는 것으로 판단됨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첨단기술산업

○ 제주자유무역지역: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물류업

○ 금융중심지: 금융 및 보험업

○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의료기술산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관광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 관광산업, 문화산업, 첨단기술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됨

○ 기업도시 등의 경우에는 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관광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연구개발업, 물류업 등이 지원대상으로 지원대상이 광범위함

○ 각 특구별, 업종별로 최소 투자 요건이 있으며, 고용요건이 규정된 경우도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기업도시 등, 그리고 새만금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도 조세지원이 제공됨

○ 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됨

□ 일부 특구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해 별도의 조세지원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지원만 적용되는 경우: 내국인·외국인 동등대우

- 연구개발특구,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창업기업
-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개발사업

○ 지역특구 조세지원과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이 모두 있는 경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 입주·창업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새만금 사업지구 개발사업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만 있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사업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제역(제주 제외)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2. 지역특구 입주현황 및 조세감면 실적

□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지원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고, 이미 상당수의 기업이 입주하였음

○ 2005년에 대덕연구단지, 2011년에 광주 및 대구, 2012년에 부산, 2015년에 전북이 지정됨

○ 지정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이미 상당수의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나타남

- 총 입주기업 5,018개: 광주(1,140), 대구(728), 대덕(1,763), 부산(891), 전북(450)

○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 수를 보면 2008~2016년의 기간에 매년 21~55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며, 2011년 54개에서 2016년 26개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표 1> 연구개발특구와 제주도 특구 조세감면 실적

(단위: 개, 백만원)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업체수	감면액	업체수	감면액	업체수	감면액
2007년	1	28	-	-	-	-
2008년	21	10,383	-	-	-	-
2009년	42	27,721	-	-	-	-
2010년	55	22,275	-	-	-	-
2011년	54	26,114	3	318	1	7
2012년	44+u	20,517	-	-	u	8,997
2013년	31+u	11,793	6+u	4,425	u	3,790
2014년	23	7,024	7	9,715	10	14,115
2015년	21	4,042	6	4,620	8	5,940
2016년	26	3,334	5	1,534	8	2,05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8-3-8 세액감면신고현황

□ 제주도 지역의 특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제주도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은 2017년 기준 총 118개임

- 총 237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나 106개 기업이 퇴거하여 입주기업 수는 131개임
- 입주기업은 IT 기업과 BT 기업이 주종임

○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017년 12월 기준 총 55개 기업이 지정되었으나 11개 기업의 지정이 해제되어 44개 기업이 지정된 상태임

- 최근의 지정동향을 보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9개씩 지정되어 가장 많이 지정되었으며, 2015년에 2개, 2016년에는 3개가 지정됨
-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4개 기업과 1개 기업이 지정 해제됨
- 지정기업은 휴양업과 호텔업이 주종임

○ 제주자유무역지구는 지정된 적이 없음

□ 제주도의 특구 조세지원제도는 2002년에 도입된 이후 2010년까지는 지원 실적이 없으며, 2011년 이후 소수의 기업이 지원을 받았음

○ 2014~2016년의 실적을 보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5~7개, 제주투자진흥지구 8~10개의 기업이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음

○ 감면규모는 2014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97억원, 제주투자진흥지구 141억원에서 빠른 속도로 축소되어 2016년에는 각각 15억원과 21억원이 됨

□ 기업도시는 2005~2006년에 시범사업지구 6개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두 개 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음

○ 무주는 주 출자자인 대한전선이 2008년 5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대체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2011년 1월 시범사업이 취소됨

○ 무안은 사업지구를 두 개로 분할하여 국내단지와 한중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두 개의 단지 모두 사업이 취소됨

○ 영암·해남지구의 경우 4개 지구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중 하나인 부동지구는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2012년 1월에 사업을 반려하고 3개 지구만 추진함

○ 시범사업 이후 기업도시 신청 사례가 없음

□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는 충주기업도시로, 2012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2020년까지 도시조성을 완료할 계획임

○ 충주기업도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현재 18개의 업체가 가동 중이며, 건설 중인 업체가 1개, 설계 중인 업체가 6개로 총 25개의 업체가 가동·건설·설계중이며, 산업용지 중 5곳은 미분양 상태임

□ 원주기업도시는 토지보상비 증가와 일부 출자자 워크아웃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2년 정도 지연되었음

○ 태안기업도시(라티에라)와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관광레저형인데,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

□ 기업도시는 국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도 있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실적이 거의 없으며, 국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소수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음

○ 감면기업 수가 2014년 3개, 2015년 5개, 2016년 8개이며, 감면액은 연도별로 48억~57억원 규모임

<표 2> 기업도시 등에 대한 조세감면 실적

(자료: 개, 백만원)

	기업도시 조세지원(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 외투 지원(법 제121조의2)			
	창업·신설 기업[1]		개발사업자		입주기업		개발사업자	
	법인수	감면액	법인수	감면액	법인수	감면액	법인수	감면액
2007	-	-	-	-	-	-	-	-
2008	-	-	-	-	-	-	-	-
2009	-	-	-	-	-	-	-	-
2010	-	-	-	-	-	-	-	-
2011	-	-	1	827	1	336	-	-
2012	u[2]	891	-	-	-	-	-	-
2013	u[2]	974	u[2]	3,775	u[2]	-	-	-
2014	3	5,334	-	-	-	-	-	-
2015	5	5,681	-	-	-	-	u[2]	1
2016	8	4,840	-	-	-	-	-	-

주: 1)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신설기업 포함
2) 해당되는 기업의 수가 매우 적어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u로 표시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8-3-8 세액감면신고현황, 표 12-2-5 외국인투자법인 감면현황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제도는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금융중심지 조세지원제도는 2010년에 도입되었는데, 조세지원 실적이 없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는 2017년 말까지 3개의 권역에 85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하였음

○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우에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KSF 선박금융과 한국선박금융의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점 등 업체가 입주하였으나 조세지원 실적이 없음

○ 이와 같은 업체들의 입주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원 실적이 없는 것은, 이 지역 입주·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소기의 목적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시사함

□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지원이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이미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였음

○ 2009년에 대구와 오송이 지정되었고, 2011년에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었음

○ 대구에만도 약 90개의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조세지원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3. 지역특구 조세감면의 성과분석

□ 앞서 검토한 지역특구 조세감면 실적을 보면, 연구개발특구와 제주의 두 개의 특구, 그리고 기업도시 외에는 조세감면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감면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연구개발특구는 연도별로 20~55개의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아서 어느 정도 통계분석이 가능함

○ 한편 제주도의 특구와 기업도시는 최근 3~4년의 조세감면 실적만 있으며, 연도별 감면기업의 수도 작아서 통계분석이 가능하지 않음

□ 지역특구의 조세감면 성과분석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만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음

○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으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제주도 특구와 기업도시, 그리고 조세지원실적이 거의 없는 다른 특구는 조세지원이 기업을 특구로 유인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가.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의 투자효과 분석

□ 국세청에서 입수한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 자료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목록, 그리고 NICE평가정보의 재무 Database인 KISVALUE의 전체 외감기업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의 투자효과를 분석하였음

○ 국세청 자료는 2007~2016년 신고자료로, 분석에 사용된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 자료는 153개 기업 1,266개 관측치임

□ 대조군 자료로는 KISVALUE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의 사업자 번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KISVALUE 자료 중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을 분리해 내지 못하고, KISVALUE 자료에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을 받은 자료를 그대로 추가(append)하여 분석하였음

○ 따라서 추가(append)된 기업이 비교집단에도 포함되어 이로 인한 추정결과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의 효과가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전체 비교집단에 비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발생가능한 편의의 크기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를 보면,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을 받는 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15.5% 투자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확률효과 분석결과는 세액감면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고정효과모형 추정은 단 한 번만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이 식별과정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세청 자료의 한계로 인해 기업의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는 설명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누락변수 편의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기업 가운데 투자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결과적으로 세액감면을 받은 역의 인과관계가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음

□ 이와 같은 고정효과 모형의 문제를 고려할 때,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를 연구개발 세액감면 제도의 온전한 인과효과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이 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3>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추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더미	0.155**	0.073
	(0.062)	(0.060)
ln(부채총계)	0.872***	0.889***
	(0.003)	(0.003)
ln(자산총계)	-0.272***	-0.298***
	(0.004)	(0.003)
상수항	7.412***	9.875***
	(0.226)	(0.491)
연도더미	o	o
대분류 산업더미	x	o
기업규모더미	x	o
상장더미	x	o
관측치수	244,000	244,000
기업수	25,308	25,308

주: 1. ( )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 기업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면서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과 동일 산업에 속한 기업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추정을 시도하였음

○ 이 경우에도 KISVALUE 자료상의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와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나.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고용효과 분석

□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자료에는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고용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고용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목록과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과 그 외 기업의 고용규모의 차이를 분석함

○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음

<표 4>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0.050**	0.056***
	(0.024)	(0.015)
부채비율	-0.000	-0.000***
	(0.000)	(0.000)
ln(인건비)	0.282***	0.337***
	(0.007)	(0.002)
ln(자산총계)	0.189***	0.156***
	(0.007)	(0.003)
ln(매출액)	0.171***	0.173***
	(0.006)	(0.002)
상수항	-10.353***	-9.074***
	(0.129)	(0.209)
연도더미	o	o
대분류 산업더미	x	o
기업규모더미	x	o
상장더미	x	o
관측치수	182,891	182,891
기업수	23,019	23,019

주: 1. ( )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입주에 따른 고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log(종업원 수) 변수를 사용하였음

○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채비율, 매출액, 인건비, 유형자산 등의 다양한 재무변수를 설명변수로 고려하였음

○ 고정효과 분석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종업원 수가 평균적으로 6.2% 증가하였으며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확률효과 분석에서 입주한 기업은 입주하기 전에 비하여 종업원 수가 평균적으로 5.5% 증가하였으며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강건성 검증을 위하여 비교집단을 입주기업과 동일한 산업군으로 축소하여 분석한 결과는 전 산업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 비교집단을 입주기업과 동일한 산업과 지역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입주기업 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하우스만 검정결과 확률효과모형을 기각하지 못하여 확률효과모형 추정결과를 준용하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전 산업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추정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그 외 지역특구 조세지원의 효과

□ 연구개발특구를 제외한 다른 특구의 경우 조세지원 실적이 희박하여 조세지원이 특구의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3. 타당성 분석 및 정책방향

가. 특정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목적

□ 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경우 좀 더 효율적인 부문에서 비효율적인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남

○ 그러므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은 그 지원으로 인한 이익이 명확하고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큰 경우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좁게 설정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지역 특구 조세지원제도와 다른 국가의 특정 지역 조세지원제도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적의 지역 특구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운영됨

○ 낙후지역 개발

○ 특정 지역에 특정 업종의 기업을 집중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 증대
○ 외국인투자 유치

□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많은 국가가 특정 지역에 투자한 기업을 지원하는 조세지원제도나 재정지원제도를 운영함
○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낙후지역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경제성장에 다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새만금 사업지역 등이 이러한 목적의 특구임

□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의 특구는, 특구의 형성 초기에 시너지 효과가 큰 기업들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킬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면, 투자재원 배분의 왜곡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국내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특구가 연구개발특구임
○ 그 외에도 아시아문화중심지,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이에 해당됨

□ 한편 일정한 기간 정부의 지원으로 특구가 성장하고, 상당한 수의 기업이 특구에 집중된 이후에는, 이미 집적된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업을 유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즉,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특구가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상당수의 기업이 특정 지역에 집적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정부 지원은 해당 특구에 기업을 과도하게 집중시킴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 특구는 다른 국가에서는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임
○ 경제자유구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이 이에 해당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도 있음

○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외국인투자 촉진 목적의 특구는 유지할 수 없음
○ 이들 특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낙후지역 개발 또는 시너지효과 극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특구의 유지 및 조세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나. 특정 지원의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

1)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의 단순화

□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가 과다하게 많고, 복잡하므로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특정지역 지원의 효과가 희석됨
○ 특구별로 서로 다른 목적과 지원요건을 가지고 있어 지원제도가 복잡함
○ 지원대상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다양한 목적의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경향이 있음

2)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편

□ 지원 목적별로 보면,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지원제도는 유지하면서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임
○ 현행 지역특구 중 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 이에 해당됨
○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지원은 새만금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저변에는 낙후지역 개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공지역 지원도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도에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세 가지 특구가 있는데, 기본적인 목적은 제주도의 발전에 있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도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무한정 지속 하기보다는 일정기간 연장 후 재평가 없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2002년에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7년 이후 지원실적이 발생함

○ 제주자유무역지역은 지정실적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뿐만 아니라 조세지원제도 자체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슈인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투자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요건을 추가하는 방안, 조세감면 한도에서 투자금액 한도를 축소하고 고용기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투자지원보다는 고용지원이 낙후지역 개발의 목적에 부합함

□ 장기적으로 낙후지역 설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방식도 낙후지역 지원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산업생산 수준, 인구밀도 등이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으로 낙후지역을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낙후지역의 경우, 낙후지역 상태가 유지되는 한 조세지원이 지속되는 것이 타당함

- 창업 후 일정 기간의 조세지원으로는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낙후지역으로 유지되는 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3) 시너지효과 증대 목적의 지역특구 지원제도 개편

□ 시너지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구 조세지원 중 연구개발특구 조세지원의 경우 특구가 형성되고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며, 이미 상당수의 기업이 입주하였음

○ 특구 지정연도: 대덕 2005년, 광주 2011년, 대구 2011년, 부산 2012년, 전북 2015년

○ 입주기업 수: 대덕 1,763개, 광주 1,140개, 대구 728개, 부산 891개, 전북 450개, 전체 5,018개

○ 처음에 대덕 특구에서 시작하였으나 이후 전국 각지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특정지역에 기업을 집중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특구의 경우 조세지원 실적이 거의 없어 조세지원이 기업을 특구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논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특구,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시사함

□ 한편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일몰종료 다음 해인 2019년도부터 이들 지역 특구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하면 이들 특구의 조성 및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음

○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숫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기업이 유입되고 있고, 대덕 특구는 2005년에 지정되어 이미 13년이 지났지만 그 외 특구는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특히 전북 특구는 2015년에 지정되어 조금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그 외 특구의 경우 아직 특구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특구의 개발과 홍보 및 기업유치 활동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조세지원을 폐지하면 특구의 발전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적어도 시그널 효과로 인해 특구를 홍보하고 기업을 유지하는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시너지효과 증대를 위한 특구로서 일몰이 도래되는 특구는 일단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몰기한의 연장과 재검토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폐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연장 후 재검토 없이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면, 향후 3~5년 정도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에는 재검토 없이 제도를 폐지하는 '폐지 예고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와 같은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조세특례제도의 단순화, 효율화를 위해서는 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고제를 도입하기 이전까지는 조세정책 담당부서인 기획재정부와 특구 담당부서가 조세지원제도 운영기간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심층평가 없이 조세특례를 폐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4) 외국인투자 지원 목적의 지역특구 지원제도 개편

□ 외국인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는 폐지하여야 함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낙후지역 개발이나 시너지효과 극대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기업도시의 경우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와 국내기업 지원제도가 유사하므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국내기업 지원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제주도 등 특정 지역 개발사업 조세지원의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유사한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은 폐지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됨

목 차

Ⅰ. 서 론 ····· 25

Ⅱ.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현황 ····· 31

1.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요 ····· 33
2. 지역특구별 지원요건 ····· 35
3. 외국인의 특구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 40
4. 요약 ····· 45

Ⅲ. 지역특구 지정 및 입주, 조세지원 현황 ····· 49

1. 연구개발특구 ····· 51
   가. 연구개발특구의 개념, 추진과정 ····· 51
   나.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입주현황 ····· 52
   다. 조세지원 실적 ····· 56
   라. 조세지원 외 특구지원 현황 ····· 59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62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개념, 추진과정 ····· 62
   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현황 ····· 64
   다. 조세지원 실적 ····· 67
   라. 특구감면 외의 조세지원 및 기타 지원 ····· 67
3.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 70
   가.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개념, 추진과정 ····· 70
   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현황 ····· 71
   다. 조세지원 실적 ····· 73
   라. 특구감면 외의 조세지원 및 기타 지원 ····· 74
4. 기업도시 ····· 76

가. 기업도시의 개념 ····· 76
나. 기업도시 지정 및 입주 현황 ····· 77
다. 조세지원 실적 ····· 80
라. 특구감면 외 조세지원 및 기타 지원 ····· 83
5.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지역 ····· 85
가. 지역개발사업구역 ····· 86
나. 지역활성화지역 ····· 87
다. 해양박람회특구 ····· 89
라. 새만금사업지역 ····· 92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 96
7. 금융중심지 ····· 99
8. 첨단의료복합단지 ····· 101
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념, 추진과정 ····· 101
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현황과 조세감면 ····· 102
다. 조세감면 외 입주기업 지원 ····· 104
9. 요약 ····· 106

Ⅳ. 외국의 유사한 지원제도 ····· 109

1. 동남아 주요 국가의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 111
가. 중국 ····· 111
나. 대만 ····· 112
다. 말레이시아 ····· 112
라. 요약 ····· 115
2. 주요 선진국의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 116
가. 미국 ····· 117
나. 영국 ····· 118
다. 일본 ····· 120
라. 프랑스 ····· 123
마. 호주 ····· 125
바. 요약 ····· 125

Ⅴ. 지역특구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분석 ····· 127
1.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매출액, 투자, 고용 분석 ····· 129
가. 분석자료 ····· 130
나. 분석방법 ····· 132
다. 분석결과 ····· 133
라. 강건성 검증 ····· 138
2.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의 투자효과 분석 ····· 143
가.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 실적 ····· 143
나. 투자효과 분석 자료 및 분석방법 ····· 145
다. 분석결과 ····· 147
라.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의 경제성 분석결과 요약 ····· 149
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세감면 효과 분석 ····· 150
가. 단지 입주기업 및 감면기업의 특성 ····· 150
나. 감면기업의 행태분석 ····· 154
다. 분석결과 요약 ····· 157
4.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세감면 효과 분석 ····· 157
가. 단지 입주기업 및 감면기업의 특성 ····· 157
나. 감면기업의 행태분석 ····· 159
다. 분석결과 요약 ····· 162
5. 기업도시 등 기타 특구의 조세감면 효과 ····· 162

Ⅵ.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관련 국제기준 ····· 167

Ⅶ. 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의 타당성 분석 ····· 173
1.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 ····· 175
가. 정부 개입의 근거 ····· 175
나. 정부 개입 근거의 타당성 ····· 176
2. 정책대상의 적절성 ····· 181
가. 지원대상 특구의 적절성 ····· 181
나. 특구별 지원대상 업종의 적절성 ····· 185

3. 적용방법의 적절성 ····· 187
가. 지역특구 조세감면 적용방법의 특징 ····· 187
나. 조세휴일형 조세감면제도의 타당성 ····· 188
다. 고용기준 한도의 적절성 ····· 190
4.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 191
가. 다른 조세 및 재정지원 ····· 191
나. 조세지원 중복 배제 ····· 196

Ⅷ. 정책방향 ····· 199

1.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의 개편의 기본방향 ····· 201
가.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단순화 ····· 201
나. 고용요건 강화 ····· 203
다. 지원방식의 합리화 ····· 204
2. 낙후지역 개발 목적의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편방향 ····· 205
3. 시너지효과 증대 목적의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편방향 ····· 206
4. 외국인투자 지원 목적의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편방향 ····· 209

참고문헌 ····· 210

부 록 ····· 213

<부표 1> 지역특구 지정내역 ····· 215

표 목 차

<표 Ⅱ-1>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관 ····· 34
<표 Ⅱ-2> 지역특구별 입주기업 및 창업기업의 조세지원 요건 ····· 36
<표 Ⅱ-3> 지역특구별 개발사업 시행자 조세지원 요건 ····· 39
<표 Ⅱ-4> 지역특구 조세지원과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비교 ····· 41
<표 Ⅱ-5> 지역특구 조세지원과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요건 비교 - 5년형 ····· 43

<표 Ⅲ-1>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2016년 1월 기준) ····· 53
<표 Ⅲ-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현황1) 2) ····· 54
<표 Ⅲ-3> 연구개발특구 매출현황 ····· 54
<표 Ⅲ-4>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비 현황 ····· 55
<표 Ⅲ-5> 연구개발특구 인력 현황 ····· 55
<표 Ⅲ-6> 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 ····· 56
<표 Ⅲ-7> 연구개발특구 코스닥 등록 기업,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현황 ····· 56
<표 Ⅲ-8> 법인세·소득세 감면실적(2007~2016) ····· 58
<표 Ⅲ-9>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프로그램 ····· 59
<표 Ⅲ-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 ··· 60
<표 Ⅲ-11> 대전광역시 지역 유치 및 투자 촉진 조례의 주요 내용 ····· 61
<표 Ⅲ-1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연도별 입주 및 퇴거 기업 수 ····· 65
<표 Ⅲ-1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업종별 분포 ····· 66
<표 Ⅲ-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세지출 실적 ····· 67
<표 Ⅲ-1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 대상 세제혜택 내용 ····· 69
<표 Ⅲ-16> 제주투자진흥지구 연도별 지정 및 해제 현황 ····· 72
<표 Ⅲ-17> 제주투자진흥지구 업종별 지정 현황 ····· 73
<표 Ⅲ-18> 제주투자진흥지구 연도별 업종별 지정 현황(지정 상태인 기업) ····· 73
<표 Ⅲ-19>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지출 실적 ····· 74
<표 Ⅲ-20> 기업도시 조세지원과 해당 특구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비교 ····· 81

<표 Ⅲ-21> 기업도시 등에 대한 조세지원 실적 ····· 83
<표 Ⅲ-22> 기업도시 지원 - 조세감면, 보조금 등 ····· 84
<표 Ⅲ-23>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지표 ····· 88
<표 Ⅲ-24> 성장촉진지역 및 지역활성화지역 지정현황(2015.3. 지정)1) ····· 89
<표 Ⅲ-25>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추진과정 ····· 90
<표 Ⅲ-26> 여수 해양박람회 특구 부지 및 시설내역 ····· 91
<표 Ⅲ-27> 새만금사업 추진 연혁 ····· 93
<표 Ⅲ-28>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 현황 ····· 95
<표 Ⅲ-2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현황 ····· 98
<표 Ⅲ-30> 대구경북첨단복합단지 입주현황 ····· 102
<표 Ⅲ-3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세지원제도 개관 및 실적 ····· 103

<표 Ⅳ-1> 일본 지역특구 현황 ····· 121

<표 Ⅴ-1> KISVALUE에 공시된 외감기업의 기초통계량 ····· 131
<표 Ⅴ-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기초통계량 ····· 131
<표 Ⅴ-3>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 추정 ····· 133
<표 Ⅴ-4>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추정 ····· 135
<표 Ⅴ-5>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연구비지출에 미친 영향 추정 ····· 136
<표 Ⅴ-6>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 138
<표 Ⅴ-7>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산업분류현황(대분류) ····· 139
<표 Ⅴ-8> 강건성 분석에 사용된 본사기준 지역 관측치 ····· 140
<표 Ⅴ-9>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 추정 ····· 140
<표 Ⅴ-10>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추정 ····· 141
<표 Ⅴ-11>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연구비지출에 미친 영향 추정 ····· 142
<표 Ⅴ-12>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 143
<표 Ⅴ-13>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신고현황(조특법 제12조의2) ····· 144
<표 Ⅴ-14>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분석자료 비교 ····· 145
<표 Ⅴ-15>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추정 - 전산업 ···· 147
<표 Ⅴ-16>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추정 ····· 148

<표 Ⅴ-1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표본 수 ····· 151
<표 Ⅴ-1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표본의 연도별 입주기업 수 ····· 152
<표 Ⅴ-1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재무정보 ····· 152
<표 Ⅴ-2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표본 중 퇴거기업 ····· 153
<표 Ⅴ-2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퇴거기업과 비퇴거기업의 재무정보 비교 ····· 153
<표 Ⅴ-2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세감면 효과분석 자료의 기초통계량 ····· 154
<표 Ⅴ-2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감면기업분석 - RE 추정결과(전지역) ····· 155
<표 Ⅴ-2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감면기업분석 - RE 추정결과(제주지역) ····· 156
<표 Ⅴ-25>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업 분석 표본 구성 ····· 158
<표 Ⅴ-26> 제주투자진흥지구 분석 표본의 연도별 지정 현황 ····· 158
<표 Ⅴ-27> 제주투지진흥지구 분석표본의 재무정보 비교 ····· 159
<표 Ⅴ-28> 기초통계량(감면 기업) ····· 160
<표 Ⅴ-29>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기업분석 - RE 추정결과(전지역) ····· 161
<표 Ⅴ-30>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기업분석 - RE 추정결과(제주지역) ····· 161

<표 Ⅶ-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원내용 ····· 194
<표 Ⅶ-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투자인센티브 ····· 195
<표 Ⅶ-3> 부산국제금융중심지 인센티브 ····· 196
<표 Ⅶ-4> 지역특구 조세지원과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조세지원 ····· 197

그 림 목 차

[그림 Ⅲ-1] 지역개발사업제도 통합(2015년) ····· 87

[그림 Ⅶ-1] 두 지역간의 투자재원 배분 - 균등한 과세 ····· 177
[그림 Ⅶ-2] 두 지역간의 투자재원 배분 - 특정 지역 조세지원 ····· 178

[그림 Ⅷ-1] 조세감면 대상 지역특구 지정 현황 ····· 202

Ⅰ. 서 론

Ⅰ. 서 론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특구에 대해 조세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지, 지원규모 및 대상은 적절한지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함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은 동법 제121조의8~제121조의22에 규정되어 있음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은 특구 입주·창업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특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입주·창업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대부분 2018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정해져 있음

- 예외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일몰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임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심층평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2018년 말로 되어 있는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라고 할 수 있는바, 본 연구에서도 일몰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함

- 그 외에 일몰을 연장하는 경우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조세지원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정부의 법인세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특정부문·지역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함

□ 일부 특구의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요구됨

○ 2017년 12월에 EU가 지정한 비협조적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었던 이유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때문이었음

○ 2018년 초에 이 제도를 개편할 것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비협조적 국가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지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구 조세지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정책동향을 보면, 정부는 지난 수년간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을 축소하여 수평적 공평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음

○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투자보다 고용증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

- 2010년에 대표적 투자지원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개편하였음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와 고용을 모두 고려하여 조세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2017년 일몰을 끝으로 이 제도도 폐지되었음

○ 또한 2017년 세제개편에서는 대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상하였음

○ 이러한 정책 흐름의 맥락에서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평가하고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및 지역특구 현황 분석

○ 외국의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지원제도 조사

○ 국제규범과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의 정합성 분석

○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의 타당성 분석

○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및 지역특구 현황 분석

○ 지역특구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특징을 정리함

○ 지역특구별 특구 지정현황과 특구 입주기업의 투자 및 고용현황을 조사 정리하고 특징을 살펴봄

○ 각 특구별로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현황과 조세지원 실적 추이를 검토함

□ 외국의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지원제도 조사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조세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제도를 조사 정리함

○ 조세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남아의 경쟁국들과 우리나라에서 정책 수립 시 많이 참조하는 선진국들의 제도를 조사함

□ 국제기준과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의 정합성 분석

○ EU의 비협조국가 지정의 근거가 되는 OECD/BEPS Action 5의 유해조세제도 판정기준을 검토하고, 그 기준에 비춰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를 평가한 후 개편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함

□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 지역특구별로 조세지원 실적을 보면, 연구개발특구의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이 2016년 26개로 비교적 많은 편이며, 다른 특구는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이 10개 미만이거나 아예 없음

○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과 특구 입주기업, 그리고 그 외 기업의 자료를 비교하여 조세지원의 효과를 분석함

○ 연구개발특구 외의 다른 특구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실적 자료를 사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함

- 소수라도 조세지원 실적이 있는 특구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의 세부담, 투자 등 지표와 감면을 받지 않은 기업의 지표를 단순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조세지원 실적이 없는 특구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지 않음

□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의 타당성 분석

○ 타당성 분석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적용대상의 적절성, 적용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정부 개입의 필요성 분석에서는 각 특구의 설정 목적을 고려하여 정부 개입의 필요성 여부를 분석함

○ 적용대상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특구별로 지원대상 기업의 업종과 규모의 적절성을 평가함

○ 적용방법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각 제도별로 적용기한, 적용업종 및 투자 규모, 공제한도의 적절성을 검토함

○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은 조세지원과 비조세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조세지원에서는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봄
- 비조세지원에서는 조세 외에 각 특구별로 지원되는 재정지원, 입지지원 등에 대해 살펴봄

□ 제도 개편방안은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특구별 조세지원제도 발전방향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구 조세지원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함

- 내·외국인 동등대우
- 제도의 효과성
- 제도의 단순화, 수평적 형평성 제고 등

○ 개별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특구별 조세지원의 효과분석 및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특구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논의함

Ⅱ.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현황

Ⅱ.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현황

1.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요

□ 본 연구의 검토대상이 되는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는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특구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역특구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임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적용됨

○ 지역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역특구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세지원으로서, 다른 지역에 있던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금융중심지에 적용됨

○ 지역특구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역특구의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조세감면임

-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조세지원대상임

□ 지역특구 입주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처음 3년간 100% 감면하고, 그다음 2년간 50% 감면함

○ 개발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우 처음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감면함

○ 조세지원은 사업개시일 이후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시작하며, 사업개시 후 5년이 될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시작함

□ 입주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일몰기한이 없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조세지원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 적용되며, 그 외 입주·창업기업 지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창업한 경우에 적용됨

<표 Ⅱ-1>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관

	조특법 규정	도입 연도	법인세 소득세 감면	법인세 외 감면	일몰 기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제12조의2	2006	3년 100% 2년 50%		201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제121조의8	2002	3년 100% 2년 50%	관세[1)]	2018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	2002	3년 100% 2년 50%	관세[2)]	2018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제121조의9 제1항 제2호	2002	3년 100% 2년 50%		2018
기업도시 창업기업[3)]	제121조의17 제1항 제1호	2005	3년 100% 2년 50%		2018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창업기업[3)]	제121조의17 제1항 제3호	2010[4)]	3년 100% 2년 50%		2018
여수 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3)]	제121조의17 제1항 제5호	2013	3년 100% 2년 50%		20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제121조의20	2010	3년 100% 2년 50%		2018
금융중심지 창업기업[3)]	제121조의21	2010	3년 100% 2년 50%		201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제121조의22	2011	3년 100% 2년 50%		2019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제121조의9 제1항 제3호	2002	3년 50% 2년 25%		
기업도시 개발사업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	2005	3년 50% 2년 25%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개발사업	제121조의17 제1항 제4호	2010[4)]	3년 50% 2년 25%		
여수 해양박람회특구 개발사업	제121조의17 제1항 제6호	2013	3년 50% 2년 25%		
새만금 개발사업	제121조의17 제1항 제7호	2017	3년 50% 2년 25%		

주: 1) 2018. 12. 31까지 수입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법 제121조의10)
2) 2018. 12. 31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제121조의11)
3)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4) 2010년에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도입, 2015년에 「지역개발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구 등 5개 지역개발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지역으로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지역 조세지원으로 개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개정연혁, 2018. 3. 12 접속

□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액 총합계액이 다음과 같이 규정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음

○ 공제한도는 투자금액 한도와 고용기준 한도의 합계금액임

- ① 투자금액 한도: 투자 누계액의 50%
- ② 고용기준 한도: 상시근로자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 누계액의 20% 중 작은 금액

○ 단 서비스업의 경우, 총감면액이 위의 감면한도를 초과하면 아래 ①과 ② 중 작은 것을 한도로 감면이 허용됨

- ①투자금액 한도로 투자 누계액의 100%
- ②고용기준 한도로 상시근로자 1인당 2천만원의 금액

2. 지역특구별 지원요건

□ <표 Ⅱ-2>에서는 지역특구별 입주기업 및 창업기업 조세지원 요건을 정리하였음

○ 각 특구별로 특구의 지정목적을 고려하여 조세지원 대상 업종과 규모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은 겹치는 것으로 판단됨

○ 일부 특구는 특구의 지정목적에 국한하여 지원대상을 좁게 설정하는 한편 일부 특구는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게 설정됨

□ 먼저 지원대상이 좁게 설정된 경우를 보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첨단기술산업이 지원대상임

○ 첨단기술산업: 생명공학 관련산업,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산업

○ 연구개발특구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이 지원대상임

- 첨단기술기업: 해당 분야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연구개발비 및 특허권에 따른 생산·판매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일정비율 이상인 기업임
- 연구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표 Ⅱ-2> 지역특구별 입주기업 및 창업기업의 조세지원 요건

	지원업종 및 투자규모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첨단기술산업 • 생명공학 관련사업,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관광 관련 업종: 투자규모 2천만달러 이상 • 관광업(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 휴양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골프장 제외)),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 관광식당업 - 문화산업: 투자규모 500만달러 이상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업 • 국제학교, 의료기관, 교육원(연수원 등) - 참단기술산업 등: 투자규모 500만달러 이상 • 첨단기술산업,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물산업클러스터 내)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제조업: 수출 주목적, 투자규모 1천만달러 이상, 상시고용 규모 100명 이상 - 물류업: 투자규모 500만달러 이상
기업도시 창업기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창업기업 여수 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	- 제조업 등: 투자규모 100억원 이상 •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관광업(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 휴양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골프장 제외)),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 관광식당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 연구개발업: 투자규모 20억원 이상 - 물류업: 투자규모 50억원 이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문화산업: 투자금액 5억원 이상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 관광산업 등: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 관광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골프장 제외) •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을 운영하는 사업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 금융 및 보험업: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해당 지역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 보건의료기술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조세특례제한법」및 동법 시행령, 2018. 3. 12 접속

□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제조업과 물류업이 지원대상임

○ 제조업의 경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으로서 총투자규모가 1천만달러 이상,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이어야 함

○ 물류업은 투자규모가 500만달러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투자규모 20억원 이상, 해당 지역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어야 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은 보건의료기술산업의 기업이 지원대상이며, 투자규모 및 고용 요건은 없음

○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심지, 기업도시 등 지원제도와는 달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이 산업의 기업이 한 지역에 모여서 사업을 수행하면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조세지원은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이 지원대상임

○ 문화산업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 관광산업은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관광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골프장 제외)
-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을 운영하는 사업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 이 경우에도 창업기업이 아닌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지원을 하는데, 시너지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됨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그 외에도 첨단기술산업 등이 포함됨

○ 관광산업은 투자금액이 2천만달러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이 됨

- 관광업: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
- 휴양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골프장 제외)
-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 관광식당업

○ 문화산업, 첨단기술산업 등은 투자금액이 500만달러 이상이 경우에 조세지원이 적용됨

- 문화산업
-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 궤도사업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업
- 국제학교, 의료기관, 교육원(연수원 등)
- 첨단기술산업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물산업클러스터 내)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이하에서 '기업도시 등'이라고 칭함)의 경우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기업에는 조세지원이 적용되지 않음

○ 앞서 정리한 다른 특구와 달리 기업도시 등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특정 업종을 지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원대상 업종이 다양함

○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은 투자규모가 100억원 이상이어야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제조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관광업(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 휴양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골프장 제외)),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 관광식당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 연구개발업은 투자규모 20억원 이상이면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물류업은 투자규모 50억원 이상이면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기업도시 등, 그리고 새만금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도 조세지원이 제공됨

○ 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원대상이 됨

<표 Ⅱ-3> 지역특구별 개발사업 시행자 조세지원 요건

	지원요건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기업도시 개발사업	-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개발사업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역개발사업 내의 토지 소유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 또는 앞에서 열거한 자 둘 이상이 출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여수 해양박람회특구 개발사업	-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동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새만금 개발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 사업 -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 또는 새만금사업을 지역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앞에서 열거한 자 둘 이상이 출자한 비율 합이 50%를 넘는 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조세특례제한법」및 동법 시행령, 2018. 3. 12 접속

3. 외국인의 특구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 <표 Ⅱ-4>에서는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각 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를 비교하였음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은 앞의 제1절과 제2절에서 설명한 것으로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국내 기업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각 특구의 입주기업, 창업기업, 개발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조세지원을 말함(이하 본고에서 '지역특구 조세지원(또는 감면)')

○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규정된 것으로 국내기업 중 외국인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지원을 말함(이하 본고에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또는 감면)')

□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지원만 적용되는 경우: 내국인·외국인 동등대우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 창업기업, 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조세지원
-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개발사업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모두 있는 경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기업도시 창업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기업도시 개발사업, 새만금 개발사업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만 있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새만금 사업지역 입주기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제주 제외)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표 Ⅱ-4> 지역특구 조세지원과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비교

	지역특구 감면		외국인투자 지원		특기사항
	조특법 규정	법인세 소득세 감면	조특법규정	법인세 소득세 감면[1]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제12조의2**	**3년 100% 2년 5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제121조의8	3년 100% 2년 50%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7년형	외투지역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	3년 100% 2년 50%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7년형	외투지역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제121조의9 제1항 제2호	3년 100% 2년 50%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	5년형	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 창업기업	제121조의17 제1항 제1호	3년 100% 2년 50%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6	5년형	입주기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	**제121조의17 제1항 제3호, 제5호**	**3년 100% 2년 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제121조의20**	**3년 100% 2년 5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제121조의21**	**3년 100% 2년 50%**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제121조의22**	**3년 100% 2년 50%**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호	7년형, 5년형	외투지역 (7년형)
새만금 사업지역 입주기업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8	7년형, 5년형	외투지역 (7년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5	5년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	5년형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제121조의9 제1항 제3호	3년 50% 2년 25%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4	5년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	3년 50% 2년 25%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7	5년형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개발사업	**제121조의17 제1항 제4호, 제6호**	**3년 50% 2년 25%**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제121조의17 제1항 제7호	3년 50% 2년 25%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9	5년형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3	5년형	

주: 1) 7년형: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5년형: 3년간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2018. 3. 13 접속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특정구역 입주기업 중에서 7년형 조세지원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음

○ 이 경우 조세지원 요건을 보면, 지역특구 입주기업으로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지원 요건을 갖춰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 7년형 지원은 5년간 세액의 100%가 감면되고, 그 후 2년간 50%가 감면되어 총 7년간 감면되는 것을 말함

○ 그런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요건을 갖추면 이들 특구에 입주하지 않아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해서 7년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제도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5년형 지원이 적용되는 경우에 국한하여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와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를 비교·검토함

○ 지역특구 입주·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5년형이 적용됨

□ 5년형 지원을 받는 경우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과 지역특구 조세지원의 지원요건을 비교해 보면, 기업도시의 경우 지역특구 조세지원에서는 창업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에서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함(<표 Ⅱ-5> 참조)

○ 외국인투자 지원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입주기업에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 지역특구 지원과 외국인투자 지원의 지원대상 업종에는 차이가 없음

○ 요구하는 투자규모를 보면, 지역특구는 제조업 등 100억원, 연구개발업 20억원, 물류업 50억원이고, 외국인투자 지원은 외국인투자 규모가 각각 1천만달러, 200만달러, 500만달러로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제조업 등'은 제조업 외에도 과학기술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관광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노인복지지설 운영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포괄함

○ 다만, 내국인과 외국인의 합작투자로 지역특구 조세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상당히 작아도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함에 있어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요건이 더 엄격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6에 규정된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이 실질적인 의미가 크지 않은 규정임을 시사함

- 단, 감면 한도 중 고용기준 한도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이 두 배 수준임

<표 Ⅱ-5> 지역특구 조세지원과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요건 비교 - 5년형

	지역특구 조세지원 요건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요건
기업도시 창업기업	- 제조업 등: 투자규모 100억원 - 연구개발업: 투자규모 20억원 - 물류업: 투자규모 50억원 ★ 각 업종의 구체적인 내역은 <표 Ⅱ-2> 참조	- 제조업 등: 외투 1천만달러 - 연구개발업: 외투 200만달러 - 물류업: 외투 500만달러 ★ 각 업종의 구체적인 내역은 <표 Ⅱ-2> 참조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제조업 등: 외투 1천만달러 - 물류업: 외투 500만달러 - 의료기관: 외투 500만달러 - 연구개발: 외투 100만달러, 상시고용 연구인력 10명 ★ 제조업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2>의 기업도시 제조업 등의 내용 참조
새만금 사업지역 입주기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제주자유무역지역> - 수출 목적의 제조업: 투자규모 1천만달러, 상시고용규모 100명 - 물류업: 투자규모 500만달러	- 제조업: 외투 1천만달러 - 물류업: 외투 500만달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 개발사업비 1천억원 ★ 3년 50%, 2년 25% 감면	- 외투 1천만달러 - 총사업비 1억달러 - 외투비율 50% ★ 3년 100%, 2년 50% 감면
기업도시 개발사업	- 개발사업비 1천억원 ★ 3년 50%, 2년 25% 감면	- 외투 3천만달러 - 총사업비 5억달러 - 외투비율 50% ★ 3년 100%, 2년 50% 감면
새만금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2018. 3. 12 접속

□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지역특구 조세지원이 없고 외국인투자 지원만 있는데, 지원요건은 기업도시 입주기업 지원대상과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음

○ 기업도시 입주기업 지원대상은 모두 경제자유구역 지원대상이 되며, 이에 더하여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의료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 지원규모도 대체로 유사하나 두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

- 연구개발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규모가 100만달러 이상이고 상시고용 연구인력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됨(기업도시는 외국인투자 200만달러 이상)
- 기업도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5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새만금 사업지역 입주기업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동등한 수준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이 적용됨

□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과 물류업이 지원대상임

○ 제조업은 외국인투자 규모가 1천만달러 이상, 물류업은 외국인투자 규모 500만달러 이상이면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대상이 됨

○ 자유무역지역 중 제주도에 지정된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특구 조세지원으로 외국인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음

- 수출목적의 제조업으로서 투자규모가 1천만달러 이상이고, 상시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 물류업으로서 투자규모가 500만달러 이상인 경우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동등한 수준의 조세지원이 적용됨

□ 개발사업자의 경우, 지역특구 조세지원을 보면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새만금 사업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조세지원대상이 됨

○ 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의 조세감면이 적용됨

□ 개발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을 보면,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와 기업도시 및 새만금 사업지구 개발사업자의 지원요건에 차이가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외국인투자 규모가 1천만달러 이상, 총사업비가 1억달러 이상, 그리고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면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됨

- 즉, 총사업비가 같은 경우에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요건을 충족시키면, 외국인투자분에 대해서는 지역특구 지원의 두 배 정도의 지원을 받음

○ 기업도시와 새만금 사업지구 사업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규모가 3천만달러 이상, 총사업비가 5억달러 이상, 그리고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면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지역특구 지원에 비해 더 엄격하고, 조세지원 규모는 두 배 정도임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지역특구 조세지원은 적용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에 적용되는 조세지원의 요건과 조세지원 규모는 기업도시 및 새만금 사업지구 개발사업자와 같음

4. 요약

□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는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특구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역특구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임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 지역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역특구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세지원으로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기업도시 등,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 지역특구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역특구의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조세감면임

-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 특구,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 지역특구 입주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처음 3년간 100% 감면하고, 그다음 2년간 50% 감면하는 5년형 지원임

○ 개발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우 처음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감면함

□ 입주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일몰기한이 없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조세지원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 적용되며, 그 외 입주·창업기업 지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창업한 경우에 적용됨

□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액 총합계액이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음

○ 감면한도는 투자금액 한도와 고용기준 한도의 합계금액임

- ① 투자금액 한도: 투자 누계액의 50%
- ② 고용기준 한도: 상시근로자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 누계액의 20% 중 작은 금액

○ 단, 서비스업의 경우에 총감면액이 위의 감면한도를 초과하면 아래 ①과 ② 중 작은 것을 한도로 감면이 허용됨

- ① 투자금액 한도로 투자 누계액의 100%
- ② 고용기준 한도로 상시근로자 1인당 2천만원의 금액

□ 지역특구별 입주기업 및 창업기업 조세지원 요건을 보면, 각 특구별로 특구의 지정목적을 고려하여 조세지원 대상 업종과 규모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은 같은 것으로 판단됨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첨단기술산업

○ 제주자유무역지역: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물류업

○ 금융중심지: 금융 및 보험업

○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의료기술산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관광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 관광산업, 문화산업, 첨단기술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됨
○ 기업도시 등의 경우에는 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관광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연구개발업, 물류업 등이 지원대상으로 지원대상이 광범위함
○ 각 특구별, 업종별로 최소 투자 요건이 있으며, 고용요건이 규정된 경우도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기업도시 등, 그리고 새만금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도 조세지원이 제공됨
○ 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됨

□ 일부 특구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해 별도의 조세지원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지원만 적용되는 경우: 내국인·외국인 동등대우
- 연구개발특구,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창업기업
-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개발사업
○ 지역특구 조세지원과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이 모두 있는 경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 입주·창업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새만금 사업지구 개발사업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만 있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사업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제역(제주 제외)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기업도시의 경우 지역특구 지원과 외국인투자 지원의 지원대상 업종에는 차이가 없음
○ 요구하는 투자규모를 보면, 지역특구는 제조업 등 100억원, 연구개발업 20억원, 물류업 50억원이고, 외국인투자 지원은 외국인투자 규모가 각각 1천만달러, 200만달러, 500만달러로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감면 한도 중 고용기준 한도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이 두 배 수준임

□ 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 사업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역특구 조세지원이 없고 외국인투자 지원만 있는데, 지원요건은 기업도시 입주기업 지원대상과 유사함

□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제조업과 물류업이 지원대상임

○ 제조업은 외국인투자 규모가 1천만달러 이상, 물류업은 외국인투자 규모 500만 달러 이상이면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대상이 됨

○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지역특구 조세지원은 없음

□ 개발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을 보면,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와 기업도시 및 새만금 사업지구 개발사업자의 지원요건에 차이가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외국인투자 규모가 1천만달러 이상, 총사업비가 1억 달러 이상, 그리고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면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됨

- 총사업비가 같은 경우에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두 배 정도의 지원을 받음

○ 기업도시와 새만금 사업지구 사업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규모가 3천만달러 이상, 총사업비가 5억달러 이상, 그리고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면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지역특구 지원에 비해 더 엄격하고, 조세지원 규모는 두 배 정도임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지역특구 조세지원은 없으며, 외국인투자에 적용되는 조세지원의 요건과 조세지원 규모는 기업도시 및 새만금 사업지구 개발사업자와 같음

Ⅲ. 지역특구 지정 및 입주, 조세지원 현황

Ⅲ. 지역특구 지정 및 입주, 조세지원 현황

1. 연구개발특구

가. 연구개발특구의 개념, 추진과정

□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 특구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2005년 9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하였고, 진흥재단은 다음의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 내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성과 발굴·확산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강화
-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
- 특구내 공공 R&D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연구개발특구는 197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어 왔음

○ 1970년대 인프라 조성시기: 연구개발특구는 1974년 대덕연구단지로 출발하여 정부의 주도 아래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반조성 및 연구소 건설에 착수하며 국가연구개발 역량강화라는 목적아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함

○ 1980년대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시기: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입주 및 대덕연구단지의 대전시 편입 등 행정지원이 뒷받침됨

○ 1990년대 산학연 네트워크의 토대 마련: 한국과학기술원(KAIST)등의 대학이 입주하였으며 대림산업 대덕연구소 및 호남석유화학 대덕연구소 등의 민간기업 부설기관이 입주하며 혁신창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1992년 대덕연구단지조성 준공 완료와 1993년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정 등 혁신창출을 위한 도약의 걸음에 인프라와 제도의 지원을 받음

○ 2000년대 혁신클러스터 형성과 첨단기업 입주 지원: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명칭을 대덕밸리로 바꾸었고, 과학기술에 대한 네트워크 및 연구개발형 혁신클러스터 창조라는 슬로건과 함께 첨단기술 사업화와 벤처 생태계 조성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음

○ 2004년에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대덕연구개발특구로 명칭을 변경하며 특구지원본부 설립 등 본격적으로 연구개발특구로서의 역할을 시작함

○ 2006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경제구조 안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신설됨

○ 이후의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아래 발전방향과 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의 연구개발특구가 추가로 지정됨

□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은 1차 기간 2006~2010년, 2차 기간 2011~2015년, 3차 기간 2016~2019년 등의 기간별 계획으로 수립·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3차 육성종합계획 하에 특구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나.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입주현황

□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자체의 장과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함

○ 국가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세워진 연구개발특구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최초 지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연구

단지의 성과가 전국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광주, 대구 등 광역경제권의 거점지역을 추가특구로 지정하여 연구단지의 성과 연계를 도모함

○ 2018년 현재 대덕(2005년 7월 지정), 광주(2011년 1월), 대구(2011년 1월), 부산(2012년 11월), 전북(2015년 8월) 5개의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었으며 각 특구에 따라 지역적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화분야를 차별 선정함

<표 Ⅲ-1>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2016년 1월 기준)

구분	지정연도	범위	총면적	특화분야
대덕	2005.07.	대전시 유성구 등 일원	67.8㎢	IT, 나노 융복합, 바이오 의약 등
광주	2011.01.	광주시 장성군 일원	18.7㎢	차세대전지, 친환경자동차 부품 등
대구	2011.01.	대구시 및 경산시 일원	22.2㎢	스마트IT·의료용 융복합기기 등
부산	2012.11.	부산시 강서구 등 일원	14.1㎢	해양플랜트, 그린해양기계 등
전북	2015.08.	전북 전주, 정읍, 완주 일원	16.3㎢	농생명 융합, 융복합소재 부품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정리, https://www.innopolis.or.kr/, 2018. 5. 18 접속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현황을 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총 5,018개의 기관이 입주하였는데, 기관들은 크게 연구분야와 비연구분야, 기업으로 구분되며 기업을 제외한 214여개 기관 중 연구분야 기관이 약 51% 정도를 차지함(<표 Ⅲ-2> 참조)

○ 2005년 7월 설립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이 1,763개 기관이며, 2011년 1월 2차로 지정된 광주는 1,140개 기관, 대구는 728개 기관이 입주하였음

○ 2011년에 추가 지정된 광주과 대구의 입주기관이 1,868개에 달하는 것에 비춰볼 때, 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이 지역 내 한정되어 있는 지리적 한계를 가진 기업들의 집적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역 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3차로 지정된 부산특구에는 910개의 기관이 입주하였고, 4차로 지정된 전북특구에는 450개의 기관이 집주하였음

○ 대덕특구와 비교하여 볼 때, 나중에 지정된 특구에서 빠른 속도로 입주기관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줌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매출실적을 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모든 연구개발특구의 전체 기업체의 매출은 44조 5,919억원임(<표 Ⅲ-3> 참조)

○ 특구별 비중을 보면, 대덕이 3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이 광주 23.0%, 대구 18.7%, 부산 14.2%, 전북 5.7%의 순임

<표 Ⅲ-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현황[1) 2)]

(단위: 개)

구분	연구분야						비연구분야				기업	합계
	공공연구기관				기타 연구 기관	소계	정부 및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 기관 등	소계		
	정부 출연 (연)	교육 기관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국공립 연구 기관			정부 기관	공공 기관				
대덕	26	7	0	3	10	46	10	15	23	48	1,669	1,763
광주	4	4	3	2	3	16	11	10	10	31	1,093	1,140
대구	5	8	1	0	1	15	2	5	5	12	701	728
부산	4	6	1	0	1	12	1	2	4	7	891	910
전북	7	4	1	5	4	21	0	6	0	6	450	477
전체	46	29	6	10	19	110	24	38	42	104	4,804	5,018

주: 1) 기업 외 기관은 2017년 12월, 기업은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 제시된 통계자료만으로는 기업에 대한 산업분류나 기관성격을 전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자료: 연구개발진흥재단 홈페이지 통계자료, https://www.innopolis.or.kr/, 2018. 5. 18 접속

<표 Ⅲ-3> 연구개발특구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전체
기업체 전체	17,111,015	10,262,279	8,352,144	6,317,234	2,549,259	44,591,931

자료: 연구개발진흥재단 홈페이지 통계자료(2016년 12월 기준), https://www.innopolis.or.kr/, 2018. 5. 18 접속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연구개발비 현황을 보면, 201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총연구개발비는 9조 9,614억원이며, 지역별 비중은 대덕(78.3%), 광주(4.9%), 대구(6.3%), 부산(5.0%), 전북(5.5%)의 순임(<표 Ⅲ-4> 참조)

○ 연구개발비 비율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여 압도적이며, 그 외 네 개의 특구는 5%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Ⅲ-4>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자체부담	외부조달	총 연구개발비
대덕	4,383,843	3,417,058	7,800,901
광주	175,515	311,311	486,826
대구	179,736	447,059	626,795
부산	103,377	394,432	497,809
전북	60,939	488,145	549,084
전체	4,903,410	5,058,005	9,961,415

자료: 연구개발진흥재단 홈페이지 통계자료(2016년 12월 기준), https://www.innopolis.or.kr/, 2018. 5. 18 접속

□ 연구개발특구 인력현황을 보면, 조사를 통해 집계된 총종업원 수(178,270명) 중 연구기술직(A)의 비중이 40.8%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박사 이상의 고급 인력이 석사와 학사 인력보다 많은 것도 특징임

<표 Ⅲ-5> 연구개발특구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연구기술직(A)				생산직, 관리직 등	종업원 수
	박사	석사	학사 이하	계		
대덕	15,269	11,109	6,760	33,138	36,475	69,613
광주	4,579	1,660	1,535	7,774	20,127	27,901
대구	8,734	3,201	2,208	14,143	19,194	33,337
부산	6,764	1,967	1,551	10,282	19,367	29,649
전북	5,085	1,565	804	7,454	10,316	17,770
총계	40,431	19,502	12,858	72,791	105,479	178,270

자료: 연구개발진흥재단 홈페이지 통계자료(2016년 12월 기준), https://www.innopolis.or.kr/, 2018. 5. 18 접속

□ 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로는 국내특허(누적)와 해외특허(누적)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 건수와 그에 따라 발생한 기술이전료 또한 확인할 수 있음(<표 Ⅲ-6> 참조)

○ 등록된 전체 특허 누적 수가 110,920개이며 이에 대한 기술이전 건수가 3,660건으로 약 3.2% 정도임

○ 성과가 누적으로 표현된 만큼 최근 개발된 기술로 인해 기술이전 건수가 발생하는 비율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구성과 측면은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함

○ 이밖에도 코스닥등록, 연구소기업 설립, 첨단기술기업 지정 등을 연구성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아래 표들에서 같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임(<표 Ⅲ-7> 참조)

<표 Ⅲ-6> 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국내특허(누적)		해외특허(누적)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료
	출원	등록	출원	등록		
대덕	118,757	61,082	59,346	23,420	1,974	72,740
광주	11,665	6,945	3,064	1,495	505	6,994
대구	7,804	6,736	1,070	434	482	4,736
부산	6,703	4,165	805	143	369	3,528
전북	9,704	6,378	676	122	330	2,645
전체	154,633	85,306	64,961	25,614	3,660	90,643

자료: 연구개발진흥재단 홈페이지 통계자료(2016년 12월 기준), https://www.innopolis.or.kr/, 2018. 5. 18 접속

<표 Ⅲ-7> 연구개발특구 코스닥 등록 기업,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현황

(단위: 개)

구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전체
코스닥 등록 기업	40	7	16	12	3	78
연구소 기업	214	86	124	81	51	556
첨단기술기업	114	16	11	8	7	156

자료: 연구개발진흥재단 홈페이지 통계자료(16년 12월 기준), https://www.innopolis.or.kr/, 2018. 5. 18 접속

다. 조세지원 실적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에 규정되어 있음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중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 발행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함

○ 지원대상 업종은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을 조세지원 대상으로 명시함

○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임

-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은 「특구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의거하여 ① 특구에 입주한 기업이고 ②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제품 보유(특허권 보유) 및 생산·판매하여야 하며 ③ 첨단기술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이어야 하고 ④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등)가 총매출액의 5% 이상(실투자비 3% 한도)을 만족해야 함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

○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

- 연구소기업 설립주체는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보조받는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관련법인 등임

□ 지방세 세제 감면혜택도 있음

○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으로 등록·지정받을 경우나 수도권 이전 중소기업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의 경우 재산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 면제
- 수도권 이전 중소기업(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를 4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 면제

□ 『국세통계연보』의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내역을 보면 2007~2016년의 기간 동안 총신고 법인 수는 317개, 법인세는 1,281억원, 소득세는 4천만원의 감면실적이 있음

○ 연구개발특구의 조세감면 자격을 얻을 경우 한 기업이 최대 5개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는 317개보다 더 작은 수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

- 2017년 12월 기준 연구개발특구에 5,018개의 기관이 입주한 것에 비하면 감면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극히 일부임
- 입주한 기업 대부분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다른 특구지역과는 차별화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Ⅲ-8> 법인세·소득세 감면실적(2007~2016)

(단위: 개, 억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신고법인수	1	21	42	54	55	44	31	22	21	26	317
법인세	0.28	104	227	223	261	204	118	70	41	33	1281.28
소득세			-	-	-	-	-	0.01	0.36	0.06	0.43
계	0.28	104	227	223	261	204	118	70.01	41.36	33.06	1281.7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8-3-8

라. 조세지원 외 특구지원 현황

1)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혜택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기술이전·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첨단기술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표 Ⅲ-9> 참조)

○ 예를 들면, 연구소기업 협의회에서는 연구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활동을 지원함

- 기술경영 자문단 지원에서는 연구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상시 상담 등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됨

<표 Ⅲ-9>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프로그램

사업명	지원내용
기술확산 및 연계	유망기술 사업화 활동 지원을 통한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기술이전사업화(R&BD)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 기업 및 연구소기업 대상 R&D 과제 지원
연구소기업 협의회	연구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활동 지원
연구소기업설립사전기획	연구소기업 기술발굴 및 수요기업 매칭, 설립 등 기획 지원
기술가치평가	연구소기업 설립추진 대상 기술 가치 및 사업타당성 평가 지원
기술경영 자문단 지원	연구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상시 상담 등 지원
연구소기업성장맞춤지원	연구소기업 수요 기반 마케팅, 인증, 판로개척 등 패키지형 지원
이노스타트업+ 운영	이노스타트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이노폴리스캠퍼스 육성	특구 거점대학을 활용하여 양질이 창업 유도 지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연구소기업 발굴·투자·보육할 수 있도록 엑셀러레이터 선정 운영지원
스타트업 지원	엑셀러레이터 등으로부터 선투자받은 특구내 기업에 창업초기자금 지원
해외투자유치지원	특구기업 해외 현지 육성지원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 안내」, https://www.innopolis.or.kr/, 2018. 5. 18 접속

□ 그 외에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이 있음(<표 Ⅲ-10> 참조)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입지보조금(토지매입가격의 30% 이내)과 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이 있음

○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의 설비투자보조금이 제공됨

○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제공됨

○ 이러한 지원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신·증설하는 기업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임

<표 Ⅲ-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내용(국·시비)
수도권 이전기업	• 이전 사업을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영위한 기업 •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지식서비스산업 등 10인 이상) • 수도권 소재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지방 이전 • 수도권 영위업종과 동일업종 이전 영위, 기존 사업장 폐쇄	•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 금액의 14% 이내
신·증설 기업	•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해당 • 이전 후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신규고용 50명 이상 가능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 중소·중견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1억원, 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입대, 축소 금지)	•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 금액의 14% 이내
국내 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경제협력권·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0인 이상 • 해외 영위업종과 동일업종 영위 • 국내 기존사업장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 4년내 청산·양도	•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5억원 한도 (국비) •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 금액의 14% 이내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 안내」, https://www.innopolis.or.kr/, 2018. 5. 18 접속

□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이 있는데,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의 지역 유치 및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자 노력함(<표 Ⅲ-11> 참조)

○ 토지매입비(50%, 50억원 이내), 시설투자비(10억원 초과분의 10%, 10억원 한도) 보조금이 제공됨

○ 운전자금과 시설투자비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1~2%포인트)이 있음

○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함

<표 Ⅲ-11> 대전광역시 지역 유치 및 투자 촉진 조례의 주요 내용

	보조금	자금융자 이자보전(연 1~2%p 지원)	지방세 (취득세)
지원 대상	투자금액 100억원 초과기업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 2개 이상의 집단이전도 인정)	• 대전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원 내용	토지매입비의 50% 이내 (50억원한도)	• 운전자금: 한도액 5억원	
	시설투자비 10억원 초과금의 10% 이내(50억원 한도)	• 시설투자비: 한도액 20억원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 안내」, https://www.innopolis.or.kr/, 2018. 5. 18 접속

□ 그 외에 대전 특구 입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특구 내 해당 구역기업 및 연구소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지원내용)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연구단지)에 입주한 기관의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지원규모) 1제곱미터당 600원(1급지 외: 400원) → 350원

(근거)「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 특구 내 기업 및 연구소 수도료 감면

(지원내용): 특구내 입주기관에 대해 수도료 감면

(지원규모) 수도료 누진완화(3단계 880원 → 2단계 710원) 19.3% 감면

(근거)「대전시 상수도급수조례」 별표2

○ 과학기술인 및 특구 내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시설(골프장·스포츠센터·게스트하우스·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음

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조세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지원 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조세지원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에만 제공되는 재정지원이 있음

□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

○ 또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 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6.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개념, 추진과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에서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규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이 특별법은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제주도 내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 이 법 제161조에 따르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그 후 2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제공함

○ 현재 감면 대상이 되는 산업은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임

□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의 한도액은 투자기준 한도와 고용기준 한도의 합계액임

○ 투자기준 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고용기준 한도: 상시근로자 수 1인당 1천만원과 투자누계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서비스업의 경우, 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의 100%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에 규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음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이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 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 생명현상의 기전,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등의 학문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 소프트웨어산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 정보보호산업
-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학원(기술 및 직업 훈련에 한함)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는 2002년 4월 신설되었으며, 도입 이후에 대상 산업, 적용 요건, 공제 한도 등의 변화가 있었음

○ 2002년 4월 신설 당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문화산업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4년 개정으로 문화산업이 지원 대상 산업에서 배제됨

○ 초기 입법 과정에서 일몰 시점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2006년 개정에서 일몰 시점이 도입되었으며, 사업개시 후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를 사업개시일로 판단하도록 변경됨

○ 2010년 개정에서 공제 한도를 제한하여 현재 공제 한도로 설정됨

○ 2016년 개정에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완화함

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현황

□ 다음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공한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10월 기준(2018년 입주 예정 기업 포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들과 입주 후 퇴거한 기업들의 현황을 정리함

○ 2017년 10월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총 237개임(<표 Ⅲ-12> 참조)

○ 최초 입주 시작 연도인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입주하였다 퇴거한 기업의 수는 총 106개로 2017년 10월 기준 입주하고 있는 기업 수는 총 131개임(2018년도 2개의 입주 예정 기업 포함)

□ 2010년 총 18개 기업이 입주한 뒤 2014년 50개로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15년 32개, 2016년 35개, 2017년 21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201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최근까지도 계속 신규 기업들이 입주하는 추세임

○ 2018년 입주할 것으로 예정된 기업이 2개 있음

<표 Ⅲ-1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연도별 입주 및 퇴거 기업 수

(단위: 개)

구분 / 연도	신규입주 기업	퇴거 기업	누적 입주기업
2010	18	-	18
2011	20	-	38
2012	27	7	58
2013	26	25	59
2014	50	17	92
2015	32	18	106
2016	35	24	117
2017	21	15	123
2018(예정)	2	-	125
-[1)]	6	-	-
합계	237	106	131

주: 1) 입주 연도 정보가 없는 기업이 6개 있음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내부 자료

□ 기업 현황을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Information Technology(IT)와 Biology Technology (BT) 관련 업종이 전체 기업의 약 59.5%를 차지함(<표 Ⅲ-13> 참조)

○ 이 제도의 지원 대상 업종으로 볼 수 있는 산업군은 IT, BT, 산업디자인 외에도 Environment Technology(ET)를 포함하는데, ET 업종 기업은 전체 기업 중 약 6.3%로 비중이 낮은 편임

○ 특이 사항으로, 지원 대상 업종 외의 기업들이 전체기업의 약 34.2%를 차지하여 높은 수준임

- 기타 산업이 19.9%로 가장 높은데 병원, 보건업, 여행사, 협회, 식당, 헬스장 등이 포함됨

<표 Ⅲ-1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업종별 분포

(단위: 개, %)

업종	전체 기업	퇴거 기업	현재 입주 기업
IT[1)]	88(37.1)	29(27.4)	59(45.0)
BT[2)]	53(22.4)	14(13.2)	39(29.8)
ET[3)]	15(6.3)	8(7.5)	7(5.3)
제조업	12(5.1)	12(11.3)	-
도매업	7(3.0)	7(6.6)	-
부동산업	5(2.1)	5(4.7)	-
공기업	3(1.3)	-	3(2.3)
산업디자인	2(0.8)	-	2(1.5)
서비스업	2(0.8)	1(0.9)	1(0.8)
호텔 및 여관업	2(0.8)	2(1.9)	-
기타[4)]	48(19.9)	28(26.5)	20(15.3)
합계	237(100)	106(100)	131(100)

주: 1) IT: Information Technology(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2) BT: Biology Technology(화장품 천연소재 연구 및 개발업, 생물학 연구개발업, 동물용 사료 개발업 등)
3) ET: Environment Technology(태양전지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업 등)
4) 기타: 부대시설(식당, 헬스장 등), 협회, 위원회, 연구원, 산학협력단, 병원, 보건업, 여행사, 방송국 등
5) 괄호 안은 업종별 비중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내부 자료

□ 입주기업과 퇴거기업을 연도별,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2년 7개의 기업이 퇴거한 뒤 매년 20개 내외의 기업들이 퇴거함

○ 총입주기업의 약 65%를 차지하는 IT, BT, 그리고 ET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퇴거는 전체 퇴거기업 수의 약 55%를 차지함

○ 조세특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업, 호텔 및 여관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현재 모두 퇴거한 상태임

다. 조세지원 실적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세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에서 2016년까지의 총 지원액이 207억원 수준임

○ 2011년 3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4년 97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제도 도입 이후 2010년까지는 조세지원 실적이 없었음

○ 2016년 지원액을 보면 총 5개 기업이 본 제도를 통해 15억원의 법인세를 감면 받았음

<표 Ⅲ-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소득세	법인세	합계
2011	3	-	3
2012	2	-	2
2013	44	-	44
2014	-	97(7)	97
2015	-	46(6)	46
2016	-	15(5)	15
합계	49	158	207

자료: 기획재정부,『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라. 특구감면 외의 조세지원 및 기타 지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외에도 관세, 지방세, 그리고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관세)「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0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함

○ 위 조항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몰 연장을 통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을 통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될 수 있음

○ 취득세의 50%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재산세의 경우 일몰 규정 없이 5년간 75% 경감함

○ 위 조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취득세의 경우 50% 감면율이 2018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면제되었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 75% 감면으로 개정됨

○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산업 제한 없이 감면 혜택을 제공함

□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주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에 의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온 중소기업에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온 기업에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이전한 경우 신설기업/제주기업과 동일하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을 적용받음

□ (이전기업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는 지방 이전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지방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는 일몰 규정 없이 5년간 면제 후 3년간 50% 감면함

○ 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부터 이전해 온 기업은「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제14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 후 3년간 50% 감면함

<표 Ⅲ-1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 대상 세제혜택 내용

구분	국세	지방세		관세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신설기업/ 제주기업	3년간 100%, 추후 2년간 50% ('18.12.31까지)	50% ('19.12.31까지)	5년간 75%	연구개발 물품 100% ('18.12.31까지)
	「조특법」 제121조의8	「지특법」 제78조	「지특법」 제78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전기업	4년간 100%, 추후 2년간 50% ('20.12.31까지)	면제 ('18.12.31까지)	5년간 면제, 추후 3년간 50%	
	「조특법」 제63조의2	「지특법」 제79조	「지특법」 제79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기업	3년간 100%, 추후 2년간 50% ('18.12.31까지)	면제	5년간 면제, 추후 3년간 50%	
	「조특법」 제121조의8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 제1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전 중소기업	6년간 100%, 추후 3년간 50% ('20.12.31까지)	면제 ('18.12.31까지)	5년간 면제, 추후 3년간 50%	
	「조특법」 제63조	「지특법」 제79조	「지특법」 제79조	

자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http://www.jeju-sp.com/support/incentive/tax.htm, 2018.6.4. 접속

□ (임대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편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임대료는 월 18만원~26만원(66m^2 기준이며, 층에 따라 임대료가 상이)인 반면, 동일 면적 기준 주변 사무실 월임대료는 50만원 내외임(네이버 부동산 정보; 검색일(2018년 5월 15일) 기준)

3.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가.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개념, 추진과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이 제도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입법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제주도지사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됨(제162조)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설립과 확산을 위한 여러 입법 노력의 하나로 판단됨

□ 투자 대상지역은 개인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지정과 투자유치에 유리한 지역에 대한 지정으로 구분됨

○ 개인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개발사업 시행승인, 개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지정이 가능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혹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
- (투자유치에 유리한 지역)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개발센터일 것
- (개인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기준 및 대상산업을 규정하고 있음

○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인 관광호텔업 등 관광 관련 산업

○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인 문화산업 등

□ 지정 해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이루어짐

○ 산업별 사업비 기준을 사업기간 만료시점까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관광산업 등록 기준을 사업기간 만료시점까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는 2002년 4월 신설되었으며 대상 산업과 사업비 기준 요건에서 변화가 있었음

○ 2002년 4월 신설 당시의 지원대상

- 총사업비 2천만달러 이상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 총사업비 1천만달러 이상의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 2004년 개정에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등의 총사업비 기준액이 2천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 궤도시설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업, 노인복지시설업,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등이 추가됨

○ 2007년 개정에서 사업개시일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총사업비 기준 요건이 완화되었음

- 동시에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의 산업들이 추가됨

○ 2009년 개정으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제 항목이 신설됨

○ 2010년 개정으로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이 추가됨

○ 이후 2016년 개정으로 현재와 같은 형태의 총사업비 기준과 총사업비별 대상산업이 정해졌으며 2017년 서비스업 공제한도가 완화되며 지금의 형태를 지니게 됨

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현황

□ 2018년 현재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된 기업은 55개이며 이 중 11개의 기업이 지정 해제되어 현재 44개의 기업이 지정된 상태임(<표 Ⅲ-16> 참조)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기업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9개의 기업이 신규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크게 감소하였음

- 2016년과 2017년 각각 3개와 1개의 기업이 신규 지정됨

○ 지정 해제 상황을 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총 11건이 해제됨

- 대부분의 경우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투자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비 규모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 해제됨(7건)
- 일부 기업((주)라이트리움, 토스카나호텔 제주)은 경영난 등으로 지구 지정 해제를 자진하여 요청함(4건)

<표 Ⅲ-16> 제주투자진흥지구 연도별 지정 및 해제 현황

(단위: 개)

	신규 지정 기업	지정 해제 기업	지정 상태 기업
2005	1	-	1
2006	1	-	2
2007	3	-	5
2008	3	-	8
2009	7	-	15
2010	4	-	19
2011	4	-	23
2012	8	-	31
2013	9	-	40
2014	9	-	49
2015	2	4	47
2016	3	1	49
2017	1	6	44
합계	55	11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

□ 업종별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휴양업이 총 30개 지정되어 전체의 54.5%를 차지함(<표 Ⅲ-17> 참조)

○ 그다음은 호텔업(29.1%), 연수원(5.5%), 문화(3.6%), 의료(3.6%) 순으로 분포됨

○ 업종별 지정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휴양업의 경우 2007년 이후 2014년까지 꾸준하게 지정됨(<표 Ⅲ-18> 참조)

○ 최근 5년간(2013~2017년)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지정된 업종은 호텔업(21개 중 12개)이고 그다음이 휴양업(6개)임

<표 Ⅲ-17> 제주투자진흥지구 업종별 지정 현황

(단위: 개, %)

업종	전체 지정 기업	해제 기업	지정 상태인 기업
휴양업[1)]	30 (54.5)	8	22 (50.0)
호텔업	16 (29.1)	1	15 (34.1)
연수원	3 (5.5)	-	3 (6.8)
문화[2)]	2 (3.6)	1	1 (2.3)
의료	2 (3.6)	-	2 (4.5)
교육	1 (1.8)	-	1 (2.3)
관광식당	1 (1.8)	1	-
합계	55 (100)	11	44 (100)

주: 1) 휴양업은 리조트, 테마파크 등
2) 문화산업은 수목원, 박물관 등
1. 괄호 안은 업종별 비율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

<표 Ⅲ-18> 제주투자진흥지구 연도별 업종별 지정 현황(지정 상태인 기업)

(단위: 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휴양업	1	1	4	3	3	4	1	4	-	-	1	22
호텔업	1	-	1	-	-	1	6	3	1	2	-	15
연수원	-	1	-	-	-	-	1	-	-	1	-	3
문화	-	-	-	-	-	1	-	-	-	-	-	1
의료	-	-	-	-	-	1	1	-	-	-	-	2
교육	-	-	-	-	-	1	-	-	-	-	-	1
관광식당	-	-	-	-	-	-	-	-	-	-	-	0
합계	2	2	5	3	3	8	9	7	1	3	1	44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

다. 조세지원 실적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세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16년까지의 총합계액이 353억원 수준에 그침

○ 2005년에서 2011년까지는 지원 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2012년 90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141억원까지 지원액이 증가함

○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총 8개 기업에 대해 각각 59억원과 23억원의 지원 실적이 있음

<표 Ⅲ-19>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개)

	제주투자진흥지구		
	소득세	법인세	합계
2005	-	-	
2006	1	-	1
2007	1	-	1
2008	-	-	0
2009	-	-	0
2010	-	-	0
2011	-	-	0
2012	-	90	90
2013	-	38	38
2014	-	141(10)	141
2015	-	59(8)	59
2016	2	21(8)	23
합계	4	349	353

자료:『조세지출예산서』각 연도

라. 특구감면 외의 조세지원 및 기타 지원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기업들은「조특법」제121조의9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감면 외에도「조특법」제121조의2(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감면,「조특법」제121조의11에 따른 관세 면제, 그리고 제주도 감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투자)「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중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의 전액 면제, 그 후 2년간은 50% 감면(7년형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중 7년형 감면이 적용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적용됨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의 전액 면제, 그 후 2년간은 50% 감면

□ (외국인투자) 또한「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제11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1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 면제

□ (외국인투자) 단, 외국인투자로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자료처리 및 호스팅업 등
- 외국인투자금액이 2천만달러 이상: 호텔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물류산업 등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면서 총개발사업비가 1억달러 이상

○ 2017년 10월 기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5개이며, 위 사업비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3개임

□ (지방세)「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제24조의2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단, 재산세의 경우 면제 기간을 10년으로 제한

□ (관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에 따르면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면제됨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

○ 위 조항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몰 연장을 통해 현재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고 있음

□ (이전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기업들에 한해 소득세 혹은 법인세 감면이 가능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온 중소기업에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온 기업에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후 2년간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이전한 경우 신설기업/제주기업과 동일하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을 적용받음

4. 기업도시

가. 기업도시의 개념

□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1호)

○ 개발의 수요자 즉, 기업이 개발 당사자가 됨

○ 산업, 연구, 관광 등 주요 산업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춘 다른 단지와 달리 주거, 교육, 의료를 종합한 자족적 도시를 목표로 함

□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음(「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행될 것

□ 개발구역의 면적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관광 중심의 기업도시는 150만제곱미터,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중심의 기업도시는 2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동법 제6조의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

○ 특정 요건에 따라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나. 기업도시 지정 및 입주 현황

□ 2005년과 2006년에 기업도시 시범사업지구 6개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두 개 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음[1)]

○ 무주는 주 출자자인 대한전선이 2008년 5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대체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2011년 1월 시범사업이 취소됨

○ 무안은 사업지구를 두 개로 분할하여 국내단지와 한중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두 개의 단지 모두 사업이 취소됨

- 국내단지는 사업시행자인 (주)무안기업도시개발이 2009년에 감자를 결의하고 2010년에 정산과정을 거쳐 해체되었음
- 한중산업단지의 시행자인 (주)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도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 측이 투자를 철회하자 2013년 2월 사업을 취소함

○ 영암·해남지구의 경우 4개 지구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중 하나인 부동지구는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2012년 1월에 사업을 반려하고 3개 지구만 추진함

1) 국토연구원(2013), 국토교통부(2014), P. 23에서 재인용

□ 2018년 3월 현재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지구에서 기업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2)]

○ 충주: 지식기반형

- 참여기업: (주)포스코건설, 임광토건, 동화약품(주), 현대자동차그룹, (주)엠코, 포스데이타(주), 금융권 및 충주시 등

○ 원주: 지식기반형

- 참여기업: 롯데건설(주), 경남기업(주), (주)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강원도, 원주시

○ 태안: 관광레저형

- 참여기업: 현대건설(주)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 참여기업: 전경련 컨소시업, 전남개발공사 컨소시엄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문화관광부에서 관할함

○ 무안기업도시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계획되었으나 지정해제됨에 따라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추진되지 않고 있음

□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는 충주기업도시로, 2012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2020년까지 도시조성을 완료할 계획임[3)]

○ 충주기업도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현재 18개의 업체가 가동 중이며, 건설 중인 업체가 1개, 설계 중인 업체가 6개로 총 25개의 업체가 가동·건설·설계중임[4)]

- 산업용지 중 5곳은 미분양 상태임

□ 원주기업도시는 토지보상비 증가와 일부 출자자 워크아웃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2년 정도 지연되었음[5)]

---

2) 각 지구의 참여기업 명단은 건설교통부(2007), p. 9에서 인용
3) 충청북도 홈페이지, 기업도시 개요, https://www.chungju.go.kr/www/contents.do?key=573, 2018. 3. 19. 접속
4) 충주기업도시 제공 내부자료
5) 국토교통부(2014), p. 24.

○ 2015년 1단계 준공, 2017년 2단계 준공 이후, 2018년에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사업을 종료할 예정임

○ 2018년 3월 현재 13개사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됨[6)]

○ 2016년까지 산업용지 분양이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최근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KTX 개통 등 교통여건 개선에 힘입어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2017년 말 기준 44개 필지 중 37개 필지가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짐[7)]

- 면적기준으로 분양률이 2016년 말 50% 수준에서 2017년 말 74.8%로 확대됨[8)]

□ 태안기업도시(라티에라)는, 지식기반형인 충주 및 원주 기업도시와 달리 관광레저형임

○ 2008년에 준설 및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에 화훼보존화센터를 준공하였으며, 2014년에 현대더링스 골프장(대중제 36홀)을 오픈하였고, 2016년에 현대솔라고 골프장(대중제 36홀)을 오픈하였음[9)]

○ 2017년에 관광숙박시설 테라스 골프빌리지를 준공하였고, 그해 12월에는 한국타이어 첨단연구실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첨단연구시설 및 산업·연구 클러스터 등 부지조성공사를 2020년까지 계속할 예정임[10)]

□ 영암·해남 기업도시도 관광레저형으로서 삼포, 삼호, 구성, 부동의 4개 지구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지구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하고 3개 지구만 추진함

○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진척이 잘 되지 않다가 2012년에 솔라시도로 명칭을 개정하고 2013년 12월에 솔라시도 기업도시 기공식을 하였음[11)]

○ 기공식 이전인 2012년에 1단계 사업으로 F1 국제자동차 경주장을 건립하였으며, 제3차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하였음

○ 2단계 사업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판단됨

---

6) 원주기업도시 내부자료
7) 강원도민일보,「원주기업도시 조성사업 가속도 붙는다」, 2017. 7. 25.
8) G1tv 뉴스,「원주기업도시 "공장 짓고 있다더니...」, 2017. 11. 20.
9) 현대도시개발 & 라티에라 홈페이지, http://www.latierra.kr/business/pass, 2018. 3. 19. 접속
10) 현대도시개발 & 라티에라 홈페이지, http://www.latierra.kr/business/pass, 2018. 3. 19. 접속
11) 솔라시도 홈페이지, http://solaseado.go.kr/new/s01/05/index.php, 2018. 3. 19. 접속

- 2017년 11월 기준으로 구성지구 공정률은 15.3%, 삼호지구 공정률은 12.7%인 것으로 알려짐[12)]
- 2018년 9월에 주택용지를 일부 분양할 예정이며, 12월에 골프장 2개소를 준공할 예정임

○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까지 개발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13)]

□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2005년과 2006년에 지정된 시범사업 이후에는 기업도시 지정을 신청한 사례가 없음

○ 기업도시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낙후지역에 입지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지적됨[14)]

○ 2015년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기업도시 개발을 활상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개편 후에도 새로운 기업도시 개발이 추진되지 않았음

□ 2015년의 제도개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15)]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충청권 지역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도시 개발을 허용함

○ 최소개발면적을 기준을 대폭 완화함

○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기업이 탄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함

○ 그 외에 용지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사업시행자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율 인하, 건폐율·용적률 기준 완화 등 다양한 개선조치가 있었음

다. 조세지원 실적

□ <표 Ⅲ-20>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규정된 기업도시 조세지원과 동법 제121조의2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중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였음

12) 연합뉴스, 「여의도 10배 면적 전남 기업도시, 골프장 도시 전락 우려」, 2017. 11. 15.
13) 전라남도 홈페이지, 솔라시도 기업도시, http://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 jeonnam0605020200, 2018. 3. 19. 접속
14) 국토교통부(2014), p. 24.
15) 국토교통부(2016a), pp.11~1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규정된 기업도시 조세지원은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기업도시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됨

○ 동법 제121조의2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으로서 업종, 외국인투자 규모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됨

<표 Ⅲ-20> 기업도시 조세지원과 해당 특구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비교

	기업도시 조세지원 (조특법 제121조의17)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조특법 제121조의2)**
기업도시 창업기업	★ 다음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 제조업 등: 투자규모 100억원 - 연구개발업: 투자규모 20억원 - 물류업: 투자규모 50억원 ★ 감면규모: 3년 100%, 2년 50%	★ 다음에 해당되는 입주기업 - 제조업 등: 외투 1천만달러 - 연구개발업: 외투 200만달러 - 물류업: 외투 500만달러 ★ 감면규모: 3년 100%, 2년 50%
기업도시 개발사업	- 개발사업비 1천억원 ★ 3년 50%, 2년 25% 감면	- 외투 3천만달러 - 총사업비 5억달러 - 외투비율 50% ★ 3년 100%, 2년 50% 감면

자료: 앞의 <표 Ⅱ-5>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입주기업'에 적용되고, 「조특법」 제121조의17에 규정된 기업도시 조세지원은 창업·신설 기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121조의17의 요건이 더 엄격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인이 자본을 들여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명목상 요건이 입주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창업·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업종 제한과 요구하는 투자규모는 내·외국인 간 큰 차이가 없음

○ 업종 요건은 같으며, 요구하는 투자규모도 유사한 수준이고, 지원규모도 같음

○ 단, 조세감면 한도 중 고용기준 한도가 외국인투자 지원은 투자액의 40% 이내, 기업도시 지원은 투자액의 20% 이내로 차이가 있음

□ 한편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에게 두 배 수준의 조세지원을 하며, 요구 조건은 더 엄격함

○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지원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를 감면함

○ 한편, 외국인투자 규모가 3천만달러, 총사업비가 5억달러,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가 감면됨

□ <표 Ⅲ-21>에서는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지원과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원 실적을 정리하였음

○ 기업도시 창업·신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조세특례제도법」의 같은 조(제121조의17)에 규정된 기업도시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이하 '기업도시 등') 창업·신설 기업의 조세지원 실적을 모두 포괄함

- 다만, 각 특구의 기업 입주현황 등을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 기업도시에 대한 지원일 것으로 판단됨

□ 이 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업도시 등에 대한 지원실적이 매우 적다는 점임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2007년 이후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여 총 5건 이내일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내국기업 지원 1건, 2013년 내국기업 지원 2건 이내, 2015년 외국인투자 지원 2건 이내[16)]

○ 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원도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2011년 1건, 2013년 2건 이내

○ 내국기업에 적용되는 창업·신설 기업 지원은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2건 이내였는데, 2014년 3건, 2015년 5건, 2016년 8건으로 지원 건수가 확대됨

- 감면금액은 2012년과 2013년에는 10억원 미만이었는데, 2014년에 53억원으로 크게 증가되었고, 2015년에도 57억원 감면됨

16) 2014년의 창업·신설기업 지원실적이 3건이었는데, 이 수치를 그대로 밝힌 점에 비춰볼 때, u로 표시한 부분은 2건 이내일 것으로 판단됨

- 2016년에는 감면기업 수는 전년 5개에서 8개로 증가하였으나 감면액은 57억원에서 48억원으로 축소됨

<표 Ⅲ-21> 기업도시 등에 대한 조세지원 실적

(자료: 개, 백만원)

	기업도시 조세지원(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 외투 지원(법 제121조의2)			
	창업·신설 기업[1]		개발사업자		입주기업		개발사업자	
	법인수	감면액	법인수	감면액	법인수	감면액	법인수	감면액
2007	-	-	-	-	-	-	-	-
2008	-	-	-	-	-	-	-	-
2009	-	-	-	-	-	-	-	-
2010	-	-	-	-	-	-	-	-
2011	-	-	1	827	1	336	-	-
2012	u[2]	891	-	-	-	-	-	-
2013	u[2]	974	u[2]	3,775	u[2]	-	-	-
2014	3	5,334	-	-	-	-	-	-
2015	5	5,681	-	-	-	-	u[2]	1
2016	8	4,840	-	-	-	-	-	-

주: 1)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신설기업 포함
2) 해당되는 기업의 수가 매우 적어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u로 표시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8-3-8 세액감면신고현황, 표12-2-5 외국인투자법인 감면현황

라. 특구감면 외 조세지원 및 기타 지원

□ <표 Ⅲ-22>에서는 앞서 언급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세·법인세 지원 외에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이나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정리하였음

□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중 혜택이 큰 것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영업을 하던 기업이 수도권 밖의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감면이 있음

○ 기업도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밖에 있는 기업도시 입주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앞의 소절에서 검토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아니라 기업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데 비해, 이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주하는 기업에 적용됨

<표 Ⅲ-22> 기업도시 지원 - 조세감면, 보조금 등

지원항목(근거법령)		지원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영업하던 중소기업이 그 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 이전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시 • 6년간 법인세 100%, 3년간 50% 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년간 영업한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이전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거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이나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 • 6년간 법인세 100%, 3년간 50% 감면
기업도시 지원	지방세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56조)	• 지방소득세 지원: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동일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창업·신설기업과 개발사업자에 모두 적용
	부담금 감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5조)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 토지매입가액: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 • 설비투자금액: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19%, 대기업 11% • 국고보조비율: 최대 75%
	입지지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 국·공유 용지 임대료 20% 감면 • 내국인투자 외국인투자 불문하고 입주기업에 적용
	국고지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	• 주진입도로 건설비 50% 국고지원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토교통부(2016), pp. 3~5

□ 수도권 내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일반기업 지원으로 구분됨

○ 수도권 과밀억제원역 내에 공장을 갖추고 2년 이상 영업하던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6년간 법인세 전액, 그 후 3년간 50%가 감면됨

- 2020년까지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공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3년 이상 영업을 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6년간 법인세 전액, 그 후 3년간 50%가 감면됨

- 공장시설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2020년까지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수도권 밖에서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2023년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지방세 감면을 보면, 지방소득세의 경우 앞의 소절에서 정리한 국세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동일한 감면이 적용됨

○ 취득세 및 재산세는 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적용하여 감면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률이 적용됨

□ 개발부담금을 포함하여 6개의 부담금, 사용료가 감면됨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는 면제됨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50% 감면됨

□ 그 외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입지지원, 국고지원이 있음

○ 기업도시로 지정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우대지원대상이 되어 지원비율이 일반지역에 비해 최대 10%p 높음

- 토지매입가액: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
- 설비투자금액: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19%, 대기업 11%
- 국고보조비율은 최대 75%

○ 입지지원으로 국·공유 용지 임대료가 20% 감면됨

○ 주진입도로 건설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함

5.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는 기업도시 외에도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지역(제1항 제3호, 제4호), 해양박람회특구(제5호, 제6호), 새만금사업지역(제7호)에 대한 조세지원도 규정되어 있음

○ 조세지원 요건과 지원내용은 기업도시의 경우와 같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들 특구의 특성과 지정현황에 대해서만 정리함

○ 조세지원실적은 앞의 <표 Ⅲ-21>에 정리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음

- 개별 특구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해양박람회특구의 한 개 업체가 2013~2016년에 조세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으며, 그 외에는 위 표에 나타난 조세지원이 모두 기업도시에 대한 지원인 것으로 판단됨

가. 지역개발사업구역

□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 제16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함

○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지원법」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함

□ 2015년에 「지역개발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기존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함[17]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통합함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됨
-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에 대한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함

○ 그리고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

1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7호, 2014.6.3. 제정) 제정·개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그림 Ⅲ-1] 지역개발사업제도 통합(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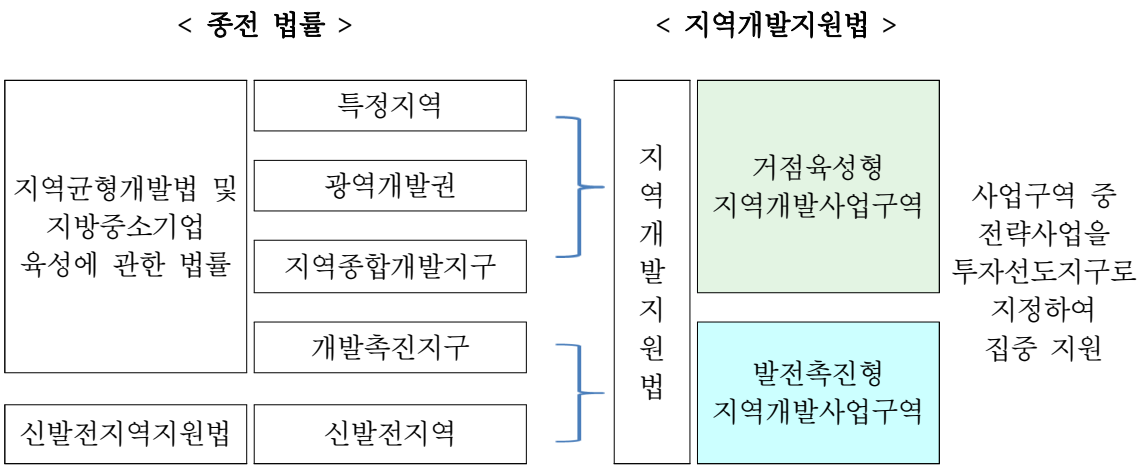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역개발, '통합'추진되고 지자체가 '주도'」, 2014. 5. 27, p. 2

□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시·도지사가 직접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가 지정 요청을 하고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함

○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며,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10년 단위의 중장기 지역개발계획(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계획이 만들어짐

나. 지역활성화지역

□ 지역활성화지역 제도는 전국 단위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성장촉진지역 범위 내에서 낙후도가 심한 시·군을 선정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도(道) 내 낙후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 도입됨[18)]

□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가 선정하여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함[19)]

1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낙후도 심한 '지역활성화지역', 차등·우선 지원」, 2014.12.23., pp. 1~2
1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낙후도 심한 '지역활성화지역', 차등·우선 지원」, 2014.12.23., pp. 2~4

○ 공통지표(60% 이상)와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지표(40% 이하)를 활용하여 도(道) 내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함

- 공통지표(60%):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인구변화율
- 특성지표(자율지표)(40%): 지역접근성, 고령화지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자율 선정

<표 Ⅲ-23>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지표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공통지표</th><th colspan="2">특성지표</th></tr>
<tr><td>성격</td><td colspan="2">기본지표</td><td colspan="2">자율지표</td></tr>
<tr><td>근거</td><td colspan="2">「지역개발지원법」 제67조 제3항</td><td colspan="2">「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제63조</td></tr>
<tr><td>내용</td><td colspan="2"><table><tr><td>법정요건</td><td>지표구성</td></tr><tr><td>지역총생산</td><td>대상 시군 GRDP</td></tr><tr><td>재정상황</td><td>재정력지수(3개년 평균)</td></tr><tr><td rowspan="2">지역산업</td><td>지방소득세(3개년 평균)</td></tr><tr><td>근무 취업인구 변화율(10년)</td></tr><tr><td>인구변화율</td><td>평균 인구변화율(10년)
* 인구주택총조사 상주 인구 적용</td></tr></table></td><td colspan="2"><table><tr><td>예시요건</td><td>지표구성</td></tr><tr><td>지역접근성</td><td>주요교통시설과의 거리</td></tr><tr><td>재난·재해</td><td>피해규모, 횟수 등</td></tr><tr><td>토지이용규제 지역 비율</td><td>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비율</td></tr><tr><td>고령화수준</td><td>65세 이상 인구 비율</td></tr></table></td></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12.23., p. 4

□ 지역활성화지역은 전체 성장촉진지역 시·군의 30% 내외 범위에서 선정함

○ 성장촉진지역은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 지역임

- 강원도 7개 지역, 충북 5개 지역, 전북 10개 지역, 전남 16개 지역, 경북 16개 지역, 경남 10개 지역

○ 성장촉진지역 중 22개 지역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됨

- 전남과 경북 각각 5개, 전북과 경남 각각 3개, 강원과 충북 및 충남 각각 2개 지역
- 성장촉진지역은 10년 단위 사업으로서 2014년에 성장촉진지역이 지정된 이후 지정현황에 변함이 없음

<표 Ⅲ-24> 성장촉진지역 및 지역활성화지역 지정현황(2015.3. 지정)[1)]

강원(7)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 홍천군(신규) * 정선군 제외
충북(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6)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신규)
전북(10)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남(16)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 무안군 제외
경북(16)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경남(10)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주: 1) **청송군**과 같이 굵은 글씨로 표시한 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 10년 단위 사업이므로 2014년에 지정된 이후 변동이 없음

자료: 국토교통부소식, 2015. 3. 29,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http://korealand.tistory.com/4904), 2018. 3. 21. 접속

□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한도가 50% 추가되고, 도(道)별로 설치되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함

다. 해양박람회특구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하여 관련 특별법을 전부개정하여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음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2008.3.14. 제정·시행)을 전부개정하여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2012.1.26. 전부개정, 2012.4.27. 시행)으로 새롭게 규정함

○ 개정된 법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의의를 확산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20)]

20)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2012.1.26. 전부개정, 2012.4.27.시행) 제정·개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8.3.19. 접속

□ 2013년에 박람회지역을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하여 '해양리조트 조성을 위한 단지배치 및 도입시설계획'을 설정함

○ 박람회 부지를 일괄매각하기 위하여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3차의 공모에도 불구하고 제안자의 참여가 없어 부지매각이 무산됨

○ 2015년 5월 사후활용계획을 변경하여 박람회장 나대지 상태의 부지는 매각하고, 국제관·주제관 등 시설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최장 10년 장기임대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정부의 선투자금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함
- 복합콘텐츠구역에 복합상업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레저구역에 마리나 시설뿐만 아니라 장기체류형 해양레저시설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표 Ⅲ-25>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추진과정

연도	추진내용
2008.11	「여수박람회 종합기본계획」에서 사후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수립
2012	사후활용 계획(안) 제출·사후활용지원위원회 심의 확정 사후활용개발사업 제안 공모 1차 공고 → 유찰 특별법 개정을 통한 박람회재단 설립
2013	사후활용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해양박람회 특구지정 사후활용개발사업 제안 공모 2차 공고 → 유찰
2014.06	사후활용개발사업 제안 공모 3차 공고 → 유찰
2015.05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자료: 우지원 외(2015), p. 2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 2013년 1월 1일 「조특법」 개정 시 여수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특례적용 조항을 신설함

□ 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은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위치한 박람회시설·부지를 대상으로 수립함[21)]

21)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고시」

○ 전남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일원의 79만 8천㎡ 부지로, 박람회 개최 시 조성된 전시시설(박람회장), 전시지원시설(엑스포역·에너지파크·여객터미널 등)로 구성됨

○ 엑스포역(15만㎡)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사후활용의 대상이 되는 부지는 약 65만㎡이고, 이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상업지역이 약 18만㎡(28%), 준공업지역이 약 47만㎡(72%)으로 구성됨

<표 Ⅲ-26> 여수 해양박람회 특구 부지 및 시설내역

(단위: m^2, %)

분		면적	구성비	박람회시 용도
합계(①+②+③)		798,122.2	100	
① 전시시설	상업용지	126,873.9	15.9	국제관, 지자체관, 해양산업기술관, 어린이극장, 기업관
	업무용지	2,601.2	0.3	기후환경관
	숙박시설용지	16,493.0	2.1	호텔
	주제관	8,860.0	1.1	
	기타용지	93,846.1	11.8	한국관, 해양문명도시관, 아쿠아리움, 야외공연장, 스카이타워, 홍보관
② 공공시설용지		254,347.0	31.9	공원·녹지, 광장, 도로
③ 전시지원시설	여수엑스포역	155,308.0	19.5	
	에너지파크	83,121.0	10.4	
	여객선터미널	50,672.0	6.3	
	연안여객부두	3,500.0	0.4	부잔교
	소형선부두	2,500.0	0.3	부잔교

자료: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고시」

□ 사업체 입주현황을 보면, 2017년 5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의 해양연구센터가 박람회장 국제관에 입주함

○ 2017년 7월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공간을 무상 임대하고 여수시가 2억원을 투자하는 상설 미술관을 개장함

○ 2020년에 청소년해양교육원을 개관할 예정임

- 지상 4층(지하 1층), 연면적 4500㎡, 총사업비 167억원

○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입주 계획이 있음

○ 2010년에 설립된 여수씨월드는 2013~2016년에 조세감면을 받았음

라. 새만금사업지역

□ 새만금 개발사업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9㎞를 축조하여 간척토지 291㎢와 호소 118㎢를 조성하고 외부의 도서 등을 개발하여 경제와 사업, 관광을 아우르는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최초에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농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에서 1971년에 시작되었으나 이후 사회·경제·정치적 변화에 따라 농지개발에서 친환경 복합용도의 도시개발로 목적이 전환됨

- 초기 계획은 농지 100%였으나 이후 도시용지 70%, 농지 30% 수준으로 변경됨

□ 1989년 11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991년 11월 28일에 착공하였으나, 지역주민, 환경단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호 수질오염문제가 제기되고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등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 정부측이 승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됨

□ 이후 새만금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가함

○ 2007년 12월 27일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2008년)하는 등 새만금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22)]

○ 2008년 내부토지 이용계획 변경으로 농지가 30%로 축소되고 산업용지 등 복합용지를 70%까지 확대함

○ 2010년 4월 총길이 33.7㎞의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됨

○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을 확정하고 2012년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013년에 새만금개발청을 개청하는 등 새만금 개발사업의 방향을 확정하여 추진함

22) 2018년 4월 6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8-62호

<표 Ⅲ-27> 새만금사업 추진 연혁

구분	주요 내용
1971~1986	새만금 사업 예정지 조사 등 실시
1987.05.12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계획 발표
1991.11.28	새만금사업 시행인가 및 착공
2001.08.21	매립면허 취소 소송(환경시민단체)
2006.03.16	대법원 판결(정부측 승소)
2007.04.03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확정(농업 70 : 복합 30)
2007.12.27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2008.12.28. 시행)
2008.05.06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2008.10.21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농업 30 : 복합 70)
2010.04.27	새만금 방조제 준공(33.7㎞)
2010.07.29	새만금 방수제 착공(각 공구별)
2011.03.16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확정
2011.12.30	새만금 신항만 공사 착공
2012.1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3.9.12. 시행)
2013.09.12	새만금개발청 출범
2014.09.26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
2015.06.22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지정
2016.02.12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자료: 김재구·최성환, 『새만금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전북연구원, 2017, p.38

□ 새만금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2016년 12월 20일 「조세특례제한법특법」 제121조의17 제1항 제7호가 신설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됨

○ 이 조세지원은 새만금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는 데 목적이 있음

- 새만금 사업시행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공동 사업시행자 등을 지정할 수 있음

○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3년간 법인세 50% 감면, 그 후 2년간 25% 감면 혜택이 있음

□ 그 외에 「조세특례제한법특법」 제121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가 적용됨

○ 새만금 사업지역 입주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3년간 법인세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있음

- 제조업: 외국인투자 1천만달러 이상
- 물류업: 외국인투자 500만달러 이상
- 연구개발: 외국인투자 100만달러, 이 지역 상시고용 연구인력 10명 이상

○ 새만금 사업지역 입주기업으로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7년형 감면(5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2년간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개발사업의 경우에 외국인투자 규모 3천만달러, 총사업비 5억달러, 외국인투자 비율 50% 이상이면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있음

□ 새만금 개발계획에 따르면 용지조성계획은 2단계로 구분하고, 개발사업은 3단계로 세분하여 추진함

○ 1단계 용지조성계획은 2020년까지이고, 2021년 이후에는 2단계 계획을 추진함

○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시행된 1단계에서는 경협특구 용지 등을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민간참여의 발판을 마련하고, 2018~2022년까지는 2단계로 민간투자를 확산하며, 2023년 이후 3단계 개발사업에서는 내부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임

□ 총사업비는 22조 2천억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국비가 10조 9천억원, 지방비 9,500억원, 민자 10조 3,300억원으로 구성됨[23)]

○ 2017년까지 투입규모는 5조 4천억원(국비 4조 1천억원, 지방비 5천억원, 민자 8천억원) 수준이며, 단계별로 2020년까지 13조 2천억원을 투입하고 2021년 이후 9조원을 투입할 계획임

○ 국비(10조 9천억원)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농생명·환경생태용지 조성(3조 4천억원), 도로 및 방파제 등 기반시설 조성(5조원), 수질개선(2조 1천억원), 신교통수단 등 기타 사업(4천억원)임

○ 용도별로 보면, 용지조성에 10조 9천억원, 기반시설에 6조 6천억원, 수질개선에 2조 9천억원, 기타 1조 8천억원이 예상됨

23) 새만금개발청, 「2018년도 업무계획」, 2018.2, p.3

<표 Ⅲ-28>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 현황

(2018.3월 기준)

대상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추진현황
농어촌공사	산업단지	18.5㎢	’08~’18년	25,498억원	- 1공구 매립·조성완료 - 2공구 매립완료 후 용지 조성 중 - 5공구, 6공구 매립 중
전북 개발공사	관광레저용지 (초입지)	1.1㎢	’08~’22년	2,548억원	- 매립 완료, 조성공사 실시계획 수립 추진(’18.12)
보성·한양 컨소시엄	관광레저용지 (신시야미)	1.9㎢	’18~’22년	3,613억원 (직접투자 1,184억원)	- 사업시행 협약 체결(’17.9) 후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중
농어촌공사	농생명용지	94.3㎢	-	약 2.9조원	- 11개 중 9개 공구(81.4㎢) 용지 조성 중
새만금 지방환경청	환경생태용지	0.81㎢	’11~’20년	577억원	- 실시계획 승인(’17.10) 및 공사 착공(’18.2)

자료: 새만금개발청, 내부자료

□ 용지조성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대규모 장기간이 소요되는 매립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는 참여가 저조한 형편임

○ 농생명용지는 농림부, 환경생태용지는 환경부, 산업연구용지내 산업단지는 농어촌공사, 관광레저용지 내 관광단지는 전북개발공사 등이 각각 시행하고 있음

○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뿐만 아니라 사업의 리스크도 커서 민간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 2018년 3월 기준 5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함

○ OCI(주):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내 571,352㎡

- (사업내용) 폴리실리콘 제조 시설
- (사 업 비) 약 2.2조원, (고용규모) 약 2,000명
- (진행상황) 토지매매 계약(’13.3), 착공(미정/투자업종 변경 검토 중)

○ OCISE㈜ 열병합발전소 건설: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내 162,153㎡

- (사업내용) 지역 냉·난방 및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
- (사 업 비) 9,572억원, (고용규모) 100명
- (진행상황) 토지매매 계약(’13.9), 착공(’13.12), 준공(’16.4)

○ 도레이(일본):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내 214,951㎡

- (사업내용) PPS 수지 및 원료 생산 시설
- (사 업 비) 3,000억원, (고용규모) 300명
- (진행상황) 입주계약('14.1), 착공('14.7), 준공('16.7)

○ 솔베이 실리카(벨기에):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내 69,935㎡
- (사업내용) 친환경타이어 소재 실리카 생산(세계 5대 화학 그룹)
- (사 업 비) 1,200억원, (고용규모) 600명
- (진행상황) 토지매매 계약('15.2), 착공('15.4), 준공('16.10)

○ 이씨에쓰(주): (위치/면적)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내 6,612㎡
- (사업내용) 열교환기, 탱크류 제조 시설
- (사 업 비) 28억원, (고용규모) 11명
- (진행상황) 토지매매 계약('15.2), 착공('15.3), 준공('15.9)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국책사업으로 아시아의 문화와 자원이 상호교류하는 새로운 문화도시의 성장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목표[24)]
- 아시아 문화가 교류·집적되고 연구, 교육, 창조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도시
- 국제적 문화공동체 도시인 '아시아문화교류의 도시'
- 아시아 예술가들의 창작·연구·교류를 통하여 세계 문화예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자유·평화를 구현하여 사회 통합의 토대가 되는 '아시아 평화예술의 도시'
- 문화를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하여 고부가가치 감성경제를 구현하는 '미래형 문화경제의 도시'

24) 문화체육관광부(2017), p.6

○ 2004~2023년까지 총 5조 3천억원(국고 2조 8천억원, 지방비 8천억원, 민자 1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200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해 통합적인 법률지원이 이루어짐

○ 2007년 10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2008년 본격 조성사업이 추진됨

○ 2008년 6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을 착공하여 2014년 10월 완공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정치적 대립과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공사가 4년 여간 지연되는 등 차질이 발생함

□ 2009년 1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을 신설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음

○ 지원대상

- 문화산업 등: 투자금액 5억원 이상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 관광산업 등: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 관광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골프장 제외)
  -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을 운영하는 사업

○ 지원내용: 법인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2010년 12월에 투자진흥지구 3개 권역(KDB생명빌딩, 국립문화전당권역, CGI센터권역)을 지정하고, 2011년 8월에 투자진흥지구 1개 권역(대원빌딩)을 추가 지정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일원, 282,433㎡

- 대상업종: 관광 숙박업, 공연, 전시, 음악
- 42개 업체 입주, 고용 63명

○ CGI센터권역: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1 일원, 15,536㎡
- 대상업종: 방송, 영상, VFX, 3D입체영상
- 24개 업체 입주, 고용 229명

○ KDB생명빌딩: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83,489㎡
- 대상업종: 애니메이션, 캐릭터, 콘텐츠 솔루션
- 19개 업체 입주, 고용 198명

○ 대원빌딩: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69, 9,862㎡
- 대상업종: 게임, 3D 입체영상
- 대원빌딩 입주기업은 모두 KDB 생명빌딩으로 이전하여, 2017년 말 현재 공실상태임: 추후 지정해제를 논의할 예정임

<표 Ⅲ-2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현황

(2017.12.31. 기준)

구분	KDB생명빌딩	국립문화전당권역	CGI센터권역
신청자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지정일	2010.12. 9	2010.12. 9	2010.12. 9
대상지	- 서구 양동 60-37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업체 사용	- 동구 금남로, 충장로궁·장·대의·황금동 - 아시아문화전당 등	- 남구 송하동373-3외 CGI센터 - 남구청 교통과 부지
면 적	83,489㎡(25,299평)	282,433㎡(85,435평)	15,536㎡(4,699평)
입주기업 (85개)	19	42	24
고용현황 (490명)	198	63	229
주요시설 및 내용	- 애니메이션, 케릭터, 방송/영상, 게임, 웹/IT 등	- 아시아문화전당 내에서 파생되는 연관산업 및 연계효과가 큰 전시 및 공연, 음악 및 관광숙박업 등	- VR,방송, 영상, VFX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내부자료

7. 금융중심지

□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금융산업을 21세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함

□ 2003년 이후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중심지 조성·발전을 위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금융시장 선진화 관련 제도 개선, 인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함

○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 1단계 전략(2004~2007년)에 따라 금융허브 기반 구축을 추진함

- 한국투자공사 출범(2005. 7), 금융전문대학원(KAIST) 설립(2006. 3), 「자본시장통합법」 제정(2007. 8) 등

○ 2007년 12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25)]

○ 2008년 8월,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08～2010)을 수립함

○ 2008년 9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금융중심지 조성과 금융회사 유치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함

- 부산에 부산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09.5.15)

○ 2009년 1월 서울·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금융회사 집적을 통한 금융클러스터 형성을 추진함

-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 ‘부산’, 종합금융중심지 ‘서울’지정

○ 2011년 9월, 제2차(2011～2013), 2014년 9월, 제3차(2014～2016), 2017년 9월 제4차(2017～2019)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함

□ 부산시는 금융허브 역할과 더불어 항만 물류, 선박, 수산 등 차별화된 특화 금융기능을 가진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동북아 해양수도’를 향한 부산의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 기능을 크게 강화시켜나갈 계획으로 금융중심지 사업을 추진함

---

2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8699호, 2007.12.21. 제정, 2008.3.22. 시행) 제·개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8.3.15. 접속)

○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조성, 파생상품 R&D센터 설립, 탄소 배출권거래소와 상품거래소 등의 유치 추진,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주요 금융기관, 선박금융 부서의 부산 유치 등을 중심으로 추진됨

- 2014년 8월에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완공되었으며, 이 센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기업이 입주함

□ 부산금융중심지는 해양금융, 파생상품, 백오피스/백업센터의 3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음[26)]

□ 해양(선박·해운)금융 육성: 선박 및 해운금융 특화 금융기관 유치, 선박 및 해운금융 전문기관 설립, 해운비즈니스클러스터 구축 등

○ 한국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점 개소(2014. 10)
○ KSF 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본부 개소(2014. 11)
○ 해양금융종합센터개소(2014. 11): KEXIM, KDB, KSURE 해양관련 부서 이전
○ 한국해양보증보험(주) 보험업 인가(2015. 6): 자본금 5,500억원(정부 2,700억원, 민간 2,800억원) 목표
○ 2015년 말 기준 1,248억원 해양금융부문 출자(정부 1,000억원, 민간 248억원)
○ 캠코선박운용 부산 이전(2015. 6)
○ 해양금융 통합협의회 발족(2015. 9): 실물과 금융부문을 연결하는 통합 클러스터 구축 노력
○ 한국선박해양 개소(2017. 4)

□ 파생금융 활성화: 새로운 파생금융상품 개발, 거래시스템 선진화,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탄소배출권 거래소 운영 등

○ 한국거래소 내 파생상품연구센터 설립(2012. 2)
○ 금리스왑거래 청산업무(CCP) 개시(2014. 3)
○ 금거래소 개소(2014. 3)
○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소 개소(2015. 1)
○ 미니선물 및 미니옵션 시장 개설(2015. 7)

---

26)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홈페이지, BIFC현황(http://www.bifc.kr/content/content.php?mnid=39, 2018.3.15. 접속)

□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유치: 백업센터, 전산센터 구축 등 기반 강화, 정부 및 금융기관의 백업센터 유치, 외국회사(MS 등)의 데이터센터 유치 중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에는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규정됨

○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서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3년간 법인세액 100%, 그 후 2년간은 50%가 감면됨

○ 이 조세지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만 적용되므로 부산 금융중심지에만 적용됨

○ 다른 곳에서 부산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세지원 대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8. 첨단의료복합단지

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념, 추진과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개요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산업 R&D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함

○ 첨단의료산업단지 주요기능

- 첨단제품 개발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
- 의료산업 연구 성과 제고 및 성과 확산 지원
-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료산업 커뮤니티 주도
- 지역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소 및 기업 유치

□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과정 및 주요 개정연혁

○ 2005년 10월, 제1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방침 결정

○ 2007년 6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방안 마련

○ 2008년 4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9년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신서, 충북 오송) 지정
○ 2011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1차 종합계획 수립
○ 2011년 12월, 조특법 관련 조항 도입, 일몰기한은 2013년 12월 31일로 지정
○ 2013년 11월, 핵심연구지원시설 준공
○ 2013년 12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차 종합계획 수립
○ 2014년 1월, 조특법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
○ 2016년 12월,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서비스업 분야의 감면 한도 추가

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현황과 조세감면

□ 대구경북 첨단산업복합단지의 입주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체 87개의 기관이 입주하였음(<표 Ⅲ-30> 참조)
○ 토지분양: 총 27개 기관(연구기관 4, 기업 20, 행정기관 3)
○ 공동연구센터 연구실분양: 총 37개 기관
○ 렌탈랩 임대: 총 22개 기관(기업 19, 기관 1, 연구기관 1, 병원 1)
○ 충북 오송단지의 입주현황 자료는 입수하지 못하였음

<표 Ⅲ-30> 대구경북첨단복합단지 입주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토지	공동연구센터 연구실	랜탈랩	합계
2014년	2	-	-	2(2.3)
2015년	5	5	2	12(13.8)
2016년	3	17	8	28(32.2)
2017년	3	7	7	17(19.5)
2018년	1	-	-	1(1.1)
입주 준비중	14	8	5	27(31.0)
전체	28	37	22	87(100.00)

자료: 대구경북첨단복합단지 입주관리 담당자 (2018년 4월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경북 및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하여 보건의료기술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재산세는 10년간 면제 후 3년간 50% 감면하며, 취득세는 면제함

○ 감면한도는 ① 투자누계액의 50%와 ② 투자누계액의 20% 한도 내에서 상시근로자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임

○ 서비스업의 경우, 감면금액이 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누계액의 100%와 상시근로자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감면받을 수 있음

○ 이 공제제도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및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 또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임

○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표 Ⅲ-3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세지원제도 개관 및 실적

(단위: 억원)

			조특법 규정		도입 연도	법인, 소득세 감면	법인세 외 감면	일몰 기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제121조의21		2011	3년 100% 2년 50%		2019
감면실적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망)	2018 (전망)
	소득세	신설	-	-	-	-	-	-
	법인세	-	-	0.05	0.17	0.13	0.09	
	계	-	-	0.05	0.17	0.13	0.09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개정연혁, 2018. 3. 12 접속

□ 감면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도 500만원, 2015년도 1,700만원, 2016년도 1,300만원으로 미미한 상황임

다. 조세감면 외 입주기업 지원

□ 첨단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조세감면 외에도 규제특례와 재정지원을 받으며 추가적으로 첨단복합단지에 구축된 인프라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규제특례는 다양한 관련법하에 특례가 주어지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료법」: 외국 의료인에게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허용

○ 「건강보험법」: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임상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인정

○ 「약사법」·「의료기기법」

- 생산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의약품·의료기기도 품목허가 취득 가능
- 연구목적 의약품·의료기기 수입 허가 및 신고 간소화
-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 기준 등을 국제 규범 적용

○ 「생명윤리법」

- 단지 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별도 심의
- 단지내 기관은 공동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활용

○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2→5년)

○ 「특허법」: 단지 내 연구개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 재정지원은 조세지원과 같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외투비율 30% 이상인 기업의 경우 부지매입비

○ 임대료, 건축비, 고용 및 훈련보조금 지원

□ 국내기업의 경우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 혜택도 있음

○ 최대 10억원 이내 보조

○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총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 부지매입 지원

○ 5년간 무이자 분납 또는 일시 납부시 할인

○ 중소·벤처연구기관은 커뮤니케이션센터 내 입주 지원(4천㎡)

□ 첨단의료복합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신약개발지원센터·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실험동물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의료기업의 상품화 과정에 대해 기술 지원을 제공함

○ 신약개발 지원센터

- 화합물신약 표적치료제 분야 신약개발 지원
- 국내 신약개발 Death Valley인 '후보물질 최적화' 단계 지원
- 종양, 당뇨대사, 뇌신경 질환 등 3대 질환 약리평가 기반기술 확보

○ 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 영상 기반 융합 진단 및 치료기기(IT 중심) 개발 지원: 3대 핵심질환(심뇌혈관질환, 노인성질환, 암질환)에 초점
- 상용화 중심의 One-Stop Total Solution 서비스 지원 실시: 수요자 맞춤형 응용공동연구에서 임상연계까지

○ 실험동물센터

- 합성신약 / IT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지원 시스템 확립
- 3대 차별화 전략을 통한 맞춤형 동물실험지원: 생체영상분석 / 첨단 융합 미세수술 / 맞춤형 동물모델

○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 글로벌 GMP 수준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 및 공급
- 국내 제약사 지원
- 의약품 분석법 개발 및 제조공정 최적화
- GMP 컨설팅

□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교통·의료·첨단산업 등의 인프라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인력수급 및 정주여건 등을 마련하였음

○ 전국 최고의 의료인프라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의 고밀도 집적, 연계

- 한국뇌연구원(KBRI) 설립 확정 등 글로벌 연구소 입지 예정

- 227개 의료 관련 학과 보유 및 국내 전문인력의 20% 배출
- 국가지정 전임상, 임상,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소재
- 경북대 등 11개 의대, 약대 등 의료 R&D 기관 48개 집적

○ 첨단 메디컬산업 발전을 이룰 최적의 산업 구조
- 신약, 의료기기 개발 핵심인프라: 방사광가속기(포항)와 양성자가속기(경주)
- 우수한 IT 및 신소재 산업(전국 비율): IT 37.8%, 신소재 25.4%
- 국가지정 첨단 융·복합 연구실 13개소: POSTECH 세포면역학연구실 등
- 로봇 및 융·복합기술 산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차세대 융·복합기술센터

○ 우수한 교육기관
- 지역 48개 대학 및 특성화 교육기관에서 연간 8만명의 우수한 기술인력 배출
- 지역 내 11개 의료분야대학 227개 학과에서 배출되는 전문인력수급 용이
- 3,283개의 병원 및 의료기관을 통한 풍부한 의료 전문인력 상근

9. 요약

□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지원이 시작된 지도 오래되었고, 이미 상당수의 기업이 입주하였음

○ 2006년에 대덕연구단지, 2011년에 광주 및 대구, 2012년에 부산이 지정됨

○ 지정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이미 상당수의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나타남
- 총입주기업 5,018개: 광주(1,140), 대구(728), 대덕(1,763), 부산(891), 전북(450)

○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 수를 보면 2008~2016년의 기간에 매년 21~55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며, 2011년 55개에서 2016년 26개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지원이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이미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였음

○ 2009년에 대구와 오송이 지정되었고, 2011년에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었음

○ 대구에만도 약 90개의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조세지원실적은 거의 없음

□ 제주도 지역의 특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제주도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도의 특구 조세지원제도는 2002년에 도입된 이후 2010년까지는 지원 실적이 없으며, 2011년 이후 소수의 기업이 지원을 받았음

○ 제주도의 특구는 지역개발, 특정 산업의 집중에 따른 시너지효과, 외국인투자 유치의 성격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은 2017년 기준 총 118개임

- 총 237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나 106개 기업이 퇴거하여 입주기업 수는 131개임
- 입주기업은 IT 기업과 BT 기업이 주종임

○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017년 12월 기준 총 55개 기업이 지정되었으나 11개 기업의 지정이 해제되어 44개 기업이 지정된 상태임

- 최근의 지정동향을 보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9개씩 지정되어 가장 많이 지정되었으며, 2015년에 2개, 2016년에는 3개가 지정됨
-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4개 기업과 1개 기업이 지정 해제됨
- 지정기업은 휴양업과 호텔업이 주종임

□ 기업도시는 2005~2006년에 시범사업지구 6개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두 개 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음

○ 무주는 주 출자자인 대한전선이 2008년 5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대체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2011년 1월 시범사업이 취소됨

○ 무안은 사업지구를 두 개로 분할하여 국내단지와 한중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두 개의 단지 모두 사업이 취소됨

○ 영암·해남지구의 경우 4개 지구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중 하나인 부동지구는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2012년 1월에 사업을 반려하고 3개 지구만 추진함

○ 시범사업 이후 기업도시 신청 사례가 없음

□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는 충주기업도시로, 2012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2020년까지 도시조성을 완료할 계획임

○ 충주기업도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현재 18개의 업체가 가동 중이며, 건설 중인 업체가 1개, 설계 중인 업체가 6개로 총 25개의 업체가 가동·건설·설계중임

○ 산업용지 중 5곳은 미분양 상태임

□ 원주기업도시는 토지보상비 증가와 일부 출자자 워크아웃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2년 정도 지연되었음

○ 2015년 1단계 준공, 2017년 2단계 준공 이후, 2018년에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사업을 종료할 예정임

○ 2018년 3월 현재 13개사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됨

○ 최근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KTX 개통 등 교통여건 개선에 힘입어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2017년 말 기준 44개 필지 중 37개 필지가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짐 - 면적기준으로 분양률이 2016년 말 50% 수준에서 2017년 말 74.8%로 확대됨

□ 태안기업도시(라티에라)와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관광레저형인데,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은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금융중심지 조세지원은 2010년에 도입되었는데, 지역특구 조세지원 실적이 없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는 2017년 말까지 3개의 권역에 85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하였음

○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우에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KSF 선박금융과 한국선박금융의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점 등 업체가 입주하였으나 조세지원 실적이 없음

○ 이와 같은 업체들의 입주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원 실적이 없는 것은, 이 지역 입주·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소기의 목적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시사함

Ⅳ. 외국의 유사한 지원제도

Ⅳ. 외국의 유사한 지원제도

1. 동남아 주요 국가의 유사한 조세지원제도[27)]

□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 관계에 있는 동남아 국가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의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조사, 정리하였음

○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 등은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중심으로 정리함

가. 중국

□ 서부지구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5%의 기업소득세 우대세율이 적용됨[28)] [29)]

○ 국가가 규정하는 장려산업 업종에는 교통, 전기, 수력, 우편사업 및 TV 방송업 등이 있음

○ 장려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기업 총수입의 70%를 초과하여야 함

○ 서부지구: 충칭 시정촌, 쓰촨 성, 구이 저우 성, 윈난성, 티베트(시짱) 자치구, 산시, 간쑤성, 닝샤 후이족 자치구, 칭하이, 신장 위구르어 자치구, 신강 생산건설 그룹, 내몽고 자치구, 광시 자치구 등

---

27) 본 연구와 동시에 진행되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심층평가 연구(안종석·최기호·이재호(2018))의 내용 중 동남아 국가의 지역특구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여 옮긴 것임

28) The Ministry of Finance, the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and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jointly issued the Notice Regarding Implementation of Tax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Western Regions(CaiShui(2011) No.58), which extended the valid period for the preferential tax rate of 15% to December 31, 2020.

29)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에서 재인용

나. 대만

□ 자유무역 지대 입주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30]

○ 2018년 4월 28일 현재 자유무역 지대는 없고, 5개의 자유무역 항구(free trade ports)가 있음

○ 자유무역 항구의 목적은 외국기업들을 유치하여 그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다시 다른 외국기업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 대만 내 제조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도 자유무역 항구를 이용할 수 있음

○ 자유무역 항구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함

다. 말레이시아

1) 주요 허브 인센티브[31]

□ 주요 허브는 위험관리, 의사결정, 금융이나 인적자원과 같은 주요한 기능들의 관리, 통제와 지원을 포함하여 국내 및 세계 사업을 수행하는 데 말레이시아를 그 기지(base)로 사용하는 회사를 말함

○ 주요 허브는 다음과 같이 감면된 법인세율을 5년(5년 연장 가능)간 적용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사업체들의 단계 결정은 고임금 근로자들과 주요허브 내 핵심관리자의 각 인원 수에 의해서 정해짐

- 1단계(tier) 사업체의 경우 0%
- 2단계(tier) 사업체의 경우 10%
- 3단계(tier) 사업체의 경우 20%

○ 특정 원재료나 부품, 완성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주요허브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산업개발청(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30) CCH(2018), [TWN 1-200] SPECIAL INCENTIVES, GRANTS, ETC에서 다루고 있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임

31) Income Tax Act s 127(3)

○ 납입 자본금: 2,500만링깃(한화 약 6억 7,500만원) 이상
○ 연간 사업비: (i) 1단계 사업체의 경우 1천만링깃(한화 약 27억원) 이상, (ii) 2단계 사업체의 경우 500만링깃(한화 약 13억 5천만원) 이상, (iii) 3단계 사업체의 경우 300만링깃(한화 약 8억 1천만원) 이상
○ 인적자원 개발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3개 이상의 국외 관계회사에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통제하여야 함
○ 적격 서비스(사업관리, 전략계획 및 브랜드관리와 같은 전략 서비스)를 최소 3개 이상 제공하여야 함

2) 이스칸다 개발 특구(Iskandar Development Region; IDR)[32]

□ IDR은 조호르(Johor) 주에 소재한 약 2,200평방킬로미터 상당의 토지로 이루어진 특별경제구역을 말함
○ IDR 내 승인된 구역에서 적격활동을 수행함으로써 IDR 지위를 부여받은 회사들은 그 활동을 개시한 때부터 10년간 법인세와 원천세(사용료 및 기술이용료) 비과세 혜택을 받음
○ 이스칸다 지역발전청(the Iskandar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IRDA)이 승인한 적격 서비스는 광범위한데, 대체로 다음의 6가지 대상부문(target sectors)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됨
- 창조적 산업, 교육서비스, 금융 자문 및 상담서비스, 보건서비스, 물류서비스, 관광
○ IRDA가 현재 인정한 적격활동 목록은 열거된 것이 전부가 아니며 계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중임
- 납세자는 평가 및 승인을 얻기 위해 IDR 지위 신청서를 IRDA에 제출해야 함

3)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지위[33]

□ MSC 지위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에 주어짐
○ 멀티미디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사용함
○ 상당한 수의 고급 인력을 고용함

32) Income Tax(Exemption)(No 20) Order 2007
33)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s 21C; Income Tax(Exemption)(No 2) Order 2015

○ 말레이시아에 기술이나 지식의 이전, MSC의 개발에 대한 기여, 말레이시아 경제 계획의 지원이 있어야 함

○ 쿠알라룸푸르 도시센터와 쿠알라룸푸르 공항 사이의 지역에 소재하는 MSC로 지정된 사이버도시에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 MSC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 5년간 법정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며, 추가로 감면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음

○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투자세 비용공제(ITA)를 청구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연구개발보조금을 지급함

○ 기타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 MSC 지정 사이버도시 밖에서 적격활동을 수행하는 MSC 기업들이 MSC 지정 사이버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의 70% 감면과 추가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라부안 국제 사업 및 금융센터[34)]

□ 역외트레이딩활동(offshore trading activities)을 행하는 라부안법인은 1990년 라부안 사업활동세법(the Labuan Business Activity Tax Act; LBATA)에 따라 감사받은 회계장부에 반영된 순이익의 3%나 2만링깃(한화 약 5.5백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할 의무를 짐

○ 비트레이딩활동(non-trading)을 수행하는 라부안법인은 소득세(income tax) 납부의무가 없음

○ 역외트레이딩활동과 비트레이딩활동에 모두 관련이 있는 라부안법인은 역외트레이딩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순이익의 3%로 과세되거나 2만링깃(한화 약 5.5백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34) Labuan Business Activity Tax Act 1990(LBATA) s 4, 7 and 8A; Stamp Duty (Exemption) Order 2011. 그 밖에 조세감면 내용에 관한 상세는,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 pp. 55~63 및 pp. 71~78 각각 참조

○ 라부안법인은 라부안금융서비스청(the 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 통보하면 말레이시아 거주자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나, 이 경우 말레이시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LBATA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소득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됨

□ 역외사업활동(offshore business activities)을 행하는 라부안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이슬람종교회비(zakat)를 환급받을 수 있음

○ 라부안 이슬람 종교청(Labuan Islamic religious authority)이 발급한 영수증으로 납부를 증명해야 함

○ 이슬람종교회비 환급액은 납부세액(즉, 순이익의 3% 또는 2만링깃(환화 약 5.5백만원) 중 선택한 것)을 한도로 하며,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음

□ 1949년 「인지세법」에 따른 부과대상인 모든 법률문서(instruments)의 작성에 대해서 인지세가 면제됨

라. 요약

□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은 주로 낙후지역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데, 중국의 경우 서부지역개발 기업소득세 감면이 대표적임

○ 서부지구에 설립되고, 국가가 규정하는 장려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당해 연도 적격 사업의 수입이 기업 총수입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 15%의 우대세율이 적용됨

○ 해당 산업으로 교통, 전기, 수력, 우편사업 및 TV 방송업 등이 있음

○ 서부지구에는 충칭 시정촌, 쓰촨 성, 구이 저우 성, 윈난성, 티베트(시짱) 자치구, 산시, 간쑤성, 닝샤 후이족 자치구, 칭하이, 신장 위구르어 자치구, 신강 생산 건설 그룹, 내몽고 자치구, 광시 자치구 등이 있음

□ 말레이시아에는 이스칸다 개발 특구(Iskandar Development Region; IDR) 조세지원과 특정 지역의 개척자 지위 기업 지원이 있음

○ IDR은 조호르(Johor) 주에 소재한 약 2,200평방킬로미터 상당의 토지로 이루어

진 특별경제구역을 말함

- IDR 내 승인된 구역에서 특정한 적격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IDR 지위를 부여받은 회사들은 그 활동을 개시한 때부터 10년간 법인세와 원천세(사용료 및 기술이용료) 비과세 혜택을 받음
- 주로 창조적 산업, 교육서비스, 금융 자문 및 상담서비스, 보건서비스, 물류서비스, 관광업에 적용됨

□ 그 외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조세감면으로 대만의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과 말레이시아의 MSC가 있음

○ 대만에는 5개의 자유무역 항구(free trade ports)가 있는데, 자유무역 항구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함

○ 말레이시아에서는 쿠알라룸푸르 도시센터와 쿠알라룸푸르 공항 사이의 지역에 소재하는 MSC로 지정된 사이버도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MSC 지위를 부여하여 조세지원을 함

-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고급 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며, 말레이시아에 기술이나 지식의 이전, MSC의 개발에 대한 기여, 말레이시아 경제계획의 지원 등이 요구됨
- MSC 기업에는 개척자 지위가 인정되며, 그에 따라 법인세 감면 또는 투자비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주요 선진국의 유사한 조세지원제도[35)]

□ 특정 기업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일정기간 세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의 조세지원은 주로 특정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는바, 다음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특정 지역 입주기업 지원제도를 조사, 정리함

○ 조사대상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35) 본 연구와 동시에 진행되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심층평가 연구(안종석·최기호·이재호(2018))의 내용 중 선진국의 지역특구 지원제도 설명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임

가. 미국

1) Empowement Zones(EZ)[36)]

□ 미국의 Empowerment Zones Program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고용을 증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1994년에 최초로 시행됨

○ 경제 침체지역 내 기업에 대해 고용공제, 설비투자 증대에 대한 과세특례, 특별 면세, 자본이득 과세특례 등의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

○ 인구조사구를 단위로 하여 1994년에 11개의 Empowerment Zone을 지정하였으며 1999년 다시 20개 Empowerment Zone을 추가함

○ Empowerment Zone은 Renewal Communities(RCs), Empowerment Zones(EZs), Enterprise Communities(ECs)의 3가지 형태로 구성됨

□ Empowerment Zone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인구와 면적이 크지 않은 중소도시로서 저소득과 실업,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임

○ 인구규모가 20만명 이하이고, 전체 면적이 20평방마일을 넘지 않을 것

○ 심각한 저소득과 실업이 문제가 되는 지역으로 빈곤률이 20% 이상일 것

□ Empowerment Zone 개발사업체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세지원혜택이 제공됨

○ Empowerment Zone 지역의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해당연도 급여의 20%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종업원(시간제 종업원 포함)당 최고 한도는 3천달러로 함

- 동시에 Empowerment Zone 지역의 18~24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work opportunity tax credit을 적용하여 2,400달러를 세액공제함

○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외에도 Empowerment Zone 지역의 기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사회서비스와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금 1억달러를 지원함

36) 전병목(2016), pp. 33~34를 이용하여 정리함

2) New Market Tax Credit(NMTC)[37]

□ New Markets Tax Credit은 지역개발기업(community development entity, CDE)의 적격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 7년간 총 39%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임

○ 낙후지역 개발사업 및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0년 Community Renewal Tax Relief Act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임

○ 미국 재무부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기금에 의해 관리되고, 지역개발회사(CDE)에 의해 수행됨

○ 지역개발회사에 투자하는 은행 등 민간 투자자에 대해 처음 3년간은 5%, 이후 4년간 6%의 세액공제를 제공함

○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함

- 빈곤율 20% 이상, 중위소득이 지역 중앙값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나. 영국

1)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ing)[38]

□ EU 집행위 및 영국정부가 지정한 저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설비구입, 광물추출, 정보기술 비용 부문과 관련하여 최대 100만파운드까지 지원이 이루어짐

○ 조세지원이 아닌 별도의 재정(보조금)지원의 형태임

□ 지원대상은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 위치하는 기업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증축 또는 개량하여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임

○ 기업의 사업 확장 또는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지역의 기존 고용을 보호하거나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함

○ 지역성장기금 외의 다른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함

---

37) MNTC연합 홈페이지, http://nmtccoalition.org/fact-sheet/, 2018.4.10. 접속

38) 영국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understanding-the-regional-growth-fund, 2018.4.9. 접속

○ 건물, 공장, 기계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자본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금은 대부분 민간에서 조달함

○ 이러한 투자를 통해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 27억파운드 상당의 투자를 통해 2020년 중반까지 2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확보할 계획임

□ 보조금의 규모는 고용인원,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대상기업은 입찰을 통해 선발됨

○ 신규 고용창출 인원, 기존 고용 보전 인원, 투자 금액을 고려하여 보조금이 산정되며, 총 32억파운드의 지역성장기금이 정부 및 민간 기금을 통해 지원됨

2)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39)]

□ 성장침체지역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및 회사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임

○ 연간 5%씩 5년간 감면하여 총투자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감면혜택을 제공하는데, 감면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

○ 2013년 4월 5일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 적용됨

3) Business Premises Renovation Allowance[40)]

□ 낙후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에서 오랜 기간 비어 있거나 사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개조·수리하는 경우에 관련 비용을 100% 공제하는 제도임

○ 개보수가 시작되기 전 최소 1년 이상 미사용된 건물이어야 함

○ 상업용 건물이어야 하며 거주지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 이 제도는 2017년 3월 31일에 종료되었음

---

39)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munity-investment-tax-relief-hs237-self-assessment-helpsheet/hs237-community-investment-tax-relief-2017, 2018.4.9. 접속

40) RRL 홈페이지, https://www.rrlcornwall.co.uk/publications/tax-publications/business-tax/time-is-running-out-for-business-premises-renovation-allowance-bpra-claims, 2018. 4. 24 접속

다. 일본

□ 일본의 지역특구는 국가전략특구, 국제전략종합특구, 구조개혁특구로 구분됨

○ 구조개혁특구의 경우 개별 규제특례조치를 활용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별도의 조세·금융·재정지원 제도는 운영하지 않음

1) 국가전략특구

□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전략특구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 등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금융상 지원을 제공함

○ 국가전략특구 내에서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자율주행, 무인비행기 등 신사업의 시험공간(testbed)을 제공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함

○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프로젝트별로 규제를 완화함

- 샌드박스 제도란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현행법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법」 개정(2017년 3월)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핀테크, AI, 개인정보의 가공·서비스, IT 기술, 스마트시티 등으로 함[41]

□ 국가전략특구의 특정 사업의 실시 주체로 인정받은 자가 특구 내에서 기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상각, 세액공제를 적용함[42]

○ 기계·장비(2천만엔 이상), 연구개발용 기구·부품(1천만엔 이상), 건물·부속설비·구조물(1억엔 이상)인 경우

- 특별상각률: 취득가액의 50%(건물 등은 25%)
- 세액공제율: 취득가액의 15%(건물 등은 8%), 당기 법인세액의 최대 20%를 공제한도로 함

○ 국가전략특구 내에서 특별상각을 적용받는 자산 중에서 특정 핵심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상각(50%)뿐만 아니라 그 감가상각비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음

41) 최해옥(2017), p. 4

42)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h30_youbou03.html, 2018.4.11. 접속

- 대상 시설은 기계·장비(4000만엔 이상), 연구개발 기구 및 비품(2천만엔 이상)임

○ 국가전략특구의 설립 5년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의 20%를 소득공제함

<표 Ⅳ-1> 일본 지역특구 현황

특구명	국가전략특구	종합특구		구조개혁특구
		국제전략 종합특구	지역활성화 종합특구	
목적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즈니스 환경 정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산업·기능의 집적 거점 형성	지역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 추진	규제완화를 통한 구조개혁과 지역 활성화 추진
근거법률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종합특별구역법」		「구조개혁특별구역법」
시행년도	2013년	2011년		2002년
시행주체	총리대신 주도	지역 주도		지역 주도
지정구역 수 (2016.3월 기준)	12개	7개	41개	1,264개
지원내용	규제완화, 세제·금융조치	규제완화, 세제·재정·금융조치		규제완화
대표적 사례	[도시계획법 등 특례활용] (동경도) 22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	[아시아 헤드쿼터특구] (동경도) 아시아 지역의 사업 및 연구개발 거점을 목표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자율자동차·스마트에너지 특구] (사이타마시) 에너지 스테이션 및 저탄소형 이동수단 보급, 환경미래도시실현	[하네다공항 로봇실험 특구] (동경도) 하네다 공항 주변지역에서 탑승형 이동지원 로봇의 도로 실험 사업

자료: 최해옥 외(2017), p. 13

2) 국제전략 종합특구

□ 국제전략 종합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금융·세제상 지원을 제공함[43]

○ 기계장치(2천만엔 이상), 연구개발용 기구·부품(1천만엔 이상), 건물 부속설비·구조물(1억엔 이상) 등에 대해 특별상각 및 세액공제를 허용함[44]

- 취득가액의 40%(건물 등은 20%) 특별상각을 허용함
- 취득가액의 12%(건물 등은 6%) 세액공제하며, 공제한도는 당기 법인세액의 최대 20%로 함

○ 조세지원 외 금융지원으로 종합특구 계획으로 인정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

- 이자보조 예정액은 5년간 201억원으로 보조율은 0.7% 이내로 함

□ 2016년 3월 기준으로 7개가 지정되었음[45]

○ 홋카이도 푸드 콤플렉스: 홋카이도 삿포로, 하코다테, 오비히로 등
○ 츠쿠바의 과학기술집적을 활용한 라이프, 그린이노베이션 추진: 이바라키현 츠쿠바
○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 도쿄
○ 케이힌 임해부 라이프 이노베이션: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가와사키
○ 아시아 No.1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형성특구: 기후현, 아이치현
○ 칸사이 이노베이션: 교토, 오사카
○ 그린 아시아: 키타큐슈, 후쿠오카

3) 지역활성화 종합특구[46]

□ 지역활성화 종합특구는 지역투자에 대해 조세·금융·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역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임

---

43) KOTRA(2018), p. 22
44)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h30_youbou03.html, 2018.4.11. 접속
45) 국세청(2015), p. 9
46)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6/request/cao/28y_cao_k_12.pdf, 2018.4.11. 접속

○ 지역활성화 종합특구 내에서 인증받은 사업을 실시하는 특정 법인에 대해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20%를 과세소득에서 소득공제함

○ 지역활성화 종합특구에서 사회적기업(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에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 투자금액(1천만엔 한도)과 총소득 금액의 40% 중 적은 금액에서 2천엔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함[47)]

○ 그밖에 규제완화와 재정·금융지원의 경우 국제전략 종합특구와 동일한 수준임

라. 프랑스

□ 프랑스 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에서는 투자관련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농촌재개발지역(ZRR) 및 도시재생지역(ZRU)에 산업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자에게 해당 건물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정 시 예외적인 감가상각을 적용함(CGI39quinquiesD)

○ 중소기업이 정부의 보조금 없이 코르시카 지역에 투자하는 건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정 시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CGI 244 quater E)

○ 해외 프랑스령에 설립하는 직원 250명 이하, 연간 매출액 5천만유로 미만인 기업의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정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CGI 44 quaterdecies)

○ 도시의 무역자유구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CGI 44 octies)

○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농촌재개발지역(ZRR)에 설립되거나 이전한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CGI 44 quindecies)

○ 연구개발지역에 입주하여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체 또는 부분 면제함(CGI 44 undecies)

○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역에 설립되었거나 199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농촌재개발지역(ZRR) 및 도시재생지역(ZRU)에 설립된 신규 기업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CGI 44 sexies)

---

47)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6/request/cao/28y_cao_k_13.pdf, 2018.4.11. 접속

□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 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는 제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48)]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ZAFR(zones d'aides à finalité regionale)에 설립된 회사는 사업을 개시한 첫 2년 동안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고, 그다음 3년 동안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음

○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는 시기의 감면비율은 각각 75%, 50%, 25%로 해마다 25%씩 줄어들며,

○ 근로자 250명 이하, 매출액 5천만유로(한화 약 630억원) 이하, 정보기술과 공학 분야의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2~5년 동안 지방세도 면제받음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촌 특정지역인 ZRR(zone de revitalisation rurale)에 설립되어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사업을 개시한 첫 5년 동안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고, 그다음 3년 동안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음

○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는 시기의 감면비율은 각각 75%, 50%, 25%로 해마다 25%씩 줄어들며, 5년 동안 지방세도 면제받음

□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설립되고, 근로자 50명 이내, 매출액 1천만유로(한화 약 126억원) 이하로 ZFU-TE에 입주한 회사는 첫 5년 동안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고 그다음 3년 동안 일부를 감면받음

○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는 시기의 감면비율은 각각 60%, 40%, 20%임

- 다만, 비과세되는 과세소득이 매년 5만유로(한화 약 6,300만원)를 초과할 수 없음

○ ZFU-TE(a zone franche urbaine-territoire entrepreneur)는, 고용과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개발된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지역으로서 정부가 영(decree)으로 공표하여 승인한 특별 행정적 지위를 부여받음

48) 프랑스 세법(Code General de Imports: CGI) Art 44 sexies and 44 quindecies; BOI 4 A-12-09 of 24 July 2009; Decree No 2014-758 relating to ZAFR, 2 July 2014

마. 호주

□ 호주의 조세지출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지역특구에 대한 별도의 조세지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호주의 산업공단은 크게 테크놀로지 공단(Technology & Research Park)과 일반단지(Industrial Park)로 나눌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은 하지 않음

바. 요약

□ 본 장에서는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의 특정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정리하였는데, 이 조사에서 드러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대부분의 국가가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나 재정지원제도 또는 두 가지 모두 운용하고 있음

○ 호주의 조세지출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지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국가들은 모두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음

□ 둘째, 지역특구 지원제도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낙후지역, 저개발지역, 저성장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임

○ 미국의 Empowerment Zone, New Market Tax Credit

○ 영국의 지역성장기금지원,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Business Premisses Renovation Allowances

○ 일본의 지역활성화 종합특구

○ 프랑스의 농어촌개발지역 및 도시재생지역 투자 지원, 농촌재개발지역 투자 지원 등

□ 셋째, 일본과 프랑스에는 지역개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가진 특구 지원제도가 있음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 정비
○ 일본의 국제전략종합특구: 산업·기능의 집적 및 거점 형성을 위한 규제개혁, 세제·금융지원 등
○ 프랑스의 자유무역지역 및 연구개발지역

□ 넷째, 지정된 특구에 대해 조세지원, 재정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이 중 어느 하나만 적용되기도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지원이 복합적으로 제공되기도 함
○ 영국은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과 프랑스는 조세지원이 중심임
○ 일본은 조세와 금융지원이 병행되고, 특히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 마지막으로 조세지원 방법을 보면,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액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방식보다 특별상각, 투자세액공제,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공제방식이 많이 적용됨
○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에 더하여 미국에서는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일본에서는 특별상각 방식도 적용됨
○ 예외적으로 프랑스에서는 특정 지역 입주기업 지원 방식으로 일정기간 법인세액을 감면하는 방식을 적용함

Ⅴ. 지역특구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분석

Ⅴ. 지역특구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지역특구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지역특구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의 자료와 그 외 기업의 자료를 비교하여 투자효과, 고용효과 등을 분석해야 할 것임

○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다양한 특구 중 통계분석이 가능한 정도의 조세감면 실적이 있는 특구는 연구개발특구가 유일함

○ 그다음으로 감면을 많이 받은 특구가 제주도 특구인데, 이 경우에도 연간 감면받은 기업이 10개 또는 그에 미달하는 수준이어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감면의 효과분석이 불가능함

○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조세감면의 효과분석에 국한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제1절과 제2절), 제주도 특구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효과분석을 대신함(제3절)

○ 그 외 특구의 경우에도 감면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는데(제4절), 조세감면 실적이 거의 없는바, 조세감면이 이들 특구로 기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조세감면의 효과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성과분석(제1절)과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성과분석(제2절)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연구개발특구를 형성하고 조세감면을 하는 것은 해당 특구에 연구개발기업들을 집중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성과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한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중에서 특구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특구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성과를 따로 검토함

1.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매출액, 투자, 고용 분석

□ 다음에서는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입주기업 목록과 NICE평가정보의 재무 Database인 KISVALUE의 전체 외감기업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의 매출액, 투자, 고용 측면에서의 성과를 살펴봄

○ 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등의 패널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추정함

가. 분석자료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입주기업 목록과 NICE평가정보의 재무 Database인 KISVALUE의 전체 외감기업 자료임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입주기업 목록에는 총 3,464개의 기관명이 있으며, 2,359개의 관측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일을 구분할 수 있음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입주기업 목록 자료와 KISVALUE 자료를 기관명으로 병합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음

□ KISVALUE의 기업정보는 2005~2017년 사이 전체 28,945개의 기업 자료를 활용하였음

○ KISVALUE 자료는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모두의 재무자료로서 우리나라 외감기업의 모집단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음

- 상장기업은 2,230개, 비상장기업은 23,338개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됨

○ KISVALUE 자료를 사용한 개별기업 수준의 실증분석의 경우 입주기업 중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그러므로 아래의 실증분석 결과는 특구 입주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에 대한 분석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제2절)에 정리하였음

□ KISVALUE에 공시된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의 특성상 파산 및 폐업 등의 영향으로 인한 이상치(outlier) 수준의 관측값이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양 끝으로 1% 수준의 이상치를 제거한 후 분석하였음

□ 분석에 사용한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량을 <표 Ⅴ-1> 및 <표 Ⅴ-2>에 정리하였음

○ <표 Ⅴ-1>에는 KISVALUE에 공시된 외감기업의 기초통계량을 정리하였고, <표 Ⅴ-2>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기초통계량을 정리하였음

○ 두 집단의 기초통계량을 비교해 보면, 유형자산과 인건비, 자산총계에 로그를 취한 값의 평균치는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표준편차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동질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부채비율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평균치가 KISVALUE에 공시된 외감기업 평균치보다 낮은데, 이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그 외 기업에 비해 양호함을 시사함

<표 Ⅴ-1> KISVALUE에 공시된 외감기업의 기초통계량

(단위: log,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ln(유형자산계)	20.395	2.637	2.079	31.665
부채비율	337.823	686.557	2.510	7,953.740
ln(인건비)	20.642	1.346	15.708	24.521
ln(자산총계)	23.815	1.223	20.051	27.866
ln(매출액)	23.530	1.514	18.366	27.743

자료: KISVALUE 기업자료

<표 Ⅴ-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기초통계량

(단위: log,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ln(유형자산계)	21.217	2.151	4.852	28.235
부채비율	260.235	601.943	2.550	7,450.950
ln(인건비)	20.764	1.102	16.150	24.443
ln(자산총계)	23.916	1.105	20.200	27.843
ln(매출액)	23.480	1.415	18.503	27.625

자료: KISVALUE 기업자료

나. 분석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개발특구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매출, 투자, 연구비 지출,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KISVALUE에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여부가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개발특구 입주의 효과를 분석함

□ 본 절에서는 아래 식 (1)과 같은 형태의 패널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추정함

$$Y_{it} = \beta_0 + \beta_1 D_{it} + \boldsymbol{X_{it}}\boldsymbol{\gamma} + \theta_t + \mu_i + \epsilon_{it} \quad (1)$$

○ 식 (1)에서 Y_{it}는 기업 i의 t기 Log매출액, Log투자(유형자산), Log연구비지출, Log종업원수를 나타내는 종속변수이며, D_{it}는 연구개발특구 입주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임

○ $X_{i,t}$는 기업 i의 t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들의 벡터로서 Log총자산, 부채비율, Log인건비, Log매출액 등의 변수를 포함하였음

□ 패널모형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오차항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요소 중 θ_t와 μ_i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인데,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며 관측되지 않는 개별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변수인 μ_i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따라 고정효과모형이나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게 됨

○ 확률변수인 μ_i가 설명변수인 $X_{i,t}$와의 내생성이 존재한다면 μ_i의 객관적인 관측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할 수 있음

○ 확률변수인 μ_i가 설명변수인 $X_{i,t}$와의 내생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μ_i를 오차항에 포함하여 구한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므로, 효율적 추정량을 제공하는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면 됨

□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관측이 어려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업 차원과 지리적 차원 등의 차이가 있어 μ_i와 설명변수인 $X_{i,t}$ 간에 내생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정효과모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음

○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Hausman test) 또한 모든 분석에서 P-value가 0.0000에 가까워 확률효과 모형이 일치추정량을 도출한다는 귀무가설을 강하게 기각하였음

다. 분석결과

1)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조세감면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매출액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추정결과는 <표 Ⅴ-3>과 같음

○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총생산물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 노동수요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음

<표 Ⅴ-3>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 추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0.075***	-0.090***
	(0.027)	(0.017)
부채비율	-0.000***	-0.000***
	(0.000)	(0.000)
ln(인건비)	0.456***	0.455***
	(0.007)	(0.002)
ln(자산총계)	0.500***	0.493***
	(0.007)	(0.002)
상수항	2.424***	3.197***
	(0.140)	(0.239)
연도더미	o	o
대분류 산업더미	x	o
기업규모더미	x	o
상장더미	x	o
관측치수	218,824	218,824
기업수	23,368	23,368

주: 1. ( )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가 기업의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log(매출액) 변수를 사용함

○ 설명변수로는 기업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고려하였으며, 노동의 질과 임금에 따른 성과 및 제약을 고려하고자 인건비를 고려하였고, 기업 크기에 따른 규모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총자산 자료 등을 사용하였음

○ 그 외에도 연도더미, 상장더미, 기업규모더미, 산업더미 등을 통제변수로 적용하였음

□ 고정효과 분석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7.5%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추정결과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확률효과 분석도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로 고정효과 결과와 같은 방향의 매출액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계수값의 경우 조금 더 작게 나타남

2)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이 있다면 기업은 조세감면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조세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역할과 국가 주도하에 잘 갖춰진 인프라가 있어 특구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투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log(유형자산) 변수를 사용하였음

○ 통상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 유형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건물·토지·공장·기계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 규모가 늘어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투자의 증감을 살펴보기 위해 토지와 건물은 분석대상 유형고정자산에서 제외하였음

○ 설명변수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출액, 부채비율, 인건비, 총자산 등의 재무변수와 기업규모, 상장여부, 연도더미, 산업더미 등을 고려하였음

□ 고정효과 분석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투자가 16.7% 많았으며, 추정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확률효과 분석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투자가 18.3% 많았으며, 추정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해보면, 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하지 않은 기업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Ⅴ-4>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추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0.167***	0.183***
	(0.050)	(0.035)
부채비율	0.000	0.000***
	(0.000)	(0.000)
ln(인건비)	0.223***	0.236***
	(0.012)	(0.005)
ln(자산총계)	0.742***	0.712***
	(0.015)	(0.006)
ln(매출액)	0.097***	0.097***
	(0.012)	(0.005)
상수항	-3.731***	-0.585
	(0.270)	(0.506)
연도더미	o	o
대분류 산업더미	x	o
기업규모더미	x	o
상장더미	x	o
관측치수	216,981	216,981
기업수	22,954	22,954

주: 1. ( )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3)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연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앞에서 살펴본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은 현재 투자성과 가시화 및 사업화가 보다 강조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전까지는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었음

○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특구 설립 취지에 따라 연구개발투자가 실제로 잘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추정결과를 <표 Ⅴ-5>에 정리하였음

<표 Ⅴ-5>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연구비지출에 미친 영향 추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0.123*	0.224***
	(0.072)	(0.058)
부채비율	-0.000***	-0.000***
	(0.000)	(0.000)
ln(인건비)	0.219***	0.243***
	(0.024)	(0.012)
ln(자산총계)	0.184***	0.158***
	(0.025)	(0.014)
ln(매출액)	0.342***	0.276***
	(0.022)	(0.012)
상수항	1.625***	0.985
	(0.469)	(0.838)
연도더미	o	o
대분류 산업더미	x	o
기업규모더미	x	o
상장더미	x	o
관측치수	67,746	67,746
기업수	10,042	10,042

주: 1. ( )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log(연구비손익) 변수를 사용하였음

○ log(연구비손익) 변수는 연구비와 관련된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을 확인하여 연구비·경상연구개발비·경상개발비로 사용된 지출을 합산한 금액임

○ 설명변수로는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하여 기존에 정립된 모형이 일정치 않다는 점과 분석의 강건성을 고려하여, 앞에서 사용한 기업의 차이를 설명하는 기초적인 설명변수를 중심으로 통제변수를 적용하였음

□ 고정효과 분석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연구비 지출이 평균적으로 12.3% 많았으며, 추정계수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확률효과 분석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연구비 지출이 평균적으로 22.4% 많았으며, 추정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비 지출의 분석결과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결과 간에 계수 차이가 큰데 이는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은 설명변수 중 누락된 변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누락된 설명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이 통제되는 고정효과 모형이 확률효과 모형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판단됨

4)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log(종업원수) 변수를 사용하였음

○ 설명변수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채비율, 매출액, 인건비, 유형자산 등의 다양한 재무변수를 고려하였음

□ 추정결과를 보면, 고정효과 분석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종업원 수가 평균적으로 6.2%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확률효과 분석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입주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종업원 수가 평균적으로 5.5% 많으며, 추정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Ⅴ-6>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0.050**	0.056***
	(0.024)	(0.015)
부채비율	-0.000	-0.000***
	(0.000)	(0.000)
ln(인건비)	0.282***	0.337***
	(0.007)	(0.002)
ln(자산총계)	0.189***	0.156***
	(0.007)	(0.003)
ln(매출액)	0.171***	0.173***
	(0.006)	(0.002)
상수항	-10.353***	-9.074***
	(0.129)	(0.209)
연도더미	o	o
대분류 산업더미	x	o
기업규모더미	x	o
상장더미	x	o
관측치수	182,891	182,891
기업수	23,019	23,019

주: 1. ( )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라. 강건성 검증

□ 다음에서는 강건성 검증을 위하여 i)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산업에 속한 기업으로만 분석을 한정하여 추정결과를 제시해보고, ii) 입주한 기업과 산업 및 지역이 동일한 기업으로만 비교대상기업을 한정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음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속성을 반영한 산업과 지역 분류에 따른 대조군을 사용함으로써 산업과 지역효과를 제거한 상태에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과 유사한 속성의 기업들과 비교함

□ 입주기업 산업군 기준으로는 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을 적용하였음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총 19개 대분류 산업군 중 12개의 대분류 산업군으로 구성됨

○ 입주기업 산업군으로 한정하게 되면 전체 자료중 89.55%의 자료를 사용하게 됨

<표 Ⅴ-7>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산업분류현황(대분류)

(단위: 개, %)

대분류	입주기업 수	비율
제조업	449	77.5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	0.69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	0.52
건설업	12	2.07
도매 및 소매업	34	5.87
운수업	6	1.04
숙박 및 음식점업	3	0.5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	2.76
부동산업 및 임대업	26	4.4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	3.8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0.3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0.35
합계	579	100.00

주: 분석에 사용된 입주기업 기준

□ 입주지역 기준으로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으로 지역을 한정하여 동일지역 기업 중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함(<표 Ⅴ-8> 참조)

○ 입주지역에 한정 시 전체자료 중 14.17%에 해당하는 기업-연도 관측치가 사용됨

□ 입주기업과 동일한 산업군으로 비교집단을 축소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전 산업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표 Ⅴ-9> 참조)

○ 비교집단을 입주기업과 동일한 산업과 지역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연구개발특구 입주에 따른 매출액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음

○ 결과적으로 산업군을 축소하고 지역을 한정한 분석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향의 계수와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Ⅴ-8> 강건성 분석에 사용된 본사기준 지역 관측치

(단위: 개, %)

본사 주소	관측치	비율
광주	7,540	14.25
대구	11,050	20.89
대전	5,694	10.76
부산	23,309	44.06
전북	5,304	10.03
합계	52,897	100.00

주: 연구개발특구 지정 광역시 기준

<표 Ⅴ-9>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 추정
(비교집단: 입주기업 동일 산업·지역)

	동일 산업 한정		동일 산업 및 지역 한정	
	(1)고정효과모형	(2)확률효과모형	(3)고정효과모형	(4)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0.075***	-0.090***	-0.113***	-0.143***
	(0.027)	(0.017)	(0.039)	(0.026)
부채비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ln(인건비)	0.456***	0.455***	0.472***	0.468***
	(0.007)	(0.002)	(0.018)	(0.006)
ln(자산총계)	0.502***	0.496***	0.492***	0.494***
	(0.007)	(0.003)	(0.018)	(0.007)
상수항	2.372***	2.905***	2.379***	1.699***
	(0.142)	(0.229)	(0.365)	(0.473)
연도더미	o	o	o	o
대분류 산업더미	x	o	x	o
기업규모더미	x	o	x	o
상장더미	x	o	x	o
관측치수	214,720	214,720	32,863	32,863
기업수	22,845	22,845	3,592	3,592

주: 1. ( )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 비교집단을 입주기업과 동일한 산업군으로 축소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전 산업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 고정효과 분석에서 연구개발특구 입주에 따른 영향이 30.5%로 전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 비해 두 배 정도 크게 나타남

<표 Ⅴ-10>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추정
(비교집단: 입주기업 동일 산업·지역)

	동일 산업 한정		동일 산업 및 지역 한정	
	(1)고정효과모형	(2)확률효과모형	(3)고정효과모형	(4)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0.165***	0.181***	0.302***	0.294***
	(0.050)	(0.035)	(0.080)	(0.054)
부채비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ln(인건비)	0.224***	0.237***	0.249***	0.254***
	(0.012)	(0.005)	(0.036)	(0.014)
ln(자산총계)	0.744***	0.716***	0.705***	0.675***
	(0.015)	(0.006)	(0.046)	(0.016)
ln(매출액)	0.096***	0.094***	0.066**	0.067***
	(0.012)	(0.005)	(0.030)	(0.012)
상수항	-3.793***	-2.645***	-2.668***	0.093
	(0.274)	(0.487)	(0.872)	(1.044)
연도더미	o	o	o	o
대분류 산업더미	x	o	x	o
기업규모더미	x	o	x	o
상장더미	x	o	x	o
관측치수	212,912	212,912	32,369	32,369
기업수	22,436	22,436	3,482	3,482

주: 1. ( )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 비교집단을 입주기업과 동일한 산업군으로 축소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연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전 산업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 비고정효과 분석에서 입주에 따른 효과가 19.3%로 연구비지출의 증가의 규모 차이가 전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Ⅴ-11>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연구비지출에 미친 영향 추정
(비교집단: 입주기업 동일 산업·지역)

	동일 산업 한정		동일 산업 및 지역 한정	
	(1)고정효과모형	(2)확률효과모형	(3)고정효과모형	(4)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0.122*	0.223***	0.193**	0.337***
	(0.072)	(0.058)	(0.097)	(0.079)
부채비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ln(인건비)	0.221***	0.244***	0.169***	0.171***
	(0.024)	(0.012)	(0.065)	(0.035)
ln(자산총계)	0.185***	0.158***	0.122*	0.098**
	(0.026)	(0.014)	(0.070)	(0.038)
ln(매출액)	0.341***	0.277***	0.384***	0.313***
	(0.022)	(0.012)	(0.056)	(0.032)
상수항	1.588***	2.599***	3.147**	6.058***
	(0.524)	(0.696)	(1.402)	(1.449)
연도더미	o	o	o	o
대분류 산업더미	x	o	x	o
기업규모더미	x	o	x	o
상장더미	x	o	x	o
관측치수	67,290	67,290	9,374	9,374
기업수	9,942	9,942	1,367	1,367

주: 1. ( )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 비교집단을 입주기업과 동일한 산업군으로 축소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전 산업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 비교집단을 입주기업과 동일한 산업과 지역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입주기업 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하우스만 검정결과 확률효과모형을 기각하지 못하여 확률효과모형 추정결과를 준용하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전산업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추정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Ⅴ-12> 연구개발특구 입주가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비교집단: 입주기업 동일 산업·지역)

	동일 산업 한정		동일 산업 및 지역 한정	
	(1)고정효과모형	(2)확률효과모형	(3)고정효과모형	(4)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0.050**	0.056***	0.062	0.064***
	(0.024)	(0.015)	(0.039)	(0.023)
부채비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ln(인건비)	0.284***	0.338***	0.290***	0.343***
	(0.007)	(0.002)	(0.018)	(0.006)
ln(자산총계)	0.188***	0.156***	0.187***	0.161***
	(0.007)	(0.003)	(0.018)	(0.007)
ln(매출액)	0.170***	0.171***	0.139***	0.138***
	(0.006)	(0.002)	(0.013)	(0.005)
상수항	-10.348***	-8.891***	-9.786***	-7.681***
	(0.137)	(0.214)	(0.372)	(0.412)
연도더미	o	o	o	o
대분류 산업더미	x	o	x	o
기업규모더미	x	o	x	o
상장더미	x	o	x	o
관측치수	179,546	179,546	27,815	27,815
기업수	22,521	22,521	3,554	3,554

주: 1. ( )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2.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의 투자효과 분석

가.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 실적

□ 국세청에서 발표하는『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자료를 사용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 실적을 정리하면 <표 Ⅴ-13>과 같음

○ 2007년에 1개 기업이 감면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21개, 2009년 42개로 감면기업 수가 증가하였음

○ 2010년에 55개, 2011년에 54개로 감면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후 빠른 속도로 감면기업 수가 축소되어 2015년에는 21개가 되었음

○ 2016년에는 26개 기업이 감면을 받아서 2015년보다 감면기업 수가 많음

<표 Ⅴ-13>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신고현황(조특법 제12조의2)

(단위: 개, 백만원)

연도	구분	중소기업		일반법인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2007	대덕연구개발특구	1	28		
2008	대덕연구개발특구	21	10,383		
2009	대덕연구개발특구	42	27,721		
2010	대덕연구개발특구	55	22,275		
2011	대덕연구개발특구	54	26,114		
2012	대덕연구개발특구	44	15,723	u	4,794
2013	대덕연구개발특구	31	3,772	u	8,021
2014	대덕연구개발특구	22	6,215	1	809
2015	연구개발특구	21	4,042		
2016	연구개발특구	26	3,334		
	합계	317	119,607		13,62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2008-2017), 표 8-3-3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 현황

□ 감면금액은 2009년에 2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23억원, 261억원이었음

○ 2012년의 감면액은 157억원으로 전년도의 60% 수준이었으며, 이후에도 감면액이 계속 축소되어 2016년에는 33억원이 되었음

○ 2016년에는 감면기업이 26개로 2015년의 21개보다 많았으나 감면액은 40억원에서 33억원으로 축소되었음

□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으로 구분해 보면, 감면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임

○ 2014년에 일반기업으로서 감면을 받은 기업이 1개이며, 2012년과 2013년에는 감면기업의 숫자를 밝히지 않고 u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해당되는 기업이 소수임을 의미함

○ 감면금액으로 보면, 총감면액의 90% 정도가 중소기업 감면이며, 10% 정도가 일반기업 감면임

나. 투자효과 분석 자료 및 분석방법

□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의 투자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2007~2016년에 감면을 받은 기업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제공받았음

○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제공받은 감면기업 자료를 종합하여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감면기업 수 및 감면금액과 비교하였는데, 두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Ⅴ-14>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분석자료 비교

(단위: 개, 백만원)

연도	구분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제공 자료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2007	대덕연구개발특구	1	28		
2008	대덕연구개발특구	21	10,383	21	10,720
2009	대덕연구개발특구	42	27,721	43	27,781
2010	대덕연구개발특구	55	22,275	53	21,910
2011	대덕연구개발특구	54	26,114	54	25,844
2012	대덕연구개발특구	44	20,517	48	20,520
2013	대덕연구개발특구	31+u	11,793	36	12,122
2014	대덕연구개발특구	23	7,024	23	7,324
2015	연구개발특구	21	4,042	21	4,042
2016	연구개발특구	26	3,334	26	3,334
2017	연구개발특구			45	3,878
	합계(2008~2016)	317+u	133,203	325	133,59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2008-2017), 표 8-3-3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 현황
국세청 제공자료

□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공제감면(갑)표의 감면세액과 세액감면신청서(2014년 12월 귀속부터 추출가능) 혹은 대체자료임

○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 중 폐업한 기업이 34개 있는데, 이 기업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2014년 이전에는 일부 기업의 과세기간이 3월, 6월의 과세기간을 적용하였는데, 비교집단 자료인 KISVALUE 자료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3월과 6월인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국세청자료에서 업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건설업(기업 수 2), 서비스(사업관련)업(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 출판, 영상, 방송통신(1), 제조업(22) 등이었음

- 첨단기술기업의 대표 해당 업종인 생명공학, 정보통신, 나노산업 외에도 일부 업종이 감면을 받음

□ 결과적으로 분석에 적용된 국세청자료는 153개 기업 1,299개 관측치로 이를 기존의 KISVALUE 자료에 추가(append)하여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의 효과를 추정하였음

○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의 사업자번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KISVALUE와 결합한 분석을 시도할 수 없었음

○ 따라서 추가(append)된 기업이 비교집단에도 포함되어, 이로 인한 추정결과의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의 효과가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전체 비교집단에 비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의 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편의(bias)의 크기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재무자료의 경우, 자료의 제약으로 자산총계, 부채총계, 유형자산만을 추정에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만을 시도할 수 있었고, 매출액, 연구개발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시도할 수 없었음

○ 통제변수에 기업규모더미, 상장더미, 산업더미,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음

□ 본 연구에서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는 유형자산은 재무제표상 자산총계에 포함되는데, 총자산을 설명변수로 사용함에 따라 내생성의 염려가 존재하므로 설명변수의 자산총계는 유형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였음

○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산총계 변수를 모형에서 제외하고 추정하여도 위 분석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부채총계 변수까지 제외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음

다. 분석결과

□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을 받는 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15.5% 투자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Ⅴ-15> 참조)

○ 그러나 확률효과 분석결과는 세액감면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고정효과모형 추정의 한계점으로는 단 한 번만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은 식별과정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국세청 자료의 한계로 인해 기업의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는 설명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누락변수 편의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기업 가운데 투자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결과적으로 세액감면을 받게 되는 역의 인과관계가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음

□ 검증기업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면서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과 동일 산업에 속한 기업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추정을 시도한 결과 역시 KISVALUE 자료상의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와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고정효과 모형의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 기업 더미 추정계수는 0.133이며 통계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감면 여부와 투자변수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Ⅴ-15>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추정 - 전산업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더미	0.155**	0.073
	(0.062)	(0.060)
ln(부채총계)	0.872***	0.889***
	(0.003)	(0.003)
ln(자산총계)	-0.272***	-0.298***
	(0.004)	(0.003)
상수항	7.412***	9.875***
	(0.226)	(0.491)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연도더미	o	o
대분류 산업더미	x	o
기업규모더미	x	o
상장더미	x	o
관측치수	244,000	244,000
기업수	25,308	25,308

주: 1. ( )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표 Ⅴ-16>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추정
(비교집단: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세액감면 기업과 동일산업)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 더미	0.133***	0.024
	(0.051)	(0.051)
ln(부채총계)	0.546***	0.690***
	(0.030)	(0.027)
ln(자산총계)	0.190***	0.217***
	(0.037)	(0.031)
상수항	4.659***	omit
	(0.780)	
연도더미	o	o
대분류 산업더미	x	o
기업규모더미	x	o
상장더미	x	o
관측치수	2,941	2,941
기업수	474	474

주: 1. ( )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 앞서 언급한 고정효과 모형의 한계를 고려할 때,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결과를 연구개발 세액감면 제도의 온전한 인과효과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분석결과를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이 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의 관측되는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재무변수를 추정식에 포함시키고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의 사업자번호를 이용하여 하나의 기업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모두 속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라.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의 경제성 분석결과 요약

□ 앞의 제1절과 본 절(제2절)에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입주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조세감면에 따른 투자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음

□ 연구개발특구 입주의 효과를 총산업 기준, 입주기업 산업군에 한정한 기준, 입주지역에 한정한 기준으로 비교집단을 축소해 나가며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총산업 기준 투자효과, 고용효과, 연구비지출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매출액의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당장의 성과를 내기보다는 향후 미래의 성과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입주기업 산업군에 한정하여 특구에 입주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를 분석한 경우에는 모든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계수값의 차이만 있을 뿐 추정계수의 부호는 같았음

- 이는, 제조업과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입주기업 산업 현황과 국내 전체 산업군의 산업 현황의 산업편중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한다면 납득가능한 결과임

○ 연구개발특구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전체 기업으로 할 경우 지역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광역시의 기업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특구에 입주한 기업과 입주하지 않은 기업의 차이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음

□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제도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본 결과 고정효과모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음

□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서 감면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0.4~1.0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액감면이 기업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도록 유인하는 강력한 유인이 되는지는 의문임

○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을 받는 기업의 수가 연도별로 21~54개에 불과하여 전체 입주기업(5,018개)의 0.4~1.07%를 차지함

□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연구개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개선된 기업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집적효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임

○ 다시 말하면, 특구 입주에 따른 효과가 비교적 큰 편임

- 즉, 조세감면 외에 연구개발특구 네트워크 및 인프라 등의 영향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특구에 입주하는 현 상황에서 연구개발특구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해석임

○ 조세감면은 소수의 기업만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실제로 연구개발특구 전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조세감면제도의 유지보다는 기업의 연구, 투자, 고용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제도 자체를 보완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연구개발특구 발전에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세감면 효과 분석

가. 단지 입주기업 및 감면기업의 특성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했던 기록이 있는 기업들(현재 퇴거기업 포함) 중 KISLINE과 KISVALUE 정보 내에 자료가 존재하는 기업들의 수는 총 115개이며, 업종별로 보면 IT, BT, ET 순으로 분포함

○ 이 중 「조특법」 제121의8의 지원업종 대상이 속한 업종은 IT, BT, ET, 그리고 산업디자인으로 전체 115개 기업 중 93개 기업이 「조특법」 지원 대상 업종에 속함

<표 Ⅴ-1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표본 수

(단위: 개)

업종	표본기업 수	감면기업	비감면기업
IT	51	10	41
BT	32	2	30
ET	8	1	7
제조업	6		6
도매업	2		2
부동산업	2		2
산업디자인	2	1	1
건설업	1		1
기타	11		11
합계	115	14	101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식별된 115개 기업 중 한 번이라도 「조특법」 제121의8을 통해 감면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은 14개 기업임

○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한 번이라도 이 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실적인 있는 기업들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을 공시자료에서 식별한 115개 기업들과 매칭하여 구분하였음

○ 국세청 자료상 한 번이라도 감면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은 총 20개이나 이 중 14개 기업만 공시자료가 있음

○ 이 14개 기업의 업종을 보면, IT 업종이 10개로 가장 많으며, BT, ET, 산업디자인이 각각 2개, 1개, 1개임

○ 비감면기업 101개의 업종별 분포 또한 IT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41개로 가장 많고, BT, ET, 제조업이 각각 30개, 7개, 6개임

□ 연도별 입주기업 수를 살펴보면 2010년에 9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2014년에는 29개 기업이 입주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8개와 17개 기업들이 입주하였으며 2017년에는 1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다소 축소되었음

○ 이 분포는 앞서 현황에서 살펴본 공시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을 포함한 전체 입주기업의 연도별 분포와 유사함

<표 Ⅴ-1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표본의 연도별 입주기업 수

(단위: 개)

입주연도	기업수
2010	9
2011	5
2012	12
2013	15
2014	29
2015	18
2016	17
2017	1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기업들을 한 번이라도 감면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로 구분한 뒤 재무정보들의 연평균 값을 비교해보면 감면받지 않은 기업들이 감면받은 기업들에 비해 거의 모든 항목들에서 큰 수치를 보여줌

○ 비감면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784억원으로 감면기업의 344억원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임

○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부채총계, 유동자산 등, 인건비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비감면기업의 평균치가 감면기업에 비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Ⅴ-1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명)

	비감면기업	감면기업
매출액	178,355	34,412
영업이익	10,700	6,300
당기순이익	7,987	6,090
자산총계	210,473	127,499
부채총계	83,868	31,557
유동자산	65,045	27,986
연구개발비	2,206	1,263
근로자수	223	175
인건비	4,214	8,434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155개 기업 중 32개의 기업이 입주 후 퇴거하였으며, 이 중 감면실적이 있는 기업은 IT업종에서 2개 있음(<표 Ⅴ-20> 참조)

○ 전체적으로 IT 업종에서 12개 기업이 퇴거하여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BT, ET 업종에서 각각 6개, 3개, 3개 기업이 퇴거함

○ 입주한 뒤 퇴거한 기업들의 재무정보를 퇴거하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 보면, 퇴거한 기업들이 더 큰 기업들임을 알 수 있음(<표 Ⅴ-21> 참조)

○ 퇴거기업들이 주로 지점 혹은 공장이 이전한 기업들이므로 기업별 공시자료에 본사분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표 Ⅴ-2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표본 중 퇴거기업

(단위: 개)

업종	감면기업 수	비감면기업 수	합계
IT	2	10	12
제조업	0	6	6
BT	0	3	3
ET	0	3	3
도매업	0	2	2
부동산업	0	2	2
건설업	0	1	1
기타	0	3	3
합계	2	30	32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Ⅴ-2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퇴거기업과 비퇴거기업의 재무정보 비교

(단위: 백만원, 명)

	비퇴거기업	퇴거기업
매출액	12,146	541,660
영업이익	1,377	33,000
당기순이익	1,221	24,169
자산총계	26,871	636,593
부채총계	7,923	252,712
유동자산	7,517	194,041
연구개발비	575	7,226
근로자 수	86	469
인건비	1,948	11,582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나. 감면기업의 행태분석

□ 국세청에서 제공한 감면기업 자료와 KISVALUE의 기업 자료를 결합하여 감면기업과 비감면 기업의 행태를 비교해 보았음

○ 2006~2016년의 불균등패널(unbalanced panel) 자료를 형성하였음

○ 1회 이상 감면받은 기업들(처치군)을 그렇지 않은 기업들(대조군)과 비교하여 행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감면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수가 매우 적으므로 본 분석의 결과를 조세감면의 효과라고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함

○ 대조군을 전 지역 기업과 제주지역 기업의 두 가지로 설정하였음

○ 처치군과 대조군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평균값은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나 대조군의 표준편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모형을 확률효과 분석방법으로 추정하였음

○ 종속변수: 과세표준, 공제감면 총액, 매출액, 유형자산, 연구개발비

○ 설명변수: 감면기업 여부 가변수,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업태 가변수, 기업규모 가변수

○ 이 분석에서 처치(treatment)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은 분석하지 않음

<표 Ⅴ-2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세감면 효과분석 자료의 기초통계량

(단위: 천원)

변수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고치
감면기업					
자산총계	99	174,987,684	651,123,116	81,986	4,829,296,990
부채총계	99	57,725,782	193,380,822	26,769	1,454,139,081
과세표준	99	8,093,936	26,858,899	0	139,910,502
공제감면총액	99	195,975	715,550	0	4,342,836
매출액	99	63,049,248	173,752,391	0	862,085,191
유형자산	99	10,884,411	38,805,384	0	210,393,423
연구개발비	53	1,025,250	4,427,903	0	31,714,078

변수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고치
비감면기업					
자산총계	26,164	112,095,094	2,962,810,554	0	173,472,587,112
부채총계	26,164	73,559,133	2,319,967,780	-66,376	142,287,591,257
과세표준	26,164	3,215,895	63,581,917	0	3,764,838,007
공제감면총액	26,164	175,980	3,487,771	0	305,751,363
매출액	26,164	47,287,107	744,417,994	-46,244	37,442,516,727
유형자산	26,164	32,691,455	803,331,494	-2,263	50,640,795,776
연구개발비	10,609	969,515.400	8,168,442	0	446,069,673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추정결과를 보면, 모든 지역의 기업들을 대조군으로 보는 분석에서 감면기업의 과세표준과 공제감면 총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출액과 유형고정자산, 연구개발비 지출은 감면기업과 비감면기업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제감면 총액의 추정계수가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이 제도를 통해 조세감면을 받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많은 공제감면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함

□ 대조군을 제주 지역으로 좁혀서 분석한 경우에는, 매출액, 유형고정자산,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과세표준과 공제감면 총액도 감면기업과 비감면 기업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Ⅴ-2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감면기업분석 - RE 추정결과 (전지역)

	종속변수				
	과세표준	공제감면총액	매출액	유형자산	연구개발비
	(1)	(2)	(3)	(4)	(5)
감면기업	1.688**	2.241***	0.535	0.177	1.382
	(0.854)	(0.737)	(0.390)	(0.414)	(1.029)
매출액	0.631***	0.368***		0.074***	0.068*
	(0.016)	(0.014)		(0.006)	(0.037)
자산총계	1.152***	0.922***	0.601***	0.924***	1.015***
	(0.039)	(0.033)	(0.015)	(0.015)	(0.075)

	종속변수				
	과세표준	공제감면총액	매출액	유형자산	연구개발비
	(1)	(2)	(3)	(4)	(5)
부채총계	-0.609***	-0.327***	0.411***	0.328***	-0.121*
	(0.032)	(0.026)	(0.012)	(0.011)	(0.062)
상수항	-9.506***	-13.045***	-0.738	-6.572***	-6.566***
	(1.792)	(1.517)	(0.729)	(0.707)	(2.002)
업태 더미	Yes	Yes	Yes	Yes	Yes
기업규모 더미	Yes	Yes	Yes	Yes	Yes
표본수	26,254	26,254	26,254	26,252	10,660
R^2	0.146	0.136	0.288	0.419	0.068

주: *p<0.1; **p<0.05; ***p<0.01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Ⅴ-2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감면기업분석 - RE 추정결과 (제주지역)

	종속변수				
	과세표준	공제감면총액	매출액	유형자산	연구개발비
	(1)	(2)	(3)	(4)	(5)
감면기업	1.032	1.306	0.521	-0.223	0.246
	(1.083)	(0.903)	(0.619)	(0.600)	(1.393)
매출액	0.605***	0.430***		0.046	0.902**
	(0.086)	(0.072)		(0.035)	(0.416)
자산총계	1.693***	1.357***	0.471***	0.728***	-0.905
	(0.303)	(0.253)	(0.175)	(0.134)	(0.680)
부채총계	-0.918***	-0.657***	0.324**	0.518***	0.475
	(0.244)	(0.203)	(0.142)	(0.100)	(0.465)
상수항	-12.249***	-12.888***	-3.055*	-8.755***	8.611
	(3.025)	(2.523)	(1.744)	(1.424)	(7.010)
업태 더미	Yes	Yes	Yes	Yes	Yes
기업규모 더미	Yes	Yes	Yes	Yes	Yes
표본수	415	415	415	415	138
R^2	0.301	0.329	0.335	0.537	0.213

주: *p<0.1; **p<0.05; ***p<0.01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다. 분석결과 요약

□ 이상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특성과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행태에 대해 분석하였음

□ 입주기업 목록을 활용한 재무정보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에도 다수의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음
- ○ 입주 후 퇴거한 기업들의 업종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제조업 업종이 입주 대비 퇴거비중이 높은 편임
- ○ 감면실적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 자산, 부채, 영업이익 등의 값들이 평균적으로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확률효과 모형 회귀분석 결과 감면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대조군에 비해 평균적으로 과세표준과 공제감면총액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 하지만 매출, 투자(유형자산), 연구개발비 지출에서는 감면기업과 대조군 기업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

4.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세감면 효과 분석

가. 단지 입주기업 및 감면기업의 특성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1회 이상 지정된 기업들 49개에 대한 공시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음
- ○ 지정기업들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휴양업과 호텔업이 각각 25개, 14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 그 밖에 교육업, 연수원, 의료, 문화, 음식업 업종에 적은 수의 기업들이 있음
- ○ 49개 중 1회 이상 조세감면 실적이 있는 기업은 15개이며, 휴양업, 호텔업, 교육업에서 각각 9개, 5개, 1개 기업이 감면받은 적이 있음

<표 Ⅴ-25>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업 분석 표본 구성

(단위: 개)

업종	지정기업 수	감면기업 수
휴양업	25	9
호텔업	14	5
교육업	3	1
연수원	3	
의료	2	
문화	1	
음식업	1	
	49	15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연도별 지정기업 수를 살펴보면 2012년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2013년과 2014년이 각각 8개로 그다음을 이었음

○ 2005년 1개 기업이 지정된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최근에는 지정기업 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임

○ 지정해제된 기업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에 각각 4개, 1개, 4개 기업들이 지정 해제되었음

<표 Ⅴ-26> 제주투자진흥지구 분석 표본의 연도별 지정 현황

(단위: 개)

지정연도	기업 수	지정해제 기업수
2005	1	
2007	3	
2008	2	
2009	6	
2010	2	
2011	3	
2012	10	
2013	8	
2014	8	
2015	2	4
2016	3	1
2017	1	4

자료: 저자 작성

□ 감면실적이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재무정보를 비교해 보면 모든 항목들에서 큰 차이로 감면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정해제된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주요 재무 항목들을 비교해보면 지정해제된 기업들이 모든 항목들에서 작은 수준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공시자료에서 본사와 제주진흥지구에 입주한 지점의 재무정보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제주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들 간의 비교로 해석할 수는 없음

<표 Ⅳ-27> 제주투지진흥지구 분석표본의 재무정보 비교

(단위: 백만원, 명)

	감면기업	비감면기업	지정해제기업	관측치
매출액	164,072	16,448	837	46
영업이익	28,686	3,543	-833	47
당기순이익	12,333	2,484	-1,943	47
자산총계	8,225,041	47,675	29,181	47
부채총계	7,628,972	34,835	26,749	47
유동자산	176,144	16,353	3,654	45
법인세비용	4,343	375	1	47
근로자 수	626	48	17	42
인건비	56,254	1,404	430	47

자료: 저자 작성

나. 감면기업의 행태분석

□ 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들을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비교하여 경영지표의 차이를 살펴보았음

○ 국세청에서 제공한 감면기업군과 대조군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대조군은 모든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제주지역 기업들을 따로 대조군으로 설정한 경우의 두 가지 분석을 병행하였음

○ 분석 자료는 2010~2016년까지의 불균등패널(unbalanced panel)임

□ 처치군과 대조군의 기초통계량을 비교해보면 감면기업들이 자산, 부채,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에서 규모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공제감면총액 항목에서만 감면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더 큰 값을 기록하고 있어 본 제도를 통한 감면수준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

<표 Ⅳ-28> 기초통계량(감면 기업)

(단위: 천원)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고치
감면기업					
자산총계	114	43,761,025	56,199,875	265,129	277,989,889
부채총계	114	31,276,412	46,463,488	9,350	251,400,634
과세표준	114	2,196,683	7,262,455	0	51,686,881
공제감면총액	114	300,684	1,381,703	0	10,951,114
매출액	114	12,923,490	28,425,180	0	178,084,633
유형자산	114	29,833,867	37,329,678	0	118,448,649
연구개발비	5	283,275	154,627.600	87,306	481,381
비감면기업					
자산총계	26,149	112,631,117	2,963,925,055	0	173,472,587,112
부채총계	26,149	73,683,525	2,320,659,827	-66,376	142,287,591,257
과세표준	26,149	3,238,807	63,620,281	0	3,764,838,007
공제감면총액	26,149	175,512	3,487,854	0	305,751,363
매출액	26,149	47,496,595	744,702,258	-46,244	37,442,516,727
유형자산	26,149	32,621,351	803,562,739	-2,263	50,640,795,776
연구개발비	10,657	970,114	8,155,879	0	446,069,673

자료: 저자 작성

□ 앞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공제감면 총액, 매출액, 유형자산, 연구개발비의 차이를 설명하는 설명함수를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함

○ 추정결과를 보면, 모든 지역의 기업들을 대조군으로 보는 분석에서 매출액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 즉, 과세표준과 공제감면 총액, 유형고정자산, 연구개발비 지출은 감면기업과 비감면기업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은 감면기업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매출액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서 감면기업 여부와 종속변수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매출액은 감면기업이 비감면 기업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Ⅴ-29>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기업분석 - RE 추정결과(전지역)

	종속변수				
	과세표준	공제감면총액	매출액	유형자산	연구개발비
	(1)	(2)	(3)	(4)	(5)
감면기업	-0.391	0.800	-3.816***	0.383	1.297
	(0.870)	(0.751)	(0.395)	(0.422)	(3.519)
매출액	0.631***	0.370***		0.074***	0.069*
	(0.016)	(0.014)		(0.006)	(0.037)
자산총계	1.153***	0.920***	0.606***	0.924***	1.016***
	(0.039)	(0.033)	(0.015)	(0.015)	(0.075)
부채총계	-0.609***	-0.328***	0.411***	0.327***	-0.122*
	(0.032)	(0.026)	(0.012)	(0.011)	(0.062)
상수항	-9.506***	-13.047***	-0.727	-6.573***	-6.567***
	(1.792)	(1.517)	(0.727)	(0.707)	(2.002)
업태 더미	Yes	Yes	Yes	Yes	Yes
기업규모 더미	Yes	Yes	Yes	Yes	Yes
표본수	26,254	26,254	26,254	26,252	10,660
R^2	0.146	0.136	0.291	0.419	0.068

주: *p<0.1; **p<0.05; ***p<0.01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Ⅴ-30>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기업분석 - RE 추정결과(제주지역)

	종속변수				
	과세표준	공제감면총액	매출액	유형자산	연구개발비
	(1)	(2)	(3)	(4)	(5)
감면기업	-1.011	0.644	-4.876***	0.468	-0.605
	(1.474)	(1.240)	(0.774)	(0.747)	(4.168)
매출액	0.591***	0.446***		0.051	0.914**
	(0.090)	(0.075)		(0.036)	(0.413)
자산총계	1.701***	1.278***	0.625***	0.720***	-0.945
	(0.306)	(0.257)	(0.167)	(0.135)	(0.669)
부채총계	-0.912***	-0.636***	0.279**	0.516***	0.484
	(0.243)	(0.203)	(0.135)	(0.099)	(0.462)
상수항	-11.454***	-12.693***	-0.436	-9.026***	9.226
	(3.057)	(2.568)	(1.692)	(1.444)	(6.405)
업태 더미	Yes	Yes	Yes	Yes	Yes
기업규모 더미	Yes	Yes	Yes	Yes	Yes
표본수	415	415	415	415	138
R^2	0.302	0.326	0.396	0.537	0.215

주: *p<0.1; **p<0.05; ***p<0.01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다. 분석결과 요약

□ 이상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업들에 대한 재무정보 분석을 진행한 뒤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감면기업과 비감면기업의 행태 차이를 분석하였음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업들에 대한 재무정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지정기업들은 호텔업과 휴양업에 집중되어 있음

○ 기업 지정 추이는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5년 이후 총 9개의 지구가 지정이 해제됨

○ 감면실적이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재무정보를 비교해 보면 모든 항목들에서 큰 차이로 감면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그 외 기업들로 구성되는 대조군과 비교하는 분석을 진행하였음

○ 확률효과 모형 분석 결과 감면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대조군에 비해 평균적으로 매출이 낮은 것은 확인되었으나 투자에 대한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5. 기업도시 등 기타 특구의 조세감면 효과

□ 앞의 <표 Ⅲ-21>에서는 기업도시 조세지원 실적을 정리하였음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2007년 이후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여 조세지원을 받은 경우가 총 5건 이내일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내국기업 지원 1건, 2013년 내국기업 지원 2건 이내, 2015년 외국인투자 지원 2건 이내

○ 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원도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2011년 1건, 2013년 2건 이내

○ 내국기업에 적용되는 창업·신설 기업 지원은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2건 이내였는데, 2014년 3건, 2015년 5건, 2016년 8건으로 지원 건수가 확대됨

- 감면금액은 2012년과 2013년에는 10억원 미만이었는데, 2014년에 53억원으로 증가되었고, 2015년에도 57억원 감면됨
- 2016년에는 감면기업 수는 전년 5개에서 8개로 증가하였으나 감면액은 57억원에서 48억원으로 축소됨

□ 기업도시 외에 해양박람회 특구, 새만금사업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세청 통계자료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확인되는 감면실적이 없음

○ 개별 특구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한 결과 해양박람회 특구의 경우 해양박람회 특구의 여수씨월드가 2013~2016년에 조세감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감면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기업도시 등의 지정 및 입주 현황을 보면, 기업도시는 2005년과 2006년에 6개의 시범사업지구가 지정된 이후 2개 지구는 해제되고 4개의 사업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추가 지정사례는 없음

○ 4개의 시범사업 지구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충주기업도시로, 2018년 3월 현재 16개의 업체가 가동 중이고, 7개의 업체가 설계·건설 중이고, 산업용지 중 5곳은 미분양 상태임

○ 원주기업도시는 아직도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8년 3월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하였는데, 최근에 KTX 개통 등 교통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태안 기업도시는 2014년과 2016년에 골프장이 오픈하였으며, 관광숙박시설 골프빌리지가 2017년에 준공되었고, 첨단연구시설과 산업을 위한 부지조성 사업을 2020년까지 계속할 예정임

○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2012년에 F1 국제자동차 경기장을 건립하고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하였으나, 그 이후의 사업은 답보상태임

□ 여수 해앙박람회 특구는 2013년에 지정되었고,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어 2015년에 박람회 부지 및 시설 사후활용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

○ 나대지 상태의 부지는 매각하고, 시설은 2025년까지 장기임대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국립공원연구원의 해양연구센터가 입주하고, 상설 미술관이 개장하였으며, 청소년해양교육원이 2020년에 개관할 예정임

□ 새만금 사업지역은 199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법적 분쟁으로 개발이 지연되었으며, 2008년에 토지이용계획을 농지 100%에서 농지 30%, 산업용지 및 복합용이 70%로 수정하고 개발을 추진함

○ 2010년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었고, 용지조성계획은 2단계로 구분하여 2020년까지 1단계를 완성할 계획임

○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시행된 1단계에서 경협특구용지 등을 조성하였으며, 2단계는 2018~2022년, 3단계는 2023년 이후에 추진할 예정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2006년에 지정되었으며, 2009년에 투자진흥지구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였음

○ 2010년에 투자진흥지구 3개 권역을 설정하여 총 89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나 조세지원 대상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중심지의 경우 2009년에 부산이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되고 서울이 종합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으며, 부산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조세지원 대상이 됨

○ 부산의 금융중심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에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완공되었으며, 이 센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기업이 입주함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이 조세지원 대상인데,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 대상 기업들이 창업기업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들로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대구경북 첨단산업복합단지의 입주현황을 보면 전체 87개의 기관 중 32%(28개)는 아직 입주 준비중이며, 2015년부터 입주기업의 숫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2016년도 28개 기업, 2017년도 17개 기업수를 보이고 있음

○ 기업입주 현황을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과 2017년 증가한 반면 조세감면실적은 2015년 1,700만원, 2016년 1,300만원, 2017년 9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주예정중인 기업 또한 조세감면효과를 고려하여 입주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조세지원 외 혜택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대상인 의료연구개발기관 또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입주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 절에서 검토한 특구의 경우, 특구 입주, 창업 기업과 개발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실적이 저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특구 개발사업과 기업의 입주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구에 따라 2005~2013년에 특구가 지정되고 부지를 조성하여 기업이 입주하였으나, 아직 기업의 입주가 원활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며, 입주가 많이 진척된 경우에도 비교적 최근의 일임

○ 기업도시 제도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조세감면이 2012년에 시작하였고, 2014년 3개, 2015년 5개, 2016년 8개로 최근에 감면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다른 한편으로 특구가 조성되어 입주한 기업이 조세지원의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조세지원이 특구의 조성과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 본 절에서 검토한 특구는 기업도시, 여수 해앙박람회 특구, 새만금 사업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임

□ 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특구의 조성 및 기업의 입주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

○ 특구가 대체로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세감면이 특구 지정대상인 낙후지역의 입지적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

- 기업의 입지 결정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세는 기업의 입지 결정에 한계적인 역할을 할 뿐임

○ 대부분의 특구지원이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특구에서 창업을 하거나 특구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많지 않음

- 기존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보다 특구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조세지원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이전기업 중 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혜택이 특구 지원보다 더 큼

Ⅵ.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관련 국제기준

Ⅵ.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관련 국제기준

□ 2012년 12월 5일에 EU에서 조세정책 비협조 국가(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우리나라가 그 목록에 포함되었음

○ 지정내역을 보면, 우리나라에 유해조세지원제도(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가 있는데, 우리 정부가 유해성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

○ 우리나라의 유해조세지원제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2018년 1월에 이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그 약속에 따라 비협조적 국가 목록에서 제외되고, 관찰대상국가 목록(greylist)에 포함됨

○ 이 약속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유해성을 점검하고 유해하지 않은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심층평가 연구(안종석·최기호·이재호(2018))에서 EU와 OECD의 유해조세제도 판정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하고,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평가하였는데, 그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가 OECD와 EU의 유해조세지원제도 판정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요소는, 비거주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투명성 결여의 가능성임

□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혜택이 부여되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비거주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음

○ 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외국인(외국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외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임(외국인투자기업)[49]

4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 거주자의 개념을 전 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정의한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감면제도는 거주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50]

○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기업에 쌓이는 유보소득이 커지게 되므로, 종국적인 감면혜택은 배당이나 양도차익의 형태로 외국인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됨

○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은 법인세액에 외국인투자지분 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에 감면율을 곱하여 감면액을 결정함

- 이는 제도의 적용대상이 외국인투자자에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임

□ 뿐만 아니라 「조특법」상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투명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첫째, 감면요건을 갖추면 감면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면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세감면을 신청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감면 해당 여부를 결정함[51]

- 조세감면 기준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면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기준은 법령의 형태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설령 내부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음

○ 둘째, 특정지역 감면제도는 법인세 전액 감면의 기간에 따라 5년형 감면(3년간 전액 감면 후 2년간 50% 감면)과 7년형 감면(5년간 전액 감면 후 2년간 50% 감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7년형 감면의 경우 감면대상 사업에 관하여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감면요건 중 하나임[52]

- 그런데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내부기준이 있더라도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음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위원회가 행사하는 재량권은 조세감면제도의 운영상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로 제한될 것으

50)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5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8항
5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

로 판단되므로 유해하다고 볼 만큼 투명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운영 실태와 달리 법령만 놓고 보면 행정부가 조세감면 해당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투명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제도로 개편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과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국내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지원은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감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대상이 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중에는 특정 지역 즉, 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감면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국내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본고에서 검토하는 지역특구 조세감면과 같은 형태가 됨

○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국내기업 전체에 적용되는 조세감면제도도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감면제도도 있는데, 양자가 지원요건과 지원규모가 유사하여 두 제도를 통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특구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만 있는데, 그 적용대상을 국내기업 전체로 확대하면 국내기업 전체에 적용되는 새로운 특구를 만드는 것과 같음

○ 그러므로 특구 조세감면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때,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특구도 함께 검토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국내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세감면제도를 구상하여야 할 것임

Ⅶ. 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의 타당성 분석

Ⅶ. 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의 타당성 분석

1.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

가. 정부 개입의 근거

□ 외국의 지역특구 지원제도와 우리나라의 지역특구 조세지원 제도를 종합해 보면, 지역특구 지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낙후지역 또는 저성장지역의 개발 및 성장을 촉진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도시 등이 이에 해당됨

○ 미국의 Empowerment Zone, New Market Tax Credit, 영국의 지역성장기금지원,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Business Premisses Renovation Allowances, 일본의 지역활성화 종합특구, 프랑스의 농어촌개발지역 및 도시재상지역 투자지원, 농촌재개발지역 투자지원 등도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둘째, 특정 업종의 기업이 한 지역에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집적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고, 그 효과가 상당히 커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지원임

○ 일본의 국제전략종합특구가 이에 해당하는데, 아시아 지역의 사업 및 연구개발본부를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었음

○ 프랑스의 연구개발특구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근거로 설정한 특구가 상당히 많음

- 연구개발지역, 첨단산업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이 이러한 목적으로 설정된 특구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와 같이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구를 설정하고 조세 등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음

○ 일본의 국제전략특구로 설정된 아시아헤드쿼터특구도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도 이러한 특구에 속함

○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도 유사한 성격을 가짐

□ 넷째,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특구를 설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 앞서 언급한 일본의 국제전략특구도 다분히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이러한 성격을 가진 특구임

□ 마지막으로, 이상의 경제적 논리와는 상관없이 역사적, 문화적 이유로 특구를 설정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하지 않음

나. 정부 개입 근거의 타당성

1) 특정 지역, 업종 지원과 경제성장

□ [그림 Ⅶ-1]에서는 국가 내 주어진 자본을 지역간(또는 업종간) 배분하는 경우의 투자 성과와 배분을 설명함

○ 국내에 A와 B 두 지역(또는 업종)이 있으며, 각 지역에 투자되는 자본의 합계인 국내 총자본(O_A와 O_B사이의 거리)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함

○ 우하향하는 선 R_A는 A지역의 투자가 0(O_A)으로부터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세전수익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줌

- 투자된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수익률이 체감한다고 가정하였음

○ 좌하향하는 선 R_B는 B지역의 투자가 0(O_B)으로부터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세전수익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줌

□ 자본수익에 대한 세율이 t_0일 때, 두 지역의 세후수익률 곡선(각각 $R_A(1-t_0)$, $R_B(1-t_0)$)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되며, 이때 각 지역에 투자되는 자본의 양은 각각 O_AK_0, O_BK_0가 됨

○ 자본의 세전수익률은 두 지역에서 모두 r_0가 되며, 세후수익률은 $r_0(1-t_0)$가 됨

- 세후수익과 세전수익의 격차(T_A와 T_B의 합)가 세수입이 되고, 그림에서 P_A와 P_B로 표시한 부분은 각각 A지역과 B지역 기업의 세후수익이 됨

[그림 Ⅶ-1] 두 지역간의 투자재원 배분 - 균등한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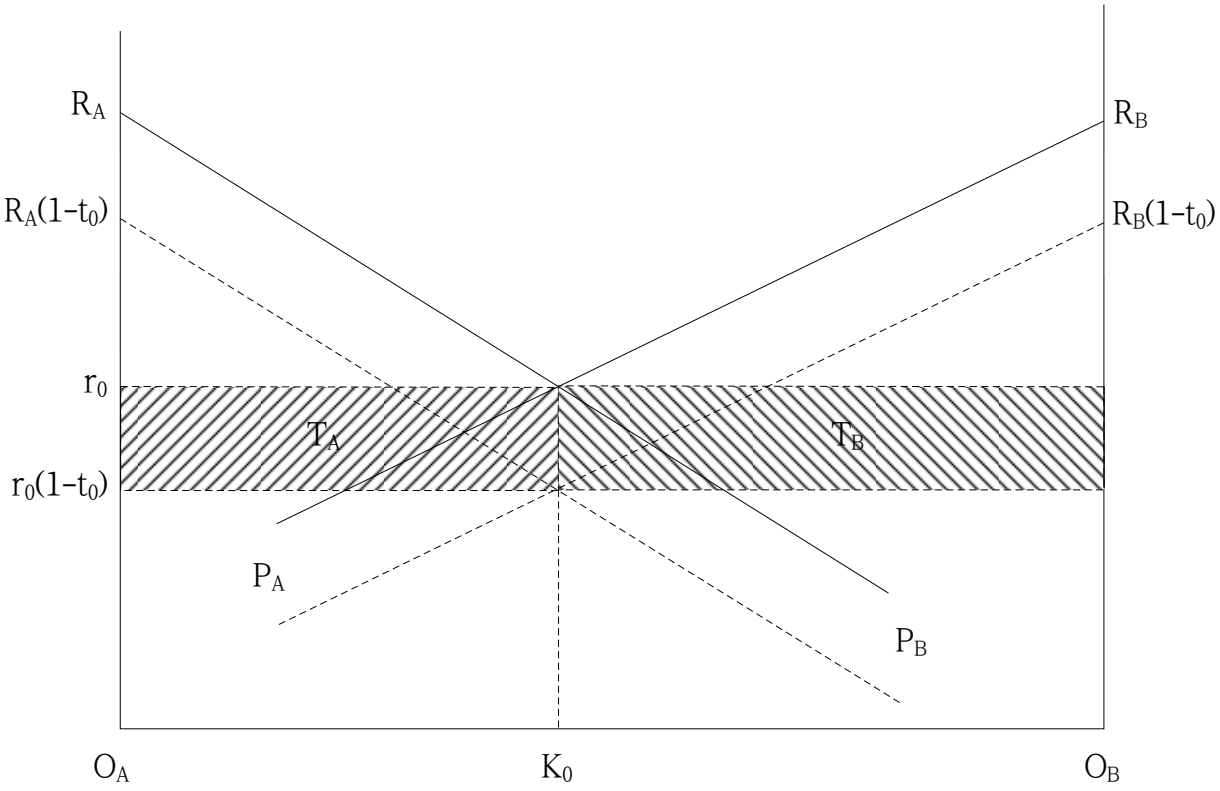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정부가 B지역 기업에만 특혜를 주어 세금을 면제한다면, 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A지역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인상시켜야 할 것임

○ [그림 Ⅶ-2]에서 인상된 세율(t_1)이 적용되었을 때, A지역 기업의 세후수익률 곡선은 $R_A(1-t_1)$이 될 것이며, 세금 감면을 받는 B지역 기업의 세후수익률 곡선은 세전수익률 곡선(R_B)와 같게 됨

○ 이 경우 A지역과 B지역의 세후수익률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됨

- A지역의 투자는 O_AK_0에서 O_AK_1으로 축소됨
- B지역의 투자는 O_BK_0에서 O_BK_1으로 증가함

[그림 Ⅶ-2] 두 지역간의 투자재원 배분 - 특정 지역 조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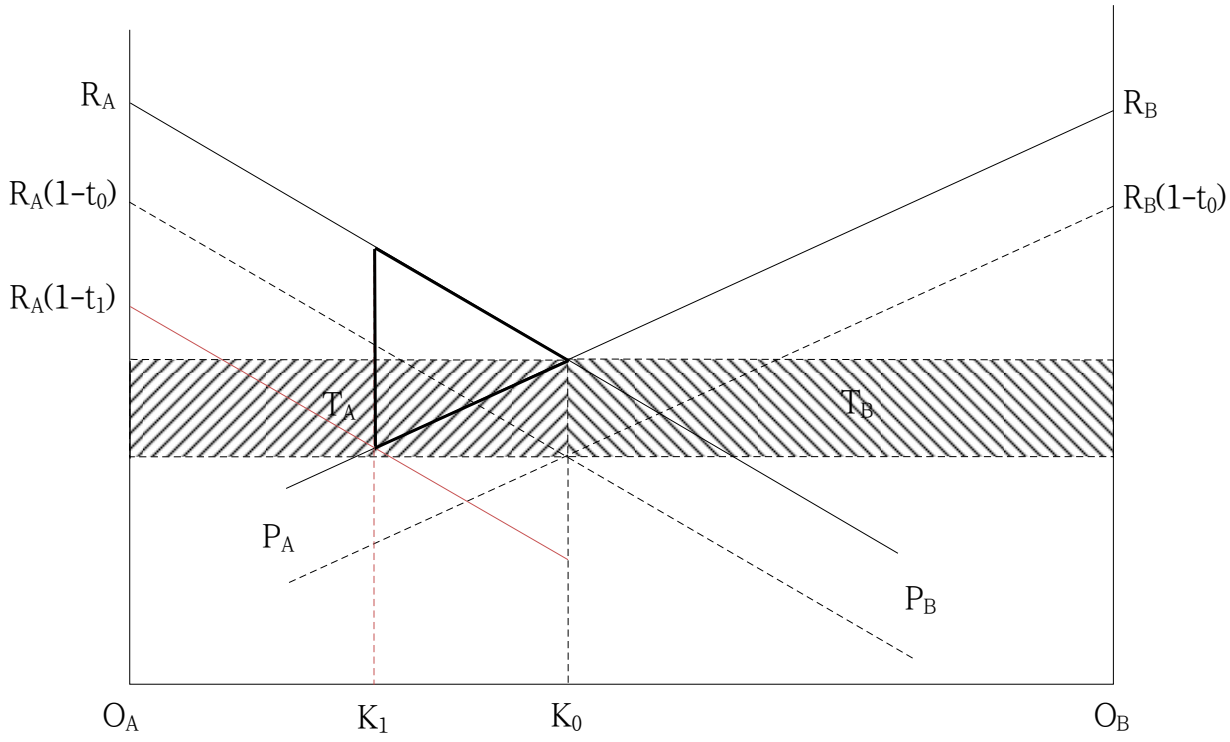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정부가 B지역에만 특혜를 제공함에 따라 K_0K_1만큼의 투자가 생산성이 높은 A지역에서 생산성이 낮은 B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경제에 손실이 발생함

○ [그림 Ⅶ-2]에서에서 진한 선으로 표시한 삼각형의 면적이 국가경제의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됨

□ 정리하면, 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경우 좀 더 효율적인 부문에서 비효율적인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남

2) 특정 지역 지원의 타당성

□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이 다른 지역의 투자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은 그 지원으로 인한 이익이 명확하고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큰 경우로 국한하여야 함

○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좁게 설정하여야 함

□ 앞에서 우리나라의 지역 특구 조세지원제도와 다른 국가의 특정 지역 조세지원제도를 종합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적의 지역 특구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운영된다고 정리하였음

○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낙후지역 또는 저성장지역의 개발 및 성장 촉진

○ 특정 업종의 기업을 한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시너지효과 극대화

○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특구를 설정하여 지원

□ 지역특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 중 타당성이 가장 큰 것은 낙후지역 개발 지원임

○ 낙후된 지역, 저성장 지역을 지원하여 국가 전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임

○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조세지원이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 촉진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렇더라도 조세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보다는 재정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구축 등 다른 지원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지원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특정 산업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킴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너지효과도 지역특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집중이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판단에 맡겨 두었을 때는 집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정부가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에 있어 몇 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음

○ 첫째, 시너지효과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과도하게 지원하는 경우에 국가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입증된 부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임

○ 둘째,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상당한 수의 기업이 집중된 이후에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집중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지원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구를 설정한 이후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중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거나, 지역 설정이 잘못된 경우 등일 것으로 판단됨
-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도 지원을 계속한다면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구 지원의 타당성은 규제완화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특정 지역이 특별히 낙후되어 있으므로 그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는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정부가 특정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완화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설정하여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정부가 특별히 조세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셋째, 과다한 규제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 특정 지역을 설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그 지역에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고자 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규제완화 특구를 설정하고, 정부가 조세 및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함

□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특구를 지정하고 조세 및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1980년대 이후 기업활동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었으며, 특히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업활동에 있어 국경을 무색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음

- 국경을 넘어서는 투자나 상품 판매는 일반적인 사업활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투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그러므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특구를 설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는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정책대상의 적절성

가. 지원대상 특구의 적절성

1)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특구 지원

□ 앞서 검토한 정부 지원의 근거와 타당성에 비춰볼 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제121조의22에 규정된 각종 특구 중, 명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정하여 특구를 설정하고, 그 지역에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제121조의17에 규정된 기업도시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임

- 그러므로 이들 지역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같은 조에 규정된 새만금사업지역도 명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낙후지역 개발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인해 발생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설정한 특구로, 비교적 낙후한 서해안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도 지역의 특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되어 각각 조세지원이 적용됨

○ 제주도 지역 특구 조세지원제도는 2002년에 도입된 이후 일몰이 계속 연장되어, 현재 2018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임

○ 제주도의 특구는 지역개발, 특정 산업의 집중에 따른 시너지효과, 외국인투자유치의 성격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주도의 세 가지 특구가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모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제주도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개발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2)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특구 지원

□ 기업의 집적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노린 특구로는 연구개발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음

□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2006년에 대덕연구단지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1년에 광주 및 대구의 특구가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2012년에 부산의 특구가 포함되었음

○ 대덕, 광주, 대구, 부산이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연구개발특구 지원제도는 지역개발보다는 연구개발업 및 첨단산업부문의 기업 집중을 통한 시너지효과 확대를 노린 것으로 판단됨

□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이미 상당수의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나타남

○ 입주기업 총 3,464개(중복 포함): 광주(357), 대구(156), 대덕(2,033), 부산(664), 전북(254)

○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 수를 보면 2008~2016년의 기간에 매년 21~55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며, 2011년 55개에서 2016년 26개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기업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목적의 특구는 처음에 조세지원을 통해서 특구의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집중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연구개발특구는 더 이상 지원대상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지원이 오래 지속되었고, 그 지원이 효과적이라면 과도한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이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투자를 더 많이 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서 감면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0.4~1.0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액감면이 기업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도록 유인하는 강력한 유인이 되는지는 의문임

□ 조세지원보다는 특구 입주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평가됨

○ 즉, 조세감면보다는 연구개발특구 네트워크 및 인프라 등의 장점이 있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특구에 입주하는 것으로 판단됨

○ 조세감면은 소수의 기업만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실제로 연구개발특구 전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조세감면제도의 유지보다는 기업의 연구, 투자, 고용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제도 자체를 보완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연구개발특구 발전에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은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금융중심지 조세지원은 2010년에 도입되었는데, 지역특구 조세지원 실적이 없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는 2017년 말까지 3개의 권역에 85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하였음

○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우에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KSF 선박금융과 한국선박금융의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점 등 업체가 입주하였음

○ 이와 같은 업체들의 입주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원 실적이 없는 것은, 이 지역 입주·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소기의 목적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시사함

○ 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와 부산 금융중심지가 지원대상 기업을 이들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함을 의미함

□ 여수 해양박람회 특구의 경우 해양박람회 이후의 시설 및 부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 2012년에 도입되었음

○ 일정 기간 동안만 지원하면 되는 제한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수씨월드 외에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조세지원 실적이 희박하다는 점은 이 제도가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시사하며, 도입된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조세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에 대구와 오송이 지정되었고, 2011년에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었음

○ 대구에만도 약 90개의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기업입주는 증가하는 반면 조세감면액은 2015년에 1,700만원, 2016년 1,300만원, 2017년 9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그나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입주예정중인 기업 또한 조세감면효과를 고려하여 입주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조세지원 혜택보다는 조세지원 외 혜택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대상인 의료연구개발기관 또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입주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그러므로 연구개발특구와 마찬가지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조세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집중을 통한 시너지효과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이미 특구가 형성된 지 10년이 지나고, 상당수의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조세지원이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특구

□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완화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구는 없으며, 규제완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내세우는 경제자유구역은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임

○ 그러므로 규제완화 목적의 특구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다음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특구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함

□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 특구는 다른 국가에서는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임

○ 경제자유구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이 이에 해당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도 있음

□ 앞에서 국제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 유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

○ 외국인투자 유치 외의 다른 목적 즉, 낙후지역 개발이나 시너지효과 극대화 목적의 성격이 있는지, 그러한 성격의 특구로 편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개편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나. 특구별 지원대상 업종의 적절성

□ 앞의 <표 Ⅱ-2>에서는 특구별로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과 지원규모를 정리하였음

□ 먼저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시의 경우 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관광업, 물류업을 포괄하여 상당히 광범위함

○ 제조업 등: 투자규모 100억원 이상

- 제조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관광업(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
- 휴양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골프장 제외))
-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 관광식당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궤도사업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 연구개발업: 투자규모 20억원 이상

○ 물류업: 투자규모 50억원 이상

□ 낙후지역 개발 목적의 특구에 대해 제조업과 과학기술서비스업, 관광업, 물류업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업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지역에도 기업도시와 같은 업종 및 투자규모 요건이 적용됨

○ 기업도시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업종 및 투자금액 요건도 유사함

□ 특정 업종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특구의 경우에는 각 특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좁은 범위로 업종을 제한함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첨단기술산업이 지원대상임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은 금융 및 보험업에 적용되며, 투자규모 20억원 이상, 해당 지역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어야 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조세지원은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이 지원대상임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은 보건의료기술산업의 기업이 지원대상이며, 투자규모 및 고용 요건은 없음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그 외에도 첨단기술산업 등이 포함됨

○ 관광산업은 투자금액이 2천만달러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이 됨

○ 문화산업, 첨단기술산업 등은 투자금액이 500만달러 이상이 경우에 조세지원이 적용됨

□ 특구별 대상 업종과 투자규모 요건은 대체로 각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당히 다양한 특구가 존재하고, 각 특구별로 서로 다른 목적에 부합하는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다 보니, 각 특구마다 지원대상이 달라 제도가 복잡하고 알기 어렵게 되어있음

○ 특히, 각 업종별로 업종명을 열거하는데,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어떤 업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표기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지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구 입주·창업기업 외에도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기업도시 등, 그리고 새만금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도 조세지원이 제공됨

○ 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원대상이 됨

○ 특구 지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시장성에 대한 기업의 판단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3. 적용방법의 적절성

가. 지역특구 조세감면 적용방법의 특징

□ 지역특구 조세감면 적용방법 중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 있음

○ 하나는 조세휴일(tax-holiday) 형식의 조세감면임

- 투자나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기간의 제한 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임

○ 다른 하나는 고용기준 감면한도임

- 지역특구 입주·창업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의 한도를 고용규모를 고려하여 제한하는 것임
- 일반적인 경우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 누계액의 20% 중 작은 금액이 고용기준 한도가 됨
- 단 서비스업의 경우, 총감면액이 위의 위 고용기준 한도와 투자금액 한도(투자누계액의 50%)의 합계를 의미하는 총감면한도를 초과하면 ① 투자 누계액의 100%와 ② 상시근로자 1인당 2천만원의 금액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함

□ 조세휴일형 감면제도와 고용기준 감면한도는 다른 조세지원제도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과 지역특구 조세감면에 적용되는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바, 이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나. 조세휴일형 조세감면제도의 타당성

□ 조세휴일형 조세감면이란 일정기간 동안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

○ 지역특구 입주·창업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세액의 100%, 그 후 2년간 50%가 감면됨

○ 개발사업의 경우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가 감면됨

□ 기업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방법은,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방식, 일정기간 세액을 감면하는 조세휴일방식, 그리고 기간의 제한이 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투자 초기에 많이 투입된 자본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정부 지원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투자 초기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결손금의 차기 이월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완화된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결손금의 차기 이월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10년 내에 이익이 발생하여 초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지역특구에 적용되는 조세휴일제도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이 시작됨

○ 사업을 개시한 후에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제도를 적용함

○ 그러므로 사업 개시 후 감면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세액공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감면규모는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액의 일정비율로 한정되는 데 비해 현행 조세휴일제도에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투자액의 70%(투자금액한도 50%, 고용기준 한도 20%)로 규정되며, 예외적으로 서비스업은 감면한도가 투자액의 100%임

-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투자액의 거의 대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작은 부분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제 최대한도는 조세휴일제도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기간의 제한이 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세액 전액 또는 50%를 감면하는 조세휴일제도보다 단기적인 감면 효과는 작을 수 있음

○ 한편 감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총감면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장기적인 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음

□ 세 가지 방법이 각각 어떤 경우에 다른 방법에 비해 유리한 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세액공제 방식은 초기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 유리함

○ 조세휴일 방식은 초기 자본투입이 많지 않고, 기업의 이동이 용이하여 휴일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업이 유리함

○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아주 긴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가장 유리함

□ 특구를 유형별로 나눠서 특성별로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초기의 자본투입이 많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연도별로 발생한 수익을 감면하는 것보다는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특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기업이 특구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개발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낙후지역 특구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요소들이 상당부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함
- 단, 개발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개선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특구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임
- 기업도시 등에 대한 조세지원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연구개발특구와 같이 특정 업종의 기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특구는 초기단계에서 기업이 집중되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므로 현행 제도와 같이 조세휴일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아시아문화중심지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복합의료단지가 이에 해당됨

다. 고용기준 한도의 적절성

□ 지역특구 조세감면을 통해서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한도는 투자금액 한도와 고용기준 한도로 구성됨

○ 투자금액 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고용기준 한도: 투자누계액의 20%와 상시근로자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

○ 서비스업의 경우 위 한도를 초과한 감면도 가능함

- 서비스업의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100%와 상시근로자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

□ 고용기준 한도는 2011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고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투자 자체에 대한 조세지원은 축소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한다는 투자지원체계의 개편방향을 지역특구 조세지원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고용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특구에 대한 지원에서도 고용을 증대시키는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의 경우, 투자규모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투자기준한도를 더 축소하고 고용기준 한도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미국의 Empowerment Zone 지원의 경우에도 고용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규모를 산정함

4.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가. 다른 조세 및 재정지원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기술이전·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첨단기술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앞의 <표 Ⅲ-9> 참조)

○ 예를 들면, 연구소기업 협의회에서는 연구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활동을 지원함

- 기술경영 자문단 지원에서는 연구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상시 상담 등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됨

□ 그 외에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이 있음(앞의 <표 Ⅲ-10> 참조)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입지보조금(토지매입가격의 30% 이내)과 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이 있음

○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의 설비투자보조금이 제공됨

○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제공됨

○ 이러한 지원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신·증설하는 기업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임

□ 그 외에 대전 특구 입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특구 내 해당 구역기업 및 연구소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지원내용)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연구단지)에 입주한 기관의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지원규모) 1제곱미터당 600원(1급지 외: 400원) → 350원

(근거)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 특구 내 기업 및 연구소 수도료 감면

(지원내용): 특구내 입주기관에 대해 수도료 감면

(지원규모) 수도료 누진완화(3단계 880원 → 2단계 710원) 19.3% 감면

(근거) 「대전시 상수도급수조례」 별표2

○ 과학기술인 및 특구내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시설(골프장·스포츠센터·게스트하우스·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기업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등에 대해서는 본고의 검토대상인 지역특구 조세지원 외에 다른 조세지원제도나 재정지원제도가 있음

□ 앞의 <표 Ⅲ-22>에서는 지역특구에 소득세·법인세 지원 외에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이나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정리하였음

□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중 혜택이 큰 것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영업을 하던 기업이 수도권 밖의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감면이 있음

○ 기업도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밖에 있는 기업도시 입주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6년간 법인세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3년간 50%가 감면됨

○ 지역특구에 대한 지원과 수도권 밖에 있는 기업도시 입주기업 지원은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지역특구 조세지원은 기업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비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이전하여 입주하는 기업에 적용됨

□ 지방세 감면 내용을 보면, 지방소득세의 경우 앞의 소절에서 정리한 국세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동일한 감면이 적용됨

○ 취득세 및 재산세는 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적용하여 감면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률이 적용됨

□ 그 외에 개발부담금을 포함하여 6개의 부담금, 사용료가 감면됨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는 면제됨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50% 감면됨

□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입지지원, 국고지원이 있음

○ 기업도시로 지정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우대지원대상이 되어 지원비율이 일반지역에 비해 최대 10%포인트 높음

- 토지매입가액: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
- 설비투자금액: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19%, 대기업 11%
- 국고보조비율은 최대 75%

○ 입지지원으로 국·공유 용지 임대료가 20% 감면됨

○ 주진입도로 건설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함

□ 아래의 <표 Ⅶ-1>에서는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리하였음

○ 본 고의 검토대상인 조세지원 외에 7종의 부담금 감면이 적용됨

○ 지역개발사업자금지원, 편의시설 설치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과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 있음

○ 그 외에 다양한 규제완화 특례가 적용됨

<표 Ⅶ-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규제특례	• 인허가의제(62개 법률) • 특례(5종) - 학교·교육과정 특례 - 의료시설 특례 - 광역교통개선대책(광역교통관리특별법) - 체육시설 특례(체육시설법) - 원형지 공급
자금지원	• 지역개발사업자금 지원 • 편의시설 설치자금지원
조세	• 신설·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부담금	• 7종의 부담금 감면
인프라 지원	•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행정 지원	• 인허가, 투자 등 원스톱 서비스 • 3단계 인허가 일괄처리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5.27., p. 6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투자인센티브는 <표 Ⅶ-2>에 정리된 바와 같음

○ 입주기업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하거나 50년까지 임대하는 것이 가능함

- 매각시 대금납부 연기, 분할납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 임대시에는 임대료 감면이 가능함

○ 자금지원은 국가자금 지원과 지방비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자금 지원은 임대 및 용지 매입비 융자, 토지임대료 감면, 개발사업 등에 소요됨

- 지방비 지원은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에 사용됨

<표 Ⅶ-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투자인센티브

지원내용		지원규모
세제지원		• 법인세·소득세 3년 면제, 이후 2년 50% 감면 • 지방소득세 3년 면제, 이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국-공유재산 혜택		• 입주기업에 사용-수익, 임대, 매각 가능(임대기간 50년, 이자율 3~5%내) • 매입대금 연기(1년범위), 분할납부 가능(20년 범위 내, 이자율 3~5%) • 공장 들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 임대료 감면 가능(임대요율 10/1000이내, 감면율 25%)
자금지원	국가자금 지원	• 임대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임대료 감면, 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방비 지원	• 입지보조금: 분양가 20%범위 내, 수도권소재기업 45% 범위 내 • 이전보조금: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 (기업당 최고 5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신규채용 상시고용 10명 초과 1인당 12월 범위내 월 100원 이내

자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홈페이지, 투자진흥지구, http://www.cct.go.kr/biz/cont_district.do, 2018.3.27. 접속

□ 부산국제금융중심지 투자지원 인센티브는 <표 Ⅶ-3>에 정리하였는데, 법인세·소득세 감면 외에 재산세·취득세 감면이 있으며,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원이 있음

○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재산세는 3년간 전액 면제되고, 취득세도 면제됨

- 투자금액 요건과 고용인원 요건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요건과 같음

○ 입지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본점에 적용되는데, 용지 및 건물의 구입비나 임차보조금의 50%를 기관당 50억원 이내에서 감면함

○ 고용보조금은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이전 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최대 60만원이 지원됨

-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기관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됨

○ 사업용 살비 설치자금의 경우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가 기관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됨

<표 Ⅶ-3> 부산국제금융중심지 인센티브

구분	지원대상	본사창업	지역본부/지점신설
법인세 소득세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3년간 100% 면제	
취득세		100% 면제	
입지 보조금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고용 보조금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이전 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보조금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이전 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 이내(기관당 10억원 이내)	

자료: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홈페이지, 부산금융중심지 일반현황, http://www.bifc.kr/content/content.php?mnid=40, 2018.3.15. 접속

□ 이와 같은 재정지원, 입지지원 등이 조세감면과 대체적인 성격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세지원은 기업의 수익이 있을 때 적용되어 기업의 순이익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한편, 입지지원이나 재정지원은 수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주로 기업이 특구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즉, 재정지원은 기업의 초기 투자를 원활하게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한편, 조세지원은 투자 이후의 수익률 제고에 초점을 맞춘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음

나. 조세지원 중복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는 조세지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제5항에서는 지역특구 조세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조세지원 항목이 열거되어 있음(<표 Ⅶ-4> 참조)

<표 Ⅶ-4> 지역특구 조세지원과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조세지원

조특법 조항	감면내용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1조 제4항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통합법인 감면
제5항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이 감면기간 전에 통합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통합법인감면
제32조 제4항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잔여감면기간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2조 제4항	성장관리권역 내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 제2항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 감면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6 제1항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제2항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제104조의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 제2항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 제2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0 제2항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1 제2항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2 제2항	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과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조세지원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항목들임

○ 창업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등 각종 지역특구 입주기업, 창업기업 세액감면

○ 비수도권, 혁신도시, 농공단지 등으로 이전한 기업 세액감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조세감면

○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주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과 특구 입주, 창업기업 조세감면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는데, 이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중복지원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함

○ 다른 관점에서 보면, 특구 조세지원을 폐지하는 경우에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조세지원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특구 조세감면의 순 효과는 실제 조세감면액이 시사하는 것보다 상당히 적을 수 있음

○ 투자 관련 조세지원 외의 다른 지원은 중복적용 배제 대상이 아님

Ⅷ. 정책방향

Ⅷ. 정책방향

1.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의 개편의 기본방향

□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설정할 수 있음

○ 첫째,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의 단순화

○ 둘째, 고용요건의 강화

○ 셋째, 지원방식의 합리화

□ 본 절에서는 이 세 가지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그 원칙에 입각하여 제2절~제4절에서 각각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특구, 시너지효과 극대화 목적의 특구,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특구 조세감면제도의 개편방안을 논의함

가.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단순화

□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이 다른 지역의 투자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은 그 지원으로 인한 이익이 명확하고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큰 경우로 국한하여야 함

○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좁게 설정하여야 함

□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지원대상 지역과 항목이 과다하게 많고, 복잡하므로 제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림 Ⅷ-1]에서는 지역특구 지정현황을 지도로 표시하였는데, 지역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특정지역 지원의 효과가 희석됨

○ 뿐만 아니라 특구별로 서로 다른 목적과 지원요건을 가지고 있어 지원제도가 복잡하며 이해하기 어려움

○ 지원대상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없어, 다양한 목적의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가 계속 생성되는 한편 기존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은 계속 연장되어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경향이 있음

[그림 Ⅷ-1] 조세감면 대상 지역특구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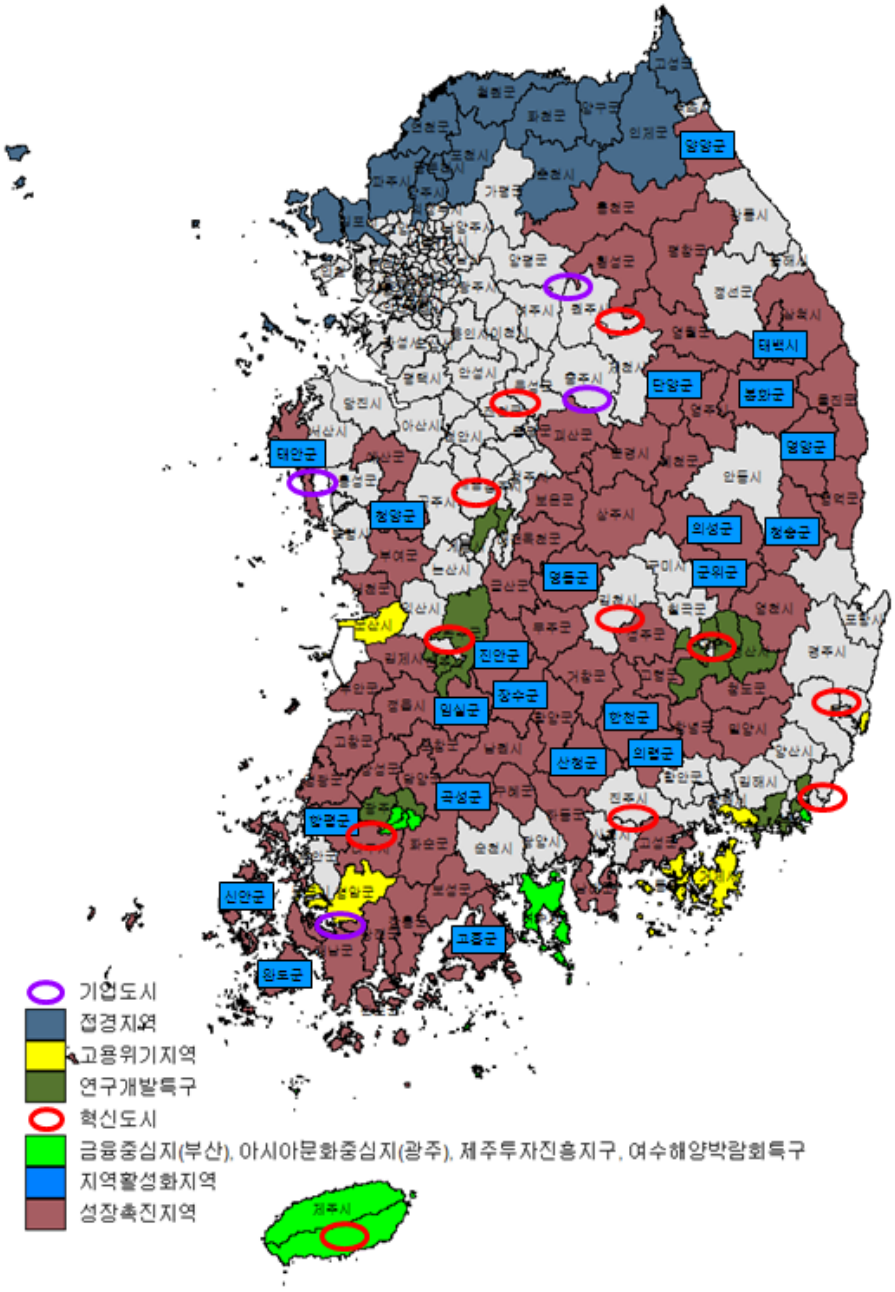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지역특구의 특성을 보면, 특혜를 받는 자가 그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특구의 부정적인 영향은 전 국민이 고르게 부담하므로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1인당 부담이 크지 않아 반대의 목소리는 크지 않음

○ 그러므로 지역특구 지원제도는 한 번 형성되면 폐지되지 않고 쉽게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속성이 있음

○ 그러나 일반 국민 및 국가경제 전체에 주는 부담을 모두 합하면 그 부작용이 상당히 클 수도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도록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도의 단순화를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거나 폐지하여야 함

□ 특구별 대상 업종과 투자규모 요건은 대체로 각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당히 다양한 특구가 존재하고, 각 특구별로 서로 다른 목적에 부합하는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다 보니, 각 특구마다 지원대상이 달라 제도가 복잡하고 알기 어렵게 되어있음

○ 특히, 각 업종별로 업종명을 열거하는데,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어떤 업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표기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지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고용요건 강화

□ 국가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특구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고려할 때,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에서 고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으로 고용의 증대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특구 조세지원에서도 조세감면의 한도를 투자한도와 고용한도로 구분하여 고용이 많은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였음

○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타당성이 가장 큰 것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지원제도인데, 낙후지역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규모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Empowerment Zone 지원의 경우에도 고용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규모를 산정함

□ 고용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투자금액 한도를 축소하고, 고용기준 한도를 확대하는 방법
  ○ 투자금액 위주로 되어 있는 지원요건에 고용기준 요건을 추가하는 방법

다. 지원방식의 합리화

□ 지역특구 조세감면 적용방법의 특징으로 조세휴일(tax-holiday) 형식의 조세감면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방법으로 투자세액공제 방식, 조세휴일 방식, 낮은 세율 적용방식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 세액공제 방식은 초기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 유리함
  ○ 조세휴일 방식은 초기 자본투입이 많지 않고, 기업의 이동이 용이하여 휴일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업이 유리함
  ○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아주 긴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가장 유리함

□ 특구를 유형별로 나눠서 특성별로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구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초기의 자본투입이 많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연도별로 발생한 수익을 감면하는 것보다는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특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기업이 특구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개발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낙후지역 특구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요소들이 상당부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함

- 단, 개발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개선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특구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임

○ 연구개발특구와 같이 특정 업종의 기업이 특정 지역이 집중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특구는 초기단계에서 기업이 집중되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므로 현행 제도와 같이 조세휴일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 낙후지역 개발 목적의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편방향

□ 지원 목적별로 보면,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지원제도는 유지하면서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임

○ 현행 지역특구 중 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 이에 해당됨

○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지원은 새만금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저변에는 낙후지역 개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공지역 지원도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도에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세 가지 특구가 있는데, 기본적인 목적은 제주도의 발전에 있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도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무한정 계속하기보다는 일정기간 연장 후 재평가 없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2002년에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7년 이후부터 지원 실적이 발생함

○ 제주자유무역지역은 지정 실적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은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세 외에 재정지원, 교통환경 개선 등 다른 지원과 결합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원주기업도시 사례를 보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교통여건이 개선되면서 기업도시 추진이 활력을 얻게 됨

□ 뿐만 아니라 조세지원제도 자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투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고용의 증대에 있으므로, 감면한도 설정에서 투자지원 한도를 축소하고 고용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투자요건을 완화하면서 고용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 낙후지역 설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방식도 낙후지역 지원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산업 생산 수준, 인구밀도 등이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으로 낙후지역을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낙후지역의 경우, 낙후지역 상태가 유지되는 한 조세지원이 지속되는 것이 타당함

- 창업 후 일정 기간의 조세지원으로는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낙후지역으로 유지되는 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3. 시너지효과 증대 목적의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편방향

□ 시너지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구 조세지원 중 연구개발특구 조세지원의 경우 특구가 형성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며, 이미 상당수의 기업이 입주하였음

○ 특구 지정연도: 대덕 2005년, 광주 2011년, 대구 2011년, 부산 2012년, 전북 2015년

○ 입주기업 수: 대덕 1,763개, 광주 1,140개, 대구 728,개 부산 891개, 전북 450개, 전체 5,018개

□ 연구개발특구는 처음에 대덕특구에서 시작하였으나 이후 전국 각지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특정지역에 기업을 집중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성과를 보면, 입주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투자와 연구개발비를 많이 지출하지만 매출액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음

○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제도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본 결과 고정효과모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음

○ 그러나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입주기업의 0.4~1.07%에 불과하여 조세지원이 기업을 특구로 유도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특구의 경우 조세지원 실적이 거의 없어 조세지원이 기업을 특구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여수 해양박람회 특구는 해양박람회 이후의 시설 및 부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 2012년에 도입되었음

-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수씨월드 외에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은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금융중심지 조세지원은 2010년에 도입되었는데, 지역특구 조세지원 실적이 없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는 2017년 말까지 3개의 권역에 85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하였음

-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우에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KSF 선박금융과 한국선박금융의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점 등 업체가 입주하였으나 조세지원 실적이 없음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에 대구와 오송이 지정되었고, 2011년에 조세지원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조세감면액이 2015년 1,700만원, 2016년 1,300만원, 2017년 9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그나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입주예정중인 기업 또한 조세감면효과를 고려하여 입주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이미 특구가 형성된 지 10년이 지나고, 상당수의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조세지원이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이상의 논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특구,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시사함

○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이미 성숙되어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미 성숙한 특구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업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그 외 특구는 조세지원이 기업의 집중 및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현행 일몰기한이 지난 다음 해인 2019년도부터 이들 지역 특구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하면 이들 특구의 조성 및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음

○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숫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기업이 유입되고 있고, 대덕특구는 2005년에 지정되어 이미 13년이 지났지만 그 외 특구는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특히 전북특구는 2015년에 지정되어 조금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그 외 특구의 경우 아직 특구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특구의 개발과 홍보 및 기업유치 활동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조세지원을 폐지하면 특구의 발전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조세지원이 기업들을 특구로 유인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세지원의 폐지가 부정적인 시그널 효과를 주어 특구를 홍보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시너지효과 증대를 위한 특구로서 일몰이 도래되는 특구는 일단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몰기한의 연장과 재검토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폐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연장 후 재검토 없이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면, 향후 3~5년 정도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에는 재검토 없이 제도를 폐지하는 '폐지 예고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와 같은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조세특례제도의 단순화, 효율화를 위해서는 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고제를 도입하기 이전까지는 조세정책 담당부서인 기획재정부와 특구 담당부서가 조세지원제도 운영기간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심층평가 없이 조세특례를 폐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예고제를 실시하거나 조세특례 운영기간에 대한 MOU가 있는 경우에 담당부서가 조세지원제도의 폐지 기간을 고려하여 특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특구가 독자적인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외국인투자 지원 목적의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편방향

□ 외국인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만 있고 다른 국내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없는 특구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특구는 낙후지역 개발이나 시너지효과 극대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기업도시의 경우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와 국내기업 지원제도가 유사하므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국내기업 지원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제주도 등 특정 지역 개발사업 조세지원의 경우에도 모든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유사한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은 폐지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강원도민일보, 「원주기업도시 조성사업 가속도 붙는다」, 2017. 7. 25.

건설교통부, 『기업도시의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2007.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전환」, 2017. 12. 20.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일본 지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국토교통부, 『기업도시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 제도개선 연구』, 2014. 11.

_____, 「기업도시 간담회」, 자료, 2016a. 3. 30.

_____, 『국토교통통계연보』, 201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역개발, '통합'추진되고 지자체가 '주도'」, 2014. 5. 27.

_____, 「낙후도 심한 '지역활성화지역', 차등·우선 지원」, 2014. 12. 23.

국토교통부 소식, 「22개 낙후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http://korealand.tistory.com/4904), 2015. 3. 29.

국토연구원, 『기업도시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향』, 2013.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김재구·최성환, 『새만금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전북연구원, 2017.

김진범·류승한·오호영, 『새만금 용지조성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새만금개발청, 2017. 5.

김진범·이동우·류승한, 『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 제도개선 연구』, 국토연구원, 2014.

문화체육관광부, 『2016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백서』, 201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한다」, 2017. 2. 14.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본계획」, 2014.9.

_____, 「2018년도 업무계획」, 2018. 2.

안종석·정재호·최기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평가 및 정비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안종석·최기호·이재호,『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연합뉴스,「여의도 10배 면적 전남 기업도시, 골프장 도시 전락 우려」, 2017. 11. 15.
우지원 외,『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여수시, 2015. 1.
전병목,「도시재생사업 조세지원제도 도입 방안」, 한국재정학회, 2016. 1.
전북일보,「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다시 공공주도로 전환」, 2017.11.06.
최해옥,「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box) 정책 동향 및 시사점」,『동향과 이슈』, 제33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7. 19.
한국재정학회,『새만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운영 방안』, 2014. 10.
G1tv,「원주기업도시 "공장 짓고 있다더니...」, 2017. 11. 20.
KOTRA,『주요국 투자유치인센티브 제도 조사』, 2018. 2.

CCH, "World Business Tax Guide, Taiwan," 2018.

<웹사이트 - 국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8. 3. 12, 13, 15, 19일 접속
네이버 부동산 정보, https://www.land.naver.com/, 2018. 5. 15일 접속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홈페이지, BIFC현황 http://www.bifc.kr/content/content.php?mnid=39, 2018. 3. 15일 접속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홈페이지, 부산금융중심지 일반현황 http://www.bifc.kr/content/content.php?mnid=40, 2018. 3. 15일 접속
솔라시도 홈페이지, http://solaseado.go.kr/new/s01/05/index.php, 2018. 3. 19일 접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홈페이지, 투자진흥지구, http://www.cct.go.kr/biz/cont_district.do, 2018. 3. 27일 접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s://www.innopolis.or.kr/, 2018. 5. 18일 접속
전라남도 홈페이지, 솔라시도 기업도시, http://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jeonnam0605020200, 2018. 3. 19일 접속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http://www.jeju-sp.com/support/incentive/tax.htm, 2018. 6. 4일 접속
충청북도 홈페이지, https://www.chungju.go.kr/www/contents.do?key=573, 2018. 3. 19일 접속

충주기업도시 홈페이지, http://www.nexpolis.com/
현대도시개발 & 라티에라 홈페이지, http://www.latierra.kr/business/pass, 2018. 3. 19일 접속

<웹사이트 - 해외>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outline/fy2016/request/cao/28y_cao_k_12.pdf, 2018. 4. 11일 접속
일본 총무성,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m/aisei_seido/h30_youbou03.html, 2018. 4. 11일 접속
MNTC연합 홈페이지, http://nmtccoalition.org/fact-sheet/, 2018. 4. 10일 접속
RRL, https://www.rrlcornwall.co.uk/publications/tax-publications/business-tax/time-is-running-out-for-business-premises-renovation-allowance-bpra-claims, 2018. 4. 24일 접속
영국정부, https://www.gov.uk/guidance/understanding-the-regional-growth-fund, 2018. 4. 9일 접속
_____,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munity-investment-tax-relief-hs237-self-assessment-helpsheet/hs237-community-investment-tax-relief-2017, 2018. 4. 9일 접속

부 록

<부표 1> 지역특구 지정내역

기업도시	충북	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중앙탑면
	강원	원주시	지정면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면
	전남	영암군 산호읍, 해남군 산이면	
성장촉진지역 **＊지역활성화지역**	강원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 홍천군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남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경북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경남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해양박람회특구	전남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아시아문화중심지	광주	서구	양동
		동구	대의동, 궁동, 장동, 동명동, 계림동, 산수동, 지산동, 남동, 광산동, 금동, 호남동, 불로동, 황금동, 서석동, 소태동, 용연동, 운림동, 학동, 월남동, 선교동, 내남동, 용산동, 충장로1가, 충장로2가, 충장로3가, 충장로4가, 금남로1가, 금남로2가, 금남로3가, 금남로4가
		남구	송하동
금융중심지	부산	남구	문현동
연구개발특구	대전	유성구	죽동, 궁동, 어은동, 구성동, 노은동, 하기동 ,수남동, 외삼동, 금고동, 신성동, 가정동, 도룡동, 장동, 방현동, 화암동, 덕진동, 자운동, 전민동, 문지동, 원촌동, 봉산동, 탑립동, 용산동, 관평동, 송강동, 대동, 금탄동, 신동, 둔곡동, 구룡동
		대덕구	문평동, 신일동

연구개발특구	광주	광산구	고룡동, 비아동, 산월동, 신룡동, 안청동, 오선동, 월계동, 곡동, 하남동
		동구	서석동, 지산동 ,학동
		북구	대촌동, 연제동, 오룡동, 월출동, 신용동, 용두동, 용봉동
	전남	장성군	남면, 진원면
	대구	달성군	다사읍, 유가면, 현풍면
		달서구	갈산동, 대천동, 호림동, 신당동, 호산동, 월암동
		북구	동호동, 학정동, 산격동, 대현동, 복현동
		동구	각산동, 율암동
		수성구	신매동
	경북	경산시	남산면, 압량면, 하양읍, 진량읍
	부산	강서구	지사동, 송정동, 미음동, 강동동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연제구	
	전북	전주시, 완주군	
		정읍시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영암군	
접경지역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		
혁신도시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대구	동구 신서동	
	전남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울산	중구 우정동	
	강원	원주시 반곡동	
	충남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전북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경북	김천시 율곡동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